

1993

民主統一論

北韓實態篇

통일연구소

차 례

I. 北韓의 政治	3
1. 序 言	5
2. 北韓政權의 樹立過程	6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15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21
5. 國家機關	26
6. 權力世襲의 過程과 展望	32
7. 結 言	39
II. 北韓의 經濟	43
1. 序 言	45
2. 經濟體制와 政策基調	47
3. 北韓經濟의 展開過程	56
4. 主要 部門別 現況	63
5. 南北經濟共同體 形成方案	74
6.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對外經濟協力	82
7. 結 言	92
III. 北韓의 社會	95
1. 序 言	97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의 特性	98
3. 住民生活	101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118
5. 保健·醫療	122
6. 言論實態	127

7. 結 言	130
IV. 北韓의 教育	133
1. 序 言	135
2. 教育理念과 政策	136
3. 教育行政과 制度	141
4. 教育內容과 方法	152
5. 結 言	165
V. 北韓의 文學·藝術	167
1. 序 言	169
2. 本 論	173
3. 結 言	196
VI. 北韓의 外交	201
1. 概 觀	203
2. 對外政策 基調	205
3. 對外政策 展開	213
4. 主要 對象別 外交實態	220
5. 對外政策 展望	237
VII. 北韓의 軍事	239
1. 序 言	241
2. 「人民軍」의 形成과 性格	242
3. 軍事政策 및 戰略	247
4. 軍事組織·制度	254
5. 軍事能力	261
6. 結 言	271

I (北韓의 政治

教授 李 禎 秀(政博)

1. 序 言	5
2. 北韓政權의 樹立過程	6
가. 蘇聯의 軍政政策과 北韓政權의 樹立	6
나. 金日成의 獨裁化推進	9
다. 金日成의 黨權掌握過程	11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15
가. 主體思想의 形成背景	15
나. 主體思想의 內容과 展開	16
다. 主體思想의 限界點	20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21
가. 黨의 成立背景	22
나. 黨의 理念 및 目標	23
다. 黨의 組織과 役割	24

5. 國家機關	26
가. 主權機關.....	27
나. 行政機關.....	31
다. 裁判機關 및 檢察機關.....	31
6. 權力世襲의 過程과 展望	32
가. 權力世襲의 過程	32
나. 權力世襲의 正當化	33
다. 金正日의 權力基盤	35
라. 金正日의 偶像化實態	36
마. 世襲體制의 展望	38
7. 結 言	39

1. 序 言

分斷 48년이 되는 1993년은 우리에게 統一을 향한 새로운 經綸을 필요로 하는 한 해이다.

우리는 작년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의 발효로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장을 어렵사리 마련하였으며, 밖으로는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통일의 對外環境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었다.

이제 남북한간의 和解·協力을 촉진하는 길은 북한의 改革·開放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일깨워준다. 북한은 金正日體制의 본격 출범을 예고하듯 1992년에 社會主義憲法을 개정하여 黨의 영도 안에서 제한된 권력분산을 피하며 소위 ‘人民大衆 中心의 社會主義’ 구현을 위해 경제 및 종교문제 등 民生問題 중심으로 약간의 制度整備를 하였는바, 국제사회의 變化의 물결을 전연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金正日은 최근의 논문에서 여전히 유일적 黨의 지도를 강조하며 전 黨의 唯一思想體系와 유일적 領導體系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수령의 지배체제하에서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必勝不敗의 전투대오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金正日이 통치하더라도 전체주의적 唯一的 規範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溫情主義的 ‘干涉政治’(Paternalist character)는 더욱 강화되리라고 보여진다. 즉, 그의 최근 論文에서 보면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며…… 黨이 인민대중을 책임지고 교양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黨의 끝없는 사랑의 표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黨과 首領中心의 일방적 ‘사랑’을 펼친 것이

다. 오늘의 世界思潮가 개개인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데 비추어 보면 全體主義의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全體主義的 溫情主義는 정치우선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世襲權力體制維持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의 人民大衆의 입장에서 발상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북한은 표방된 선전과는 달리 對外的 開放·改革 壓力과 사회로부터의 物質的 貧困과 政治的 不自由에 대한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서 政治와 社會間의 갈등의 本質이다.

本教材에서는 상기한 북한에 대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북한 정치의 動態와 變化展望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제2장에서는 政權樹立過程을, 제3장에서는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을, 제4장에서는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를, 제5장에서는 改正 社會主義憲法에 따른 國家機構를, 제6장에서는 權力世襲過程과 變化展望을 정리하여 남북한관계 상황예측에 기여코자 한다.

2. 北韓政權의 樹立過程

가. 蘇聯의 軍政政策과 北韓政權의 樹立

북한 공산정권은 소련의 占領地域 共產化政策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大將이 지휘하는 붉은 군대를 북한에 派遣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평양에 占領軍司令部를 설치하고, 8월 말까지 북한 전역을 완전히 掌握하였다. 그리고 치스차코프 大將을 직접 지휘한 사람은 黨官僚로서

연해주 군관구 軍事委員이었던 스티코프 大將이었다. 스티코프는 북한의 統治에 관해서 일체의 決定權을 장악하고 있었다.¹⁾ 그 후 스티코프는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首席代表와 북한주재 蘇聯大使(1948~1951년)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치스차코프는 占領政策을 수행함에 있어 로마넵코 少將과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少將의 보좌를 받으며 金日成을 앞세워 北韓共產化政策을 추진하여 갔다.

우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各道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日帝로부터 접수한 行政權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었다. 즉, 中央政府가 설 때까지 과도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地方自治機關을 조직한 것이다. 당시 평양에는 古堂 曹晚植 선생을 중심으로 한 建國準備委員會(이하 「건준」) 평남지부와 玄俊燦을 중심으로 한 朝鮮共產黨(이하 「조공」) 평남지구위원회가 이미 결성되어 있었다. 소련군 사령부는 이러한 自治團體들을 통합하여 人民委員會란 이름으로 개편시키기로 하였다. 이것이 共產化의 일단계였다.

8월 26일 치스차코프는 조만식 선생의 建準側 民族主義者들과 현준혁의 朝共 平南地區委員會 소속 공산주의자들을 각 16명씩 동수로 합작할 것을 지시하여 「平安南道 人民政治委員會」를 조직케 하였다. 인민정치위원회의 명칭은 「建準」측이 政治委員會를, 「朝共」측이 人民委員會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이를 절충한 것이며 이 구성체는 공산주의자들의 統一戰線戰術策에 의해서 공산주의 조직체로 변질되며, 소련군정의 철저한 代行機關이 되고 만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9월 13일에는 황해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5道에 人民委員會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후

1) 본내용은 주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梁好民,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북한40년」(乙酉文化社, 1989)

徐大肅, 「김일성」(청계연구소, 1989)

金甲喆外 共著, 「北韓學概論」(文佑社, 1990)

崔明, 「北韓概論」(乙酉文化社, 1990)

10월 8일 北朝鮮 5道人民委員會를 구성케 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北朝鮮 5道行政局(위원장:조만식)으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 5道行政局이 소련군 사령부 밑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였으며 市·郡을 비롯한 각급 地方人民委員會도 1945년 11월 말까지 조직이 완료되어 人民委員會라는 행정체계가 북한 지역을 통괄해 나갔다.

그러나 이 기구는 信託統治案을 놓고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間에 의견분열을 가져오면서 晝晚植의 퇴진으로 붕괴되었고, 이어서 소련 집령당국은 1946년 2월 8일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급히 조직하여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에서 최초의 政府機能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사실상의 單獨政權樹立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당시 占領當局의 초미의 관심사는 권력의 원천인 共產黨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였다. 그것은 소련에 忠誠하는 공산당을 북한에 만드는 문제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련에서 黨·政·軍 제 분야에 관해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2개의 집단이 入北하는데 하나는 소위 ‘빨치산派’(金日成一派)이고, 다른 하나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지흐스탄에서 온 在蘇 韓人二世들이다. 이들은 소련에 忠誠하도록 훈련된 철저한 政治的 實務者들이다.

소련 군정당국은 이들을 앞세워 金日成一派가 주동이 된 독립된 共產黨을 평양에 구성하여 國內派 共產主義者들로부터 黨權을 빼앗고 평양에 전 한국을 대표하는 共產黨을 조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民族勢力이 장악하고 있던 정국의 주도권(사실상 조만식 선생이 영도)을 탈취하여 공산당의 수중에 넣는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이다.

우선 소련 軍政當局은 1945년 9월 19일에 원산항으로 入北한 金日成(본명:金成柱)을 북한의 統治者로 등장시키기 위해 10월 10

일~13일 사이에 극비리에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새朝鮮建設과 民族統一戰略에 대하여’란 연설을 하게 하고, 10월 14일에는 「김일성장군환영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토록 하여 金日成을 처음으로 大衆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한 다음, 매스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民族的 英雄으로 부각시켰다.

이때에 소련의 조종을 받는 共產黨이 처음 생긴다. 이것이 10월 13일 비밀리에 개최된 上記 「熱誠者大會」에서 조직된 「朝鮮共產黨 北朝鮮 分局」이다. 초기에 김일성은 黨指導 밖에 있었으나, 黨의 責任祕書가 된 것은 1945년 12월 18일에 개최된 「分局」 제3차 擴大執行委員會에서이다.

소련 점령당국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黨을 장악케 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앞에서 言及한 「북조선임시위원회」를 만들어 委員長에 앉힌 것이다. 이로써 김일성은 黨·政의 指導權을 장악하게 되고, 소련의 對北韓共產化政策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나. 金日成의 獨裁化推進

(1) 人民共和國 樹立

金日成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의 ‘中央主權機關’이라고 선포했으며 同委員會가 수행해야 할 當面課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土地改革法令」(1946. 3. 5)을 비롯하여 「重要産業國有化法令」(1946. 8. 10) 등 共產化에 필요한 법령의 실시였다.

그리고 1946년 11월 3일에 道·市·郡 人民委員會 선거를 하였는 바, 첫 民主選舉라고 하면서 이 선거의 절차를 통해서 조직된 정권을 「북조선 인민위원회」(1947. 2)라고 하였다. 즉, 選舉에 의해서 조직되었다고 해서 ‘臨時’라는 명칭을 떼어버린 것이다.

또한 憲法草案은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서 憲法草案을

확정(同年 12. 20)하였으며, 1948년 4월 29일 소집된 북조선 인민위원회 특별회의는 이 草案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同 憲法草案에 따라 8월 25일에 최초로 最高人民會議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9월 초에 最高人民會議 第1次會議을 개최하여 헌법초안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9월 9일 金日成을 수상으로 하는 人民共和國이 수립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북한이 人民共和國 수립시기를 大韓民國政府 수립 이후로 늦춘 것은 分斷責任을 우리에게 전가할 선전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2) 社會·經濟 共產化改革

金日成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이른바 ‘反帝·反封建民主改革’을 단행하였다. 즉, 1946년 3월 5일 土地改革法을 비롯하여 重要產業國有化法(1946. 8. 10), 農業現物稅法令(1946. 6. 27), 勞動法令(1946. 6. 24) 등을 제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改革은 社會主義革命을 위한 예비단계이며 人民民主主義獨裁의 단계의 조치들로 규정된다.

토지개혁 3개월 후에 공포된 「農業現物稅法令」과 휴전 직후부터 강행된 「農業集團化政策」(1953. 8)도 추진되었다. 金日成은 “북반부를 민주기지로 강화하려면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촌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현 시기에서 농촌진지를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56년 말에 협동조합들을 里單位로 통합하고 里人民委員長이 協同組合管理委員長을 겸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창설하여 個人商工業 및 手工業者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상공업의 協同化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경제·사회영역에서 社會主義改革을 단행한 것이며, 북한은 이를 社

會主義의 基礎가 마련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金日成의 黨權掌握過程

당시 金日成은 소련 점령당국의 비호를 받기는 했으나 그는 4개의 政治集團과 상대해야 했다. 초기에는 대외적으로 民主主義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들 정치집단과 聯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은 蘇聯에서 훈련된 김일성의 빨치산派 중심의 唯一體制로 변질되고 만다. 따라서 북한의 政治史는 肅清史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의 숙청사를 보면 제1단계에서는 南朝鮮勞動黨派(1952년), 제2단계에서는 蘇聯派(1953~1956년)와 延安派(1956~1958년), 제3단계에서는 國內派(1958~1970년) 그리고 제4단계에서는 自派인 빨치산派(1969년~)를 각각 숙청하였다.

이 4단계 肅清過程에서 김일성의 빨치산파는 소련파·연안파·국내파와 동맹하여 南勞黨派를 제거하고, 다음에는 국내파와 提携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소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파를 肅清하였다. 이 모든 政敵을 소탕한 다음 自派인 빨치산파의 批判勢力에 화살을 돌렸다.

이렇듯 김일성이 자행한 肅清은 한낱 黨의 주도권을 위한 權力鬭爭임에도,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권력에 대한 宗派分子, 機會主義者, 偏向主義者의 도전으로 간주, 마치 이데올로기투쟁인 것으로 분장하여 피의 肅清을 정당화하였다.

처음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이 玄俊熾이다. 玄俊熾은 북한을 남한과 분리하여 소련의 衛星國으로 만들려는 김일성의 民主基地路線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련의 조종을 받는 金日成은 그의 잠재적 政敵이기도 한 玄俊熾(分局 組織責任者)을 1945년 9월 하순 연안파의 張時雨(김일성은 그뒤 그의 공로를 살려 商業相에까지 임명

하였다.)로 하여금 암살하도록 하였다.

또한 民族主義者로서 북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曹晩植 先生(5道行政局委員長, 朝鮮民主黨委員長)을 「모스크바 3국의 상회의」에서 결정된 반민족주의적 ‘信託統治案’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46년 2월에 두 職位를 박탈, 연금하는 등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黨權 싸움과 관련된 肅清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6·25南侵戰爭 시기부터 시작된다.

金日成은 숙청의 1단계로 朴憲永의 南勞黨派를 제거하게 된다. 사실 朴憲永은 서울에 「朝鮮共產黨」을 재건하여 ‘黨中央’의 권위를 행세하며 북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다. 북한에 「分局」을 조직한 것도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진다. 따라서 소련으로부터 별도의 공산당조직을 지령받은 金日成에게 박헌영은 위협적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김일성은 1948년 정권수립과정에서 박헌영을 副首相 겸 外相으로 옹립하였으나, 6·25남침전쟁의 발발원인이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이른바 ‘戰爭勃發의 北韓內部起原說’²⁾이 나올 정도로 두사람의 權力暗鬪가 지속되었다.

결국 金日成은 6·25남침전쟁의 敗戰責任을 엉뚱하게 박헌영 등 남로당파에 전가시켜 전면 숙청을 단행하였다.

金日成은 “일차 공격시 박헌영은 우리를 속였다. 박헌영은 남조선에 20만 당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남조선에 당원이 20만 명은 고사하고 1,000명만이라도 있어서 부산쥬에서 파업을 하였더라면 정세는 달라졌을 것”³⁾이라고 하면서 朴憲永에게 6·25의 敗戰責任을 전가하였다.

2)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박영사, 1984), p.86.

3) 金日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평양: 1969), p.117.

김일성은 土着共產主義者들의 중심이었던 朴憲永의 권위를 제거하고 金日成 1人支配下에서 통일된 공산당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단계 숙청은 소련과의 巨頭이며 6·25남침전쟁 당시 黨 副委員長 겸 組織擔當書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許哥而였다.

金日成과 許哥而와의 대립은 黨組織問題에서 나타났다. 즉, 金日成은 黨 하부조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許哥而는 전쟁시 黨證을 버린 당원들에 대한 ‘責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農民出身의 지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黨의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1951년 11월에 개최된 「黨中央委員會 第4次全員會議」에서 許哥而의 당조직사업에서의 과오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는 1953년 3월에 金日成의 압력에 의해서 自殺했다고 한다.

제3단계의 표적은 延安派와 蘇聯派의 숙청이다. 당시는 소련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ov)에 의해 스탈린(Stalin)의 個人崇拜와 暴政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平和共存政策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소련에서의 변화에 힘입어 북한 내 金日成의 반대파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즉, 崔昌益(연안파)과 朴昌玉(소련파)은 金日成과 그의 권위에 도전하여 集團指導體制를 수립할 것과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黨機構를 완화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들은 金日成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를 訪問(1956. 7월~8월)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金日成의 제거를 모의, 8월 30일 金日成의 귀국보고를 위한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그의 개인숭배 등 당내문제를 거론하며 이른바 「8月 宗派事件」을 일으켰다. 그러나 金日成派의 소동으로 회의가 유산됨으로써 金日成除去計劃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金日成은 1958년 5월 30일 「黨中央 集中指導事業」을 단행, 反黨反革命分子 색출운동을 일으켜 전 북한사회를 공포의 분위기

로 몰아갔다.

이 와중에서 延安派, 蘇聯派, 國內派를 막론하고 반김일성세력은 모조리 숙청되었는바 金料奉, 崔昌益, 韓斌 등 연안파는 모조리 숙청되고 駐蘇大使였던 李相朝와 金日成편에 가담했던 許貞淑 정도가 살아남았다. 蘇聯派는 상당수 소련으로 피신했으나 朴昌玉 등은 處刑되었다고 한다.

결국 金日成은 숙청과정에서 그때그때 제후하였던 다른 派閥의 공산주의자들을 거의 모두 거세하였으며,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中央委員 85명과 候補委員 50명은 모두 金日成派와 그의 추종자들이었다.

이후 숙청의 대상은 金日成自派가 되었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이 제기되어 국방력 강화문제가 당면과업으로 등장하자 金日成은 4大軍事路線에 반기를 든 빨치산과 중에서 甲山派의 朴金喆(당정치위원 겸 비서)과 李孝淳(당정치위원 겸 비서) 및 그들의 部下들을 1967년 5월 모조리 숙청하였다.

그리고나서 숙청의 칼날을 軍部로 돌렸다. 1969년 許鳳學(군총정치국장, 대남담당비서), 金昌奉(민족보위상), 崔光(군총참모장) 등이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문란시켰다고 하여 숙청되었다.

이어서 1970년 일찍이 民族保衛相(1960~1962년)을 역임한 副首相 金光俠을 국방정책을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숙청하였다.

따라서 1970년 제5차 黨大會를 맞이하면서 북한은 金日成勢力으로 일색화되었으며, 오늘날 북한의 政治體制는 이같은 거듭되는 피의 肅清史에 의해서 구축되었다.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가. 主體思想의 形成背景

북한에서 ‘主體’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金日成이 1955년 12월 28일 黨宣傳·煽動 일꾼모임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란 演說에서였다.

主體問題를 제기한 1950년대의 북한의 대내외사정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스탈린의 사망(1954년) 후 권력을 승계한 흐루시초프(Khrushchov)가 스탈린에 의해서 비판되었던 유고의 티토(Tito)노선에 찬동(1955년 5월)하면서 ‘社會主義에로의 多樣한 路(many way to socialism)’을 인정, 개별 공산국가의 獨自路線을 허용함으로써 金日成은 이 시기를 틈타서 ‘主體’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스탈린 格下運動은 북한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당내의 各 政派(연안파, 소련파)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小스탈린格인 金日成은 자기의 권력이 붕괴될 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시기를 역이용하여 반대파들을 中·蘇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非主體로 몰아 숙청을 단행하였다. 예컨대, 소련파의 대표였고 黨宣傳部長을 지낸 朴昌玉을 지명해서 소련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북한의 歷史와 傳統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으며, 역시 소련파인 朴英彬을 흐루시초프의 緊張緩和政策에 맹종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소련에서 입북한 金日成이 ‘朝鮮革命의 主體’임을 자부하는 朴憲永일파를 모두 숙청하고서 主體問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主體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 좋은 근거이다.

당시 대내상황과 관련시켜 보면 主體思想의 형성배경은 표면상 事大主義·形式主義의 배경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宗派主義者들을 제거하기 위한 政治戰略的 제스처에 불과하다.

또한, 主體問題 제기의 배경에는 ‘抗日革命傳統’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소련군 점령사령부의 政治司令官인 레베데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金日成의 抗日戰爭參戰은 허위이며 그들이 歷史를 왜곡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당시 金日成이 찾아와 “解放戰爭에 참전케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⁴⁾고 하였다. 따라서 ‘抗日革命傳統’은 정치전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근거는 없는 것이다. 결국, 主體問題의 제기는 金日成의 권력옹호와 강화를 위한 필요에서 착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主體’를 점차 ‘主體思想’으로 발전시키면서 권위와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主體’의 시작연대를 1975년에는 1926년에 창시되었다고 하였으며, 1982년 金正日是 1930년 6월 카룬(長春)에서 열린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의 간부회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⁵⁾

나. 主體思想의 內容과 展開

主體思想은 1967년 6월에 개최된 黨中央委員會(제4기 제16차)에서 黨의 唯一思想으로 규정하게 되며, 그해 12월에 最高人民會議(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政綱에서 정부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指針임을 명시하고 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主體思想은 黨指導理念으로 명시되었

4) 中央日報, 「秘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4)」(1991. 8. 26.字)

5) 金日成, 「당창건 30주년 연설」 참조.

金正日,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7)

으며, 統治이데올로기로 정식화된 것은 1972년 社會主義憲法 제4 조에서이다. 즉,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과 관련한 당과 국가에 대한 지도원칙으로서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主體思想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라고 선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입니다.”⁶⁾ 또한 主體思想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戰略·戰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哲學的 原理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人民大衆의 역할에 기초한 革命의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은 黨·國家의 활동의 지도보다는 大衆動員을 선동하는 이데올로기로 부각된다.

그러나, 1982년 金正日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偶像化論理와 결합되어 수령의 統治名分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혁명운동에서 지도의 문제는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이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되는가의 문제와 어떻게 력사적 사명을 다하는가의 문제는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⁷⁾

6) 金日成과 요미우리신문 기자 대담(1972. 1)

7) 金正日, 앞의 책, p.18.

라고 主張하고 있다.

上記한 인용문에 의하면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人民大衆이 혁명의 任務와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수령의 唯一的 統治體制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다.

金正日是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首領·黨·人民大衆의 관계에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중을 수령의 指導對象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대중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 金正日是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를 ‘社會政治的 生命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사람이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들이 속해 있는 社會政治的 集團을 생명체로 간주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首領을 중심으로 집단의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설득방법인 것이다.

金正日是 인민대중에 대한 首領의 통치명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의 生物學的 生命보다는 社會的 生命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全體主義의 지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⁸⁾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

8)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1991), pp.99-101 참고.

명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 입각해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생명의 모체인 수령·당·대중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首領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首領과 大衆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주종관계로 보았으나, 1986년의 논문에서는 혁명의 주체를 首領·黨·人民大衆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統一體’로서 상호 유기적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의 全體主義的 統治를 정당화하는 데는 변화가 없으며, 단지 경직된 一方的 지배논리로부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정서적 차원에서 忠誠을 호소하는 것으로 설득방법이 바뀌었을 따름이다.

1990년에 와서 金正日은 수령 중심의 社會主義보다는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主義’를 강조하고 있다 즉, 1991년 5월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본담화에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주체사상은 勞動階級을 혁명 주체의 核心部隊로 내세운다고 강조하며,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주의적 首領의 統治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人民大衆의 ‘역할’, ‘요구’, ‘이익’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主體思想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改革·開放이후 모순에 빠져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役割·要求·利益을 배려하겠다

는 것도 그 矛盾을 극복하기 위한 方便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체 사상의 一色化로 당·수령·인민대중의 一心團結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령에게 ‘忠臣과 孝子’가 되도록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도 북한은 인민대중의 이익보다는 金日成의 神話를 떠받들어야 함을 강조할 뿐이다. 현재 平壤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信念化·生活化할 것을 선동하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혹자는 북한이 社會主義國家가 아니라 儒敎國家가 되었다고 혹평하고 있다.

다. 主體思想의 限界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主體思想은 1980년대 이전에는 소련에 대한 排他性과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동원수단 그리고 金日成偶像化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改革·開放을 의식하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와 같은 社會統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바로 金日成·金正日父子 세습체제의 유지와 수호를 위해서 首領과 人民大衆을 선택적 또는 전체를 강조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主體思想은 수령의 통치명분을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1人獨裁體制를 확립하게 했으며, 공산주의이념을 어기면서까지 金正日로 하여금 權力世襲의 예외를 남게 하였다. 또한, 대남전략전술의 도구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여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을 뒷받침하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앞세워 非同盟外交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동구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社會主義·共產主義의 실패와 퇴조로 인해서 남북경쟁에서 主體思想의 위력은 꺾이고 말았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協

力과 和解時代에 걸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로 낙인찍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主體思想은 “로동계급의 가장 완성된 혁명사상”⁹⁾으로 규정되는 만큼 노동계급의 속성을 탈피못하여 인민대중의 集團性을 강조함으로써 自由化·民主化를 희구하는 개인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체제의 정당성의 중심이 경제를 軸으로 하는 世界思潮와는 달리 ‘思想革命’을 강조함으로써 시대적 착각의 산물이 되고 말았다.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金正日是 “당은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조직”이라며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향도되며, 사회주의사회의 전진은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¹⁰⁾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의 령도가 곧 사회주의 위업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이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상황에서도 권력체제 내에서 黨의 位相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正日是 ‘大衆的 黨 建設路線’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계급적 정치조직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아왔다. 당은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지만 당을 일정한 계급만을 위한 당으로 건설하여서는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로동계급의 당을 전체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하는 모든 계급·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당건설

9) 金正日,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 10) 참고.

10) 金正日,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의 기본원칙”, 같은 책 참고.

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당의 革命的·勞動階級的 성격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勞動階級 이외에도 농민과 인텔리를 革命化·勞動階級化하여 더 많은 지지자를 유도하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가. 黨의 成立背景

북한은 「朝鮮勞動黨」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었다고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당의 명칭은 1946년 8월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의 역사는 1945년 10월 10일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平壤에서는 비밀리에 「朝鮮共產黨 西北5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가 열렸었다.

이것은 각지에 산재한 공산주의자들을 소련 군정당국이 지명·소집한 소규모의 회합인데, 여기서 朴憲永派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서울 소재)을 ‘黨中央’으로 인정하고, ‘1國1黨’ 원칙에 따라 평양에는 ‘分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分局’이란 명칭은 1946년 1월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1946년 4월부터는 아예 「北朝鮮共產黨」으로 개칭하였으며, 그해 8월 북조선공산당은 金料奉의 朝鮮新民黨(1946. 3. 30. 창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1946. 8. 28)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때의 합당대회를 第1次 黨大會라고 칭한다.

第2次 黨大會는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고, 同年 8월 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을 앞두고 「南北勞動黨 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함으로써 과도적인 남북노동당의 합당을 통해 「南朝鮮勞動黨」을 흡수하였으며, 1949년 6월 30일에는 「朝鮮勞動黨」으로 명칭을 바꾸고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黨의 理念 및 目標

현재 북한은 “당은 사상의 공통성에 의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조직”¹¹⁾인 만큼 당대열은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꾸려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에서 共産黨의 붕괴는 革命思想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저들은 社會主義體制에서 ‘사상은 곧 생명’이라고 한다.

노동당의 창립이후 黨의 지도사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노동당은 創立大會로부터 第4次 黨大會(1961. 9)까지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黨의 지도사상이라고 규정하였는데, 第5次 黨大會(1970. 11)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主體思想만을 黨의 唯一한 지도사상으로 공표하게 된 것은 第6次 黨大會(1980. 10)에서이다. 즉,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黨의 指導思想의 변화 추세로 보면 북한은 主體思想을 어떻게 ‘우리식 사회주의’에 걸맞는 사상으로 主體化시켜 나가느냐에 부심하는 것 같다.

金正日이 1992년 10월 10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黨의 기본임무”라고 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變化와 소련에서의 共産黨 崩壞 및 聯邦의 해체를 본 북한 입장에서는 黨의 지도사상인 主體思想으로 黨뿐 아니라 사회도 一色化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1) 같은 글 참조.

다. 黨의 組織과 役割

현재 북한은 金正日의 권력세습이 아직 制度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共産黨이 붕괴되는 등 내외로 政治的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노동당의 組織問題는 내외로 몰아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不敗의 統一團結’을 어떻게 이룩하느냐에 있다.

金正日是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된 정치조직으로서 그 조직사상적 기초를 어떻게 쌓는가 하는 것은 그 존망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는 문제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제기될 때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재 노동당의 中心課業은 ‘당의 통일단결’이다.

金正日是 이 중심과업을 위해 우선 “당조직을 사상을 기본으로 꾸리는 것이다. 당을 사상으로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간부대열을 당과 수령,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당은 이것을 바탕으로 “전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필승불패의 전투적 대오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동구에서의 社會主義 실패는 당내의 간부들 중에서 혁명의 背信者가 생겨서 黨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노동당의 간부를 구성하는 것의 기준은 指揮能力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思想의 堅實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당의 간부는 골간력량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규정하며 “당과 수령, 혁명에 충실성은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이라고 하였다.¹²⁾

12) 같은 글 참조.

북한의 노동당조직의 원칙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이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民主主義와 中央集權制가 합해진 용어이다. 여기서 民主主義는 당 지도기관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中央集權制는 국가권력이 중국적으로 最高權力機關에 집중되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義務的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金正日은 그의 논문에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중앙집권적인 규율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면서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이 한사람 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사업체계와 질서가 될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¹³⁾고 하였다. 여기서 모든 권력이 黨中央인 金正日에 집중되며, 그 지시에 一絲不亂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勞動黨의 조직체계는 당규약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黨大會이며,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開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黨中央委員會가 최고지도기관이다.

黨中央委員會는 6개월에 1회 이상 全員會議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全員會議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는 해당 시기에 黨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를 선거하며, 黨中央委員會 總秘書와 秘書를 선거하고 黨中央委員會 秘書局과 軍事委員會를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秘書局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과제 등 黨內問題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할 만큼 핵심부서이다.

13) 같은 글 참조.

그리고 地方黨組織으로 전국을 거미줄처럼 묶어 놓았다. 道(직할시)·市(區域)·郡 수준에 중앙당의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해당하는 각급 「黨代表會」와 「黨委員會」가 있고 1급과 2급 공장, 기업소에는 「工場 黨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市·郡 黨委員會 밑에는 초급 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위원회 밑에는 分初級黨委員會와 部門黨委員會, 黨細胞가 있다. 黨의 최하기층 당조직은 黨細胞이다. 初級黨組織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둔다고 하며, 黨細胞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國家機關

북한은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3차회의(1992. 4. 9)에서 社會主義憲法을 개정하였다. 이 改正憲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구헌법을 고쳐 채택한 소위 ‘社會主義憲法’을 20년 만에 다시 수정한 것이다.

금번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내용은 첫째, 헌법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舊社會主義憲法에서는 주석을 소환하지 못했으나 新憲法에서는 소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91조). 둘째, 북한 주민의 政治的 不滿을 해소하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代議員의 임기를 5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最高人民會議 권능을 확대하고 있다. 金日成도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國家豫算의 심의 등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最高人民會議 개최 및 憲法改正에 있어 2/3 이상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견제적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셋째, ‘國防’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軍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 보위에 두고 4대군사노선(全民武裝化, 全國要塞化, 全軍幹部化, 全軍現代化)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社會主義體制 고수를 위한 軍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金正日이 제1부위원장으로 있는 「國防委員會」를 중앙인 민위의 산하기관에서 빼내어 별도기관으로 만들고 격상시켜 主席 다음의 기관으로 신설, 金正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켜 주었다.¹⁴⁾

그러나 新憲法에서 변화하지 않은 것은 첫째, 노동당의 영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하였다. 둘째,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하였다. 셋째, 人民民主主義階級獨裁를 강화하고 있다(제12조).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은 전연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新憲法에 따른 국가기관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主權機關

(1) 最高人民會議

最高人民會議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最高主權機關으로 그 기능은 형식적이며 黨의 영도하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 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臨時會議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代議員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현재, 最高人民會議는 1990년 4월 22일 실시된 제9기 대의원선거에서 선출된 代議員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수는 687명이다. 代議員은 인구 3만명을 단위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單一候補에 대해

14) 北韓의 改正憲法 分析은 「週間 北韓動向」, 제100호(통일원, 1992. 11. 22~28) 참고.

100% 찬성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금번 改正憲法에서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외적으로 「外交委員會」, 「統一政策委員會」에 참여하여 현안문제들을 심의하며, 대내적으로는 주석 및 부장의 인사문제와 國家豫算을 심의하는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설기구에서 결정하고 지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소수의 행정그룹에 의해서 運用하도록 되어 있다.

最高人民會議의 권한의 확대는 인민대중의 政治的 不滿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데 있으며, 이것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體制崩壞를 불러 일으켰던 분노한 군중을 의식한 것이다. 따라서 체제를 開放·改革한다기보다 오히려 체제를 守護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제9기 대의원선거시에는 友黨인 사민당 및 무소속을 참여시켰는 바, 內容의으로는 노동당이 지명한 單一候補를 무조건 당선시키는 기계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선거를 과시하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와서 최고인민회의는 金正日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南北基本合意書」와 「核安全協定」 등 국가 중요문제를 심의·결정토록 하여 인민대중의 政治參與를 선전하고 있다.

最高人民會議는 우리 國會와 비교할 때 입법권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같을 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대의원의 地位가 다르다. 代議員은 노동당이 지명한 單一候補들이며, 직능인으로 대의원을 겸직하고, 1년에 한두번 회의가 開催될 때만 참석하여 대의원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領導하에서 활동하므로 最高主權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최고인민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는 黨祕書局 祕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예컨대 대의원자격 심사위원장은 金仲麟 당비서이며, 통일정책위원장은 尹基福 비서,

외교위원회위원장은 金容淳 비서가 맡는 등 산하기구 위원장 자리를 모두 秘書局 秘書들이 맡고 있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의 權限이 대폭 확대되기는 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法案과 法令을 심의하며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 등으로 보아 소수 지도그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우리의 國會機能과 다르다.

(2) 主席

主席制는 김일성의 유일적 領導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1972년의 社會主義憲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헌법상 主席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이며, 대외적으로 공화국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며 政務院을 지도한다. 그리고 주석은 人民軍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을 겸직하며 소환규정이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新憲法에서는 주석의 권한에서 모든 軍事部門의 겸직 등 일체 武力의 지휘·통솔권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소환제도를 만들어 권위를 弱化시켰다. 이것은 헌법의 권위하에 統制받도록 한 것이다.

新헌법에서 主席職位는 정치권력의 실질적 권한을 제외시키고 國家首班이라는 상징적 기능만을 남긴 인상을 주고 있다. 주석의 任期는 4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中國의 국가주석제와 비교하면 中國의 國家主席은 임기 5년으로 1회 連任이 가능하다. 반면, 북한은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制限條項이 없다. 또, 중국에서는 主席이 사고가 생기면 副主席이 그 직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繼承條項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주석제는 1인의 長期執權을 가능케 하고 있다.

(3) 國防委員會

금번 개정헌법의 특징의 하나는 國防委員會가 별도 국가기관으로 처음 新設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社會主義憲法에서는 國防委員會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일개 委員會에 불과하던 것을 主席 다음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이것은 金正日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있는 점으로 보아 軍部掌握을 통해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저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國防委員會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무력사용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군사간부의 任命 또는 解任은 물론, 유사시 戰時狀態와 動員令을 선포하는 등 주요 군사문제의 決定과 命令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14, 115조).

國防問題에 관한 별도의 제도화는 軍이 비군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의미도 숨意되어 있다.

(4)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는 主席인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된 社會主義憲法에서 신설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金日成主席이 지도하도록 규정된바 주석에게 權力集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설 당시 이 기구는 ‘국가주권의 最高指導機關’의 역할을 위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에서 國防 등 국가 중요권한을 인수하여 막강한 權限을 행사토록 하였다. 그러나 금번 개정헌법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권한 중에서 인민의 최고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最高人民會議」에, 군사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은 「國防委員會」에 이관함으로써 명목상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 남게 되었다.

인적 구성면에서도 신설 초기에는 黨·政·軍의 최고실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었으나 1990년 제9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성된

중앙인민위원회에는 道黨責任祕書 겸 人民委員長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된 점이 특징이다.

나. 行政機關

(1) 政務院

정무원은 行政執行業務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政務院 總理는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도록 신헌법에서도 변함없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무원은 總理 1人, 副總理 10人이 있으며 정무원 조직은 15委員會, 28部, 1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1992. 12. 11)에서 延亨默 總理를 해임하고, 姜成山(咸北道黨責任祕書)을 선임하였다. 姜成山은 이미 1984년에 總理로 재직한 바 있다. 북한의 정무원 총리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1977. 12)부터 經濟專門家들로 선임되어 왔다. 즉, 李鍾玉, 姜成山, 李根模, 延亨默 등은 經濟專門家들이다.

다. 裁判機關 및 檢察機關

북한은 1990년에 들어와서 社會主義民法를 정비하여 公布하는 등 다양한 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준수하도록 더욱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改革·開放의 자유화물결이 유입되어 사상적 동요와 집단주의의 조직성이 이완될 것을 豫防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개정헌법에서 裁判機能의 하나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제155조 2항)고 되어 있다.

또한 檢察機能은 주로 ‘監視機能’으로 명시되고 있는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제165조 1항)고 되어 있다.

裁判機關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제152조)고 되어 있다.

中央裁判所長은 「최고인민회의」에서(제91조 12항), 中央裁判所判事와 人民參審員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출하며(제101조 9항) 그리고 이들은 각각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를 받는다(제120조 3항).

檢察機關으로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있다(제162조).

中央檢察所長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며(제91조 13항), 檢事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인한다(제164조).

6. 權力世襲의 過程과 展望

가. 權力世襲의 過程

1990년에 들어와서 金正日의 權力世襲 추진작업은 급히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즉, 추진과정을 時期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1990년 5월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이 되었으며,
- △ 1991년 12월에 노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人民軍最高司令官」으로 추대되었으며,

△ 1992년 4월에 「人民軍 元首」 계급장을 수여받았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되는 것은 金日成이 80회 생일을 앞두고 가진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와의 單獨會見(1992. 4. 12)에서 “그는(金正日)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그에 의해 다루지고 있다.”¹⁵⁾고 주장하였다.

이후 金正日是 軍 將星級 664명을 진급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는가 하면, 同年 6월에 외국고위층 招待晚餐을 최초로 주최하였고 대내적으로도 現地指導 외에도 자신의 ‘친필서한’, ‘감사문’ 전달과 ‘환갑·진갑상 차려주기’ 등의 이색적인 歡心行事를 펼치며, 統治者的 이미지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특히 金正日是 1992년 1월에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란 談話를 발표하였는가 하면, 同年 10월에는 黨創建 47주년에 즈음하여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란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黨의 總祕書만이 할 수 있는 당의 總路線 문제를 金正日의 명의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首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보면 金正日의 권력세습은 權力의 實勢인 軍의 지지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權力世襲의 正當化

사회주의국가는 反封建을 표방하므로 權力世襲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수령의 革命偉業 계승을 내세워 정당화하고 있다.

15) 朝鮮日報, 1992. 4. 15.字 참고.

북한은 제6차 당대회(1980. 10. 10)에서 공식적으로 革命的 繼承性이 보장되지 못할 때 수령이 개척한 革命偉業이 커다란 시련을 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래 金正日의 권력세습을 ‘革命繼承論’, ‘血統繼承論’, ‘金日成化身論’ 등으로 정당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東西古今의 어느 정치이론에도 없는 용어들을 만들어 權力世襲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에서 최고권력자의 사후에 人格的 格下나 政治的 混亂을 보았기 때문이다. 즉, 조충련의 「幹部學習提綱」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首領에게 충실하지 못한 후계자는 후계자가 아니다...중국의 경우 毛澤東이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여 林彪와 江青 등 4인 무리들의 반당적이고 독자적 행동이 나타났으며, 소련의 경우는 스탈린 사후에 후계자가 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에 忠實하지 못하여 반감을 가지고 모독하였으며, 심지어 묘까지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에게 권력승계는 ‘死活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즉,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權力承繼의 주관적 기준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가이다. 金正日은 1992년 10월에 발표한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 客觀的 根據를 제시한다. 즉, “사회주의 집권당이 붕괴된 책임은 결코 일반 당원, 대중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혁명적 령도의 계승성을 옳게 보장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지혜도 령도력도 덕성도 인민대중속에서 체득된다. 인민이 선생이며 인민을 떠난 탁월한 지도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만큼, 首領 위주의 後繼者가 아니라 人民大衆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지도자”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共產主義運動의 지도자는 階級鬭爭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었지만 社會主義社會의 새세대 지도자는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들은 결국 金正日이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의 政治局 常務委員이며 黨祕書職으로부터 권력세습화의 길을 밟아 온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다. 金正日의 權力基盤

현재 김정일은 黨·政·軍의 首位로 불려지는 만큼 黨·政·軍이 권력의 基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⁶⁾ 金正日이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上層部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래 그의 지지기반을 다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金正日은 黨外組織으로 지휘를 받던 3대혁명소조를 黨內組織으로 끌어들여 3대혁명소조의 책임부장을 그의 매제인 張成澤에게 맡게 한 것으로 보아도 노동당이 金正日의 權力基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은 1984년에 3大革命小組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대혁명소조는 당중앙의 지도가 하부말단에서 제때에 정확히 구현되도록 아래를 도와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상·기술·문화혁명에서 당중앙의 지도밑에 활동하는 지도력량이며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방조자입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紅衛兵같은 조직을 당의 공식조직으로 흡수한 것이다. 1992년 12월 10일 당 중앙위 제6기 제20차전원회의에서 金正日의 오른팔격인 張成澤은 黨中央委 委員으로 승격되었다.

16) 柳錫烈, 「남북관계론, 권력세습篇」(정음사, 1985)

고병철, “북한의 정치변화”,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참조.

拙稿, “北韓의 黨·軍關係”, 「北韓研究」, 1992, 가을호 참조.

그러나 金正日의 권력기반에서의 核心은 역시 軍隊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12월에 김정일이 人民軍 最高司令官이 된 이후 軍의 領導權을 인계받고 軍에 대하여 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1992년 3월 18일, ‘軍民一致 模範郡·市·區域 稱號’를 제정하여 ‘軍·民一致’의 결속을 촉진시켰으며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군부대를 방문, 지원토록 했다.
- △ 1992년 4월 20일, 軍 장성급 664명에 대한 進級人事를 단행하였다. 金正日은 이들에게 ‘별의 잔치’를 벌여 그들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 △ 1992년 7월 27일, 6·25전승기념비를 휴전기념일에 맞춰 탑높이를 27미터로 하는 탑건립 착공식을 개최하였는가 하면 榮譽軍人과의 결혼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金正日의 공적의 하나로 선전케 했다.

이상의 조치들을 통해서 金正日이 軍에 支持基盤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외의 지지기반으로는 萬景臺革命學院 출신들과 革命組織들, 당의 전투적 後備隊인 「社勞靑」(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등을 꼽을 수 있다.

라. 金正日의 偶像化實態

북한은 金正日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金日成을 偶像化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양한 선전물로 조작·날조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에게 선심과 호의를 베푸는 등 偶像化의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¹⁷⁾

북한은 金正日을 1970년대에는 ‘黨中央’으로 표현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친애하는 指導者同志’(친지동)라는 호칭을 써왔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미래의 偉大한 首領’(1991년) 그리고 ‘黨·國家·軍隊의 首位’(1992. 7)라는 호칭이 가끔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1992년 10월 방송의 한 논설에서는 ‘統一의 嚮導者’로까지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金正日의 지도범위가 당·국가·군대뿐만 아니라 南北對話 및 統一問題 등 모든 부문에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金正日의 出生地를 날조하여 「백두산 밀영」을 만들었는가 하면, 1987년에는 「구호나무」(나무에 金日成·金正日 찬양문을 새긴 것)를 발굴하였다고 선전하는 한편 백두산 근처에 「正日峯」을 만들었으며, 「모란봉유원지」에 화강암으로 사적표식비를 건립했다고 한다(1992. 10.18). 그 이유는 1958년에 ‘모란봉을 세계적 명승지로 만들려는 金正日의 구상’이 현실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믿어지지 않는 宣傳物을 마구 만들어 북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리고 金正日은 490명의 ‘忠誠스러운 英雄’들에게 생일상, 결혼상을 차려주었다고 하며 나이 많은 敎員들, 奉仕者들에게 진갑상, 환갑상을 차려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주의 용어사전」 출판, 각 사범대학에 ‘親革科’(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동지의 혁명역사학과)를 설치했다고 하며, 金正日이 군대를 私兵化하기 위해 ‘김정일군대’라는 가요을 대량 보급했다고 선전한다.

어쨌든 ‘괴괴한 고요가 감도는 평양’에서는 이토록 金日成보다는

17) 김정일우상화실태에 관한 자료로는 「週間 北韓動向」, 제57호·94호·95호 (통일원) 참고.

金正日의 개인승배 熱氣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世襲體制의 展望

북한에서 金日成이 사망한 후 새로운 指導體制의 형태를 다음 세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¹⁸⁾

첫째, 金正日의 승계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의 1人支配 體制가 확립되는 경우,

둘째, 金正日이 권력을 장악하기는 하지만 여러 반대세력들이 부상하여 이들이 金正日과 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하는 경우,

셋째, 權力鬭爭에서 金正日이 패배하고 다른 인물 또는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경우에서 긍정적 요인은 金日成 生存期間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金正日이 黨·軍을 장악하고 있으며, 主體思想教育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中國의 제도를 모방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도 있다. 즉, 정치적 不自由와 경제적 貧困問題, 불가피한 對外開放으로 인한 자유화바람 유입, 사회상부층에서 體制離反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急變事態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둘째, 集團指導體制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基本指導體制이다. 또한 소련·중국에서는 權力承繼 이후에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集團指導體制를 채택하였다.

금번에 개정한 社會主義憲法을 보면 主席에 집중된 권력을 약간

18) 廉弘喆, “最近北韓의 權力構造變動에 따른 政策方向研究”, 「北韓權力構造와 金正日世襲體制研究」(국통조 87-7-47)참조.

브레진스키의 글, 중앙일보, 1992. 1. 6.字

에버스타트, 「남북한 통일전망」, 조선일보, 1992. 12. 7.字

분산시킨 감이 있다. 즉, 主席에게 자동적으로 행사케 했던 軍統帥 權을 별도로 떼어내어 국방위원회를 最高軍事指導機關으로 만든 것은 일단 권력의 분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김정일이 黨建設의 기본원칙에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원칙”임을 밝히고 있음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지 의문시된다.

셋째, 金正日이 權力承繼에 실패할 경우이다.

브레진스키(Z.Brzezinski)는 金日成死後 엄청난 정치적 불안이 불어 닥치며 勞動黨과 軍部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인 에버스타트(N.Eberstadt)는 권력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移讓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金正日體制가 안정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期待할 요인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金日成·金正日父子 體制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측면에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방문가들의 보고이다. 더구나 루마니아, 동독 등의 共產體制崩壞 그리고 중국의 天安門事態, 소련의 聯邦崩壞 등 역사적 경험은 金正日體制에 대한 부정적 예측을 족히 가능케 한다.

7. 結 言

이제까지 北韓共產體制를 金日成의 전체주의체제의 생성과정과, 그 대물림하는 金正日의 권력세습체제의 윤곽, 변화전망을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북한의 共產體制는 원래 스탈린의 膨脹政策에 따라 소련에서 훈련된 金日成集團을 앞세워 소비에트공산체제를 移植한 데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날조된 抗日革命傳統을 바탕으로 金日成首領 體制를 구축하기 위해 피의 숙청과 족벌정치를 자행하였으며,

偶像化政策과 主體思想으로 體制正當化를 꾀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中·蘇의 양다리외교와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國際社會 내에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金正日體制 출범을 목전에 두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마디로 總體的 危機를 맞고 있다. 현재 북한은 위기극복의 政治戰略概念으로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主體思想에서 발상된 戰略口號이지만 최근에는 ‘동구 사회주의의挫折’에 대한 대외인식과 관련해서 이념화되어졌다.

현재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唯一的 勞動黨의 지도체제 하에서 ‘唯一思想體系’, ‘唯一的 領導體系’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黨을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소위 一心團結의 강조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는 自由化·民主化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북한만은 수령 중심의 全體主義體制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높아진 의식이나 요구는 全體主義體制 속에 ‘溫情’을 베푸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금번 憲法改定도 이러한 발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같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短期的인 生存戰略으로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長期的인 차원에서 보면 한낱 위기극복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의 헌법개정은 中國制度를 모방하여 중국과 統一戰線的 유대를 맺어 대내외적 어려움을 중국의 지원을 받아 타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對南戰略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중국의 정경분리정책을 따라 북한도 정치는 首領體制를 고수하며, 사회는 思想動搖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개방하면서 인민대중의 民生問題를 해결하려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체제의 轉換過程에서 천안문사태나, 루마니아·동독에서 보았던 大衆

의 붕기를 전연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改革·開放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체제전환을 희망하며 그 토대 위에서 南北韓 關係改善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急變事態에도 대비함으로써 統一過程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Ⅱ (北韓의 經濟

教授 梁 在 成(行博)

1. 序 言	45
2. 經濟體制와 政策基調	47
가. 經濟體制的 特徵	47
나. 經濟政策的 基調	52
다. 對內外的 問題點	54
3. 北韓經濟의 展開過程	56
가. 社會主義經濟體制的 基礎確立	56
나. 社會主義經濟計劃의 推進	57
4. 主要 部門別 現況	63
가. 總量部門	63
나. 財政規模	64
다. 農·水產業	65
라. 鑛·工業	66
마. 輸送·通信	71
바. 貿易 및 外債規模	72

5. 南北經濟共同體 形成方案	74
가. 「南北基本合意書」에 따른 期待效果.....	74
나.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基本方向.....	75
다.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接近方法.....	77
라. 南北韓 經濟統合의 可能性.....	81
6.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對外經濟協力	82
가.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82
나. 豆滿江地域開發計劃.....	84
다.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計劃.....	87
라. 外國人投資關聯法規의 主要內容	90
7. 結 言	92

1. 序 言

북한은 아직까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社會主義經濟體制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國民經濟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강도 높은 중앙집권화와 함께 밀도있는 경제계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라고 한마디로 통칭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산·분배·지출 등 일련의 북한 경제의 흐름과 구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資本主義經濟體制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소위 ‘주체경제’라는 미명아래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데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蘇聯의 改革·開放政策의 추진 이후 동구권에서 불고 있는 改革과 民主化의 열풍, 동·서독의 統一, 소연방의 解體 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냉전체제가 終熄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의 周邊情勢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1991년 9월의 남북한 UN同時加入, 동년 12월 북한의 「羅津·先鋒地區 自由經濟貿易地帶」 개발구상 발표, 1992년 2월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自力更生을 앞세워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固守하여 왔던 종래의 자세에 일련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어려운 經濟狀況과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

해 왔던 蘇聯邦의 해체, 사회주의국가간의 硬貨決濟를 통한 무역 방식의 轉換 등 여건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의 開放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남북한간 交流의 확대와 북한의 對外開放에 따라 북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그 정확한 現況과 實態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경제를 比較, 研究하는 데 있어서 이질적인 體制에서 오는 여러 經濟變數들의 정의·개념의 차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폐쇄성에서 오는 정확한 통계의 制限性과 信憑性에 대한 의문 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귀결이다.

따라서 本教材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經濟實相을 좀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앞으로 전개될 南北經濟交流協力, 북한의 경제개방화 정책에 따른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計劃, 최근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등에 관하여도 개괄적이거나 내용의 해설에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民族的 宿願인 통일을 주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經濟實態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북한도 우리의 통일방안에 입각한 民族經濟共同體回復에 동참하는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經濟體制와 政策基調

가. 經濟體制的 特徵

일반적으로 經濟體制란 주어진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경제활동, 즉 생산, 유통, 분배,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組織과 秩序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體制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의사결정의 分權化,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資本主義의 市場經濟體制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의 中央集權化,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권, 통제 및 명령체계, 비경쟁, 자금자족의 폐쇄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社會主義의 命令經濟體制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理念에 따른 것이나, 각국은 經濟生活을 영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經濟體制的 종류는 그 경제사회의 수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항상 고정 내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再形成되고 變用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에 의해 蘇聯에서 처음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추구해 온 경제체제는 크게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양분될 수 있다. 經濟體制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마르크스(Karl Marx)는 경제체제의 구분 기준을 生産手段의 소유형태, 經濟的 配分の 결정기

1) 民族統一研究院, 「남북한철강금속산업실태와 교류협력방안연구」(1991), pp.4-6.

구 등으로 보았다.²⁾

최근 東歐諸國은 물론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中國은 鄧小平이 집권한 이후 實用主義路線에 입각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市場經濟의 원리를 암묵적이고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왔으며, 1992년 10월의 제14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原理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社會主義 이념과 체제를 모방하여 스탈린식의 강력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구축,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經濟體制는 정부가 사실상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생산, 생산물의 분배, 통화, 수입·수출 등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첫째, 所有制度 둘째, 資源配分原理 셋째, 意思決定水準 넷째, 分配制度 등에서 자본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다 단순화하여 所有制度和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란 측면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社會主義的 所有制度

북한은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생산수단의 私的所有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전형적인 社會主義的 所有制度를 고수하고 있다.⁴⁾

1992년 4월에 전면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1991), pp.187-188.

3) 金榮奉外 5人共著, “北韓의 經濟體制”, 「資本主義와 社會主義」(世經社, 1989), p.195.

4) 李浩, “北韓의 經濟”, 「民主統一論」(서울: 統一研修院, 1992), pp.48-51.

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國家 및 協同團體만이 소유할 수 있고 國家所有權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1977년 4월에 공포한 「토지법」에서도 토지는 國家 및 協同團體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한편 同法 第13條에는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土地所有權도 실제로는 그 使用權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協同農場員들은 가구당 20~30평 정도의 텃밭(채전)을 개인적으로 경작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협동농장 規約에 의하여 주어지는 使用權이며 개인소유는 아니다. 또한 協同團體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토지, 役畜,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로 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財産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자기를 위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賃金이나, 협동농장원들이 결산분배에 의해 자기 몫으로 받는 現物, 貨幣 또는 그것으로 구입한 消費財에 불과하다.⁷⁾ 다만, 협동농장원들에게 주어진 텃밭에서 생산한 生産物이나 부업으로 얻는 생산물은 個人所有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의 所有制度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金日成은 현재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土地 및 生産手段은 장차 ‘전인민적 소유’(국유)로 轉換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⁸⁾ 이 단계를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農地의 장기임대 및 경작권의

5) 북한 헌법, 제2장 경제의 제20조~제22조 참조.

6) 북한 토지법, 제9조 참조.

7) 북한 헌법, 제2장 경제의 제24조에 규정.

8) 북한 헌법, 제2장 경제의 제23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상속 등 농업의 私營化를 인정하려는 중국의 경우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요약하면 북한의 社會主義的 所有制度는 첫째, 全人民의 所有 즉 국가소유 둘째, 協同的 所有 즉 협동단체의 소유로 大別할 수 있고, 이밖에 극히 부분적인 個人所有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中央集權的 計劃經濟制度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나 세가지의 근본적인 經濟問題 즉, ①무엇을(生産物의 構成) ②어떻게(生産의 方法) ③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生産物의 配分)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市場과 價格機構의 매개와 조정의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計劃經濟體制下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인위적으로 수립된 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市場經濟體制는 생산의 無政府性으로 인하여 불경기와 경제공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經濟發展의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失業이 발생하게 되고 資本家들은 실업을 노동의 榨取手段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社會的 所有를 기초로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計劃化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와는 달리 안정된 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시 내각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計劃經濟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에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國·公有化가 완료되어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경제운용은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가 중

심이 되어 勞動黨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은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一元化와 細分化를 동시에 요구한다. ‘인민경제계획’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각 부문(農林, 水産 및 鑛工業)별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상품유통계획, 무역계획,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수매양정계획,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計劃項目들은 수없이 많은 計劃指標들로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細部計劃指標들은 다시 시간단위에 따라 장기계획전망,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등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로 인해 야기되는 계획·관리업무의 방대성 때문에 경제부문간의 심한 불균형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자,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9월 이후 省(지금의 정무원 部, 委員會), 중앙기관, 도 인민위원회(지금의 道行政經濟指導委員會), 도 농촌경제위원회 등 각급 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計劃部署들을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단위로 개편하여 계획사업의 中央集權化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北韓經濟는 “기업소로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 관리체제로 조직되어 있다.”⁹⁾고 한다.

이러한 計劃管理業務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북한 중앙행정기구인 政務院의 총 47개 기관(15委員會, 28部, 1院, 2局, 1銀行)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經濟管理機關으로, 시장경제체제하의 분권적 관리체제보다 오히려 관료화에 따른 비능률만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북한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건(1)」(1985), p.93.

나. 經濟政策의 基調

각국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國民厚生과 福祉의 증대에 있다. 북한도 외형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 경제문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전면적으로 맞게 수립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추진해 온 經濟政策들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이익이나 복지·후생의 증대보다는 군사력 증강 등 社會主義 革命完遂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政策路線에 따라 인민대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요 경제정책의 基調 내지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1) 自立的 民族經濟建設

북한은 經濟體制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自力更生の 원칙을 앞세워 自立經濟를 구축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自立的 民族經濟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이 다양하고 부단히 성장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民族幹部와 자기 나라의 賦存資源과 原料資材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10) 같은 책, pp. 112-113.

11) 조선노동당출판사,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경험」(1983. 8)

또한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주요산업 국유화, 농업의 협동화,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조건으로 하고, 중공업의 우선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인민 경제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그 방도로 하였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自己完結의이고 排他性이 강한 자립경제건설노선으로서, 국제경제협력에서 오는 이익을 도외시한 정책노선에 불과하다.

(2) 重工業 優先政策

북한은 重工業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基幹工業 部門들과 임업이 重工業에 포함된다.¹³⁾

북한은 經濟體制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초기부터 重工業 優先政策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무리한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으로 경공업, 농업 등 여타 산업부문들과 심각한 不均衡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軍事·經濟竝進政策

이 정책은 1962년 노동당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¹⁴⁾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經濟發展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하여,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竝進政策을 추진

12) 같은 책 참조.

13) 「백과전서」4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695.

14) 4대군사노선이란 전지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말한다.

하여 오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66년 10월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제기되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북한의 軍事·經濟竝進政策은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重工業優先政策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國防力을 강화할 수 없다는 論理를 기초로 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있다.¹⁵⁾

다. 對內外的 問題點

북한 경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기본정책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構造的인 문제점과 동구권 및 소련의 개혁·개방 등에 따른 대외적인 環境與件의 변화에 따라 만성적인 長期沈滯에 빠져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경제관리체제의 非能率性이다.

이는 私有財産制度의 부정, 市場 및 價格機構의 부재로 인한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의욕의 低下, 자원배분의 왜곡 등 경제의 合理的 管理가 불가능한 데 기인된 것이다.

둘째, 自給自足的 閉鎖經濟 즉 ‘아우타르키(autarkie)체제’로 인한 자본의 부족과 기술의 낙후현상이다.

自力更生을 원칙으로 하는 自給自足經濟體制下에서는 자본의 부족, 기술의 낙후로 산업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단위당 生産費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과 같은 개발수준이 낮은 경제에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통해 경제의 成長과 發展을 꾀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외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5) 統一院, 「北韓概要」(1992), pp. 114-115.

16) 李浩, 앞의 책, pp. 54-55.

셋째, 産業構造의 불균형과 地域間·階層間 불균형의 심화현상이다.

중공업 우선, 軍·産複合體政策 등으로 산업 부문간의 불균형은 물론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에너지 및 소비재의 고질적인 부족,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 격차, 黨·政官僚와 일반 소비자들간의 소비생활 隔差 등이 사회적 불만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된다.

넷째, 軍事費 부담의 과중과 投資의 비효율성이다.

북한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부문과 金日成 偶像化와 관련된 대형 상징물의 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에 둠으로써, 資源의 낭비가 극심한 가운데 재정적자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投資財源 부족현상과 더불어 나머지의 염출된 투자재원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生産活動이 부진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이 직면한 國際經濟環境으로부터의 고립화 현상도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東歐共產圈의 붕괴, 蘇聯邦의 해체 그리고 소련, 중국의 友好價格¹⁷⁾ 폐지 및 硬貨決濟 요구로 인한 대외무역의 격감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고 있으며 이의 타개를 위해서는 과감한 經濟改革과 開放이 요구된다.

17) 友好價格 : 종래 중·소가 북한에 지원해 주던 상품의 거래가격을 국제시세보다 50% 수준으로 할인한 가격

3. 北韓經濟의 展開過程

가.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基礎確立

(1)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북한은 南北分斷 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지하자원·산림·水域 국유화와 같은 社會主義化 改革을 단행,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土地改革法令」을 공포하고 無償沒收·無償分配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 農耕地 약 200만 정보 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無償으로 몰수되었고 이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分配되고 나머지는 모두 國有化되었다.¹⁸⁾

1953년 8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2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農業協同組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郡에 1~2개씩의 農業協同組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集團化運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農業集團化를 착수한 지 불과 5년 만인 1958년 8월에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당시 농업협동조합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의 協同組합은 평균 80호 농가로 조직되었고, 耕地面積은 1개 조합당 130정보였다.

그후 1961년 11월 郡(區域)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인 郡(區域)농업협동조

18) 統一院, 「北韓概要」(1992), pp. 148-151.

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郡內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즉, 1962년부터 오늘의 協同農場經營體系가 확립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도 協同農場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¹⁹⁾

(2) 主要産業의 國·公有化

1946년 8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主要産業國有化法令」을 공포하여 일체의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國有化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全體産業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社會的 所有로 전환되었다.²⁰⁾

한편 個人이 경영하던 소규모의 공장, 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 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生活必需品の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란 정책을 취해 오다가 결국 이것들마저도 國·公有化해 버렸다.

북한은 農業集團化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協同化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상·공업 부문은 농업부문과는 달리 완전 國有化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社會主義經濟計劃의 推進

북한은 1947년부터 經濟計劃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주의적 경제의 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經濟計劃이 추진된 것은 1961년의 제1차 7개년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主要短期計劃으로는 제1차 1개년 계획(1947년), 제2차 1개년 계획(1948년), 2개년 계획(1949~1950년), 戰後復舊 3개년 계획(1954~1956년), 5개년 계획(1957~1960

19) 같은 책, p.137.

20) 같은 책, p.151.

년) 등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의 주요 長期計劃 推進實績은 다음과 같다.²¹⁾

(1) 第1次 7個年計劃(1961~1970년)

북한은 1961년부터 1950년대 후반의 5個年計劃에서 구축된 工業基盤을 더 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한 7個年計劃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 경제는 기계제작 공업을 중심으로 한 重工業育成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工業化를 위한 초보적인 基盤造成이 불균형한 상태로나마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1961년 7월의 쿠바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軍事力增強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고 군비확장을 꾀하였으며, 특히 中·蘇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對北援助 격감으로 1966년 10월 勞動黨 代表者會議를 통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목표에 미달하였다.

(2) 6個年計劃(1971~1976년)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를 통해 3大技術革命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個年計劃을 마련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계획 기간중에는 서구로부터의 資本, 技術 및 設備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借款 및 延拂輸入代金を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外債問題를 야기시켰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 등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計劃目標

21) 같은 책, pp. 152-161. 계획기간별 주요목표와 실적은 표1, 표2 참조.

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5년 8월 同計劃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그후 무려 2년간의 緩衝期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計劃期間이 1년간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第2次 7個年計劃(1978~1984년)

1978년부터 착수된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인민경제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 1.9배, 공업 총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主要目標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目標年度인 1984년이 지나도록 同計劃의 완수 및 추진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가 없다가 1985년 2월 16일 국가계획위원회 中央統計局은 1984년 말을 기해 同計劃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북한은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 「4大自然改造事業」²²⁾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1984.1)에서 對外經濟事業 및 貿易擴大方針을 채택하고 「合營法」 제정, 공포 등과 같은 대외경제 개방조치를 취했으나 역시 실적은 부진했으며 2년간의 調整期를 거쳐 第3次 7個年計劃으로 넘어갔다.

(4) 第3次 7個年計劃(1987~1993년)

第3次 7個年計劃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主體

22)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의(1981.10) 결정.

4대 자연개조사업이란 20만정보 새땅찾기, 30만정보 간석지개간. 태천발전소 건설, 서해감문 건설 등을 말함.

化·現代化·科學化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10대전망목표 실현 등을 計劃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同計劃에서 주목할 것은 ①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貿易과 對外經濟協力の 확대, 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技術革新을 중진처럼 勞力動員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經濟開發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貿易과 對外經濟協力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국민소득의 3.4%를 科學技術開發에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이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7~1991년)에서 科學技術投資를 3%까지 높일 것을 계획한 것과 비교하여도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意慾을 짐작할 수 있다.

第3次 7個年計劃期間중 경제성장목표율을 7.9%로 잡았으나 1990년까지의 중간실적은 1.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²³⁾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과 동구·소련공산주의의 붕괴 등 國際環境의 변화로 인하여 1990년도의 -3.7% 성장에 이어 1991년도에도 -5.2%의 經濟成長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第3次 7個年計劃의 실패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최주환, 「북한경제론」(대왕사, 1992), pp. 40-42.

<표1>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기본과업	주요 목표	실적
제1차 7개년계획 ¹⁾ (1961~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2.7배 공업총생산: 3.2배 양곡수확고: 600~7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총생산: 3.3배 기계계속공업성장율: 18.4% 노동생산성성장율: 147.5% 양곡수확고: 미발표 계획기간 3년연장
6개년계획 ²⁾ (1971~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8배 공업총생산: 2.2배 양곡수확고: 700~7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7~1.8배 공업총생산: 2.5배 기계계속공업성장율: 19.1% 노동생산성성장율: 155% 양곡수확고: 800만톤(1976년)
제2차 7개년계획 ³⁾ (1978~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 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 향상 독립채산제 강화 대외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양곡수확고: 1000만톤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총생산: 2.2배 전력생산성장율: 178% 철강생산성장율: 185% 공작기계생산성장율: 167% 양곡수확고: 1000만톤(1984년) 시멘트·합성수지·직물생산 목표달성 철도 60% 전철화
제3차 7개년계획 ⁴⁾ (1987~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 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 	추진 중

※ 출처: 1) 북한 노동당 4차 대회 보고(1961. 9. 11)

2) 북한 노동당 5차 대회 결정서(1970. 11. 12)

3)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 1차 회의(1977. 12. 15)

4)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 2차 회의(1987. 4. 21)

※ 「북한개요」(통일원, 1992. 12), p.155에서 재인용

<표2>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계획 수치

구분	3차 7개년계획	2차 7개년계획	
	목 표	목표	실적
• 전력(억 kwh)	1,000	560~600	-
• 석탄(만 t)	12,000	7,000~8,000	7,000
• 철강(만 t)	1,000	740~800	-
• 비철금속(만 t)	170	100	-
기계(배)	2.5	(500만 t)	2.3
• 화학비료(만 t)	720	500(1.6배)	500
화학섬유(만 t)	22.5	(1.8배)	(1.8배)
합성수지·가소제(만 t)	50	(합성수지 2배)	(합성수지 2.4배)
탄산소다(배)	4.5	3.4	-
가성소다(배)	2.1	1.8	-
유 산(배)	3	1.9	-
• 시멘트(만 t)	2,200	1,200~1,300(생산능력 1,200)	-
• 직물(억 m)	15	8	8
지방공업(배)	2.5	2.4	-
• 곡 물(만 t)	1,500	1,000	1,000
쌀 (만 t)	700	-	-
• 간척지조성(만 ha)	30	10	-
경지10ha당트랙터수(대)	10~20	10	-
1ha당 화학비료소비량(t)	2.5	2	-
육류생산(만 t)	170	80~90	-
계란생산(억개)	70	-	-
산림구성(만 ha)	150	-	-
과일생산(만 t)	200	150	-
• 수산물생산(만 t)	1,100	350	350
어류(만 t)	300	-	-
해조·패류양식(만 t)	800	-	-
주택건설(만세대)	매년15~20	매년 20~30	기간중 수10
기술자·전문가수(만인)	200	-	125
예방치료집단수(배)	1.2	1.3	(290여곳 신설)
병원침대수(배)	1.3	1.2	-
인구1만명당 의사수(인)	4.3	-	-

※ 주 : 1) -은 「10대전망목표」 대상
 2) ()안은 직접비교가 아닌 참고 수치
 3) 2차 7개년계획의 -표시는 미발표
 ※ 「북한개요」(통일원, 1992. 12), p.160에서 재인용.

4. 主要 部門別 現況

가. 總量部門

1991년 현재 북한의 人口는 2203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人口增加率은 1.42%로 남한의 0.9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밀도는 1991년 현재 179.4명으로, 남한의 435.8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經濟統計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도 그 개념이 서방의 GNP와는 상이하므로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評價하는 데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GNP개념으로 추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접근법이 있으나 政府에서는 1990년부터 UN의 國民計定體系(SNA)에 따라 추정하고 있다.

1991년도 북한의 경상GNP 규모는 총 229억 달러, 1인당 GNP는 1,038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經濟規模는 한국의 1/12, 1인당 GNP는 1/6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1991년도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5.2%(1990년도는 -3.7%)로 특히 북한 경제의 중추적 산업부

<표3> GNP 및 經濟成長率(1991년)

구 분	단 위	북 한	한 국
GNP	억불	229	2,808
1인당 GNP	불	1,038	6,498
경제성장률	%	-5.2	8.4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문인 鑛工業이 -10.7%를 기록하는 등 1990년도에 비하여 經濟沈滯가 더욱 심화되었다.

1991년도 北韓의 國內總生產(GDP)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농·임·어업이 28.0%, 광공업 42.9%, 건설업 8.2%, 서비스 20.9% 등으로 평가되어 한국과 비교할 때, 農·林·漁業과 鑛工業部門은 한국보다 높은 반면 建設業과 서비스部門은 한국보다 낮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 財政規模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는 北韓의 재정규모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나 사회에 비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北韓에서는 민간경제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國防, 公共福祉, 社會間接資本, 施設投資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소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金融機能까지도 정부예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1992.4)에서 발표한 1991년도 결산보고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總豫算規模는 세입 173억 달러(371억 9484만 北韓원), 세출 171.7억 달러(369억 924만 北韓원)이었으며, 北韓의 財政規模는 한국의 40.3%(세출기준)에 불과하나 財政負擔率(예산/GNP)은 약 75% 수준으로 한국의 15%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91년도 北韓의 豫算支出內譯을 보면 예산총액의 67.9%(116.4억 달러)가 人民經濟費에 지출되었고, 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문화비에 18.8%, 軍事費 12.1%, 나머지 1.2%가 국가기관 관리비로 지출되었다.

北韓의 세출예산내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은 軍事費 지출

규모인데 북한이 발표한 1991년 예산상의 軍事費는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하는 20억 7722만 달러(44억 6602만 북한원)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군사력(병력, 장비 등) 규모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實質軍事費 지출규모는 55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4> 1991년도 豫算現況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예산총액(세출)	억불	171.7	166
예산/GNP	%	75.0	71.9
군사비(실질)	억불	55.6	49.6
군사비/GNP	%	24.3	21.5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다. 農·水産業

북한은 사회주의건설 초기부터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食糧增産을 독려해 왔으며 지난 1992년 金日成 新年辭에서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흰 쌀밥과 고기국을 먹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임을 언명할 정도로 農業第一主義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영농기술과 경지면적의 협소, 집단농장방식의 채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북한의 農業은 ‘하루두끼먹기운동’이 전국적 차원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극심한 침체국면에 처해 있다.

북한의 耕地面積은 1991년 현재 총 197.4만 정보이며 그중 논은 61.4만 정보, 밭은 136만 정보로 되어 있다.

북한은 경지면적의 확대 없이는 식량증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노동당 제6기 제4차회의(1981.10) 이후 4大自然改造事業의

하나로 30만 정보 간석지 개간 및 관개수로 건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1991년 말 현재 개간중인 간석지 총면적은 약 15,000여 정보로 알려져 있다.

1991년도 穀物生産量은 연평균 수준을 밑도는 총 442.7만톤(精穀基準)으로 8월중의 가뭄피해와 벼바구미 병충해 등이 생산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穀種別 생산내용을 보면 쌀이 164.1만톤, 옥수수 212만톤, 콩류 20.7만톤, 보리를 비롯한 기타 45.9만톤으로 추정되었다. 1991년도 食糧需給實態는 연간 총수요량이 약 640만톤인데 비해 1990년도 생산량은 481.2만톤에 불과하여 1991糧穀會計年度중 식량부족량은 총 159만톤으로 추정되었으며, 북한은 연간 식량총부족량 중 130만톤(1.2억 달러 상당)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食糧配給量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부문은 出漁用 유류 부족, 선박 및 어로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출어일수가 줄어들었으며 沿近海 어족자원 고갈 등의 영향으로 1991년도 水産物 총생산량은 1990년도의 145.5만톤보다 17.5%가 감소한 120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라. 鑛·工業

(1) 鑛業 및 에너지産業

鑛業部門은 북한이 석탄, 전력 등 에너지공업부문과 함께 소위 經濟建設의 선행부문으로 규정하여 개발에 力點을 두고 있는 산업부문의 하나이다.

북한의 鑛業은 석탄, 철광석, 아연,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금 등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되고 있으며 매장량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1991년 현재 북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精鑛基準으로 약 1030

만톤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요 철광산은 무산광산, 은율광산, 재령광산 등이 있으며 자체 생산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나, 1991년도 철광석 생산량은 시설능력의 79.3%인 816.8만톤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에너지 供給構造는 석탄 70%, 수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에너지의 石炭依存率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석탄매장량은 총 147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약 79억톤 정도가 採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탄광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북한의 總生産施設能力은 433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1991년도 實際生産量은 3100만톤으로 1990년의 3315만톤보다도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탄광의 폐광, 장기채굴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生産與件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精油工場은 승리화학공장(함북)과 봉화화학공장(평북) 등 2개가 있으며 연간 총정유능력은 350만톤 수준이다.

1991년도 原油導入量은 총 189만톤으로 1990년도 도입실적 252만톤보다 25% 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정유공장의 연간 가동율은 54%에 불과하였고, 그 감소원인은 1991년부터 러시아가 대금결제 방식을 硬貨決濟方式으로 전환함에 따라 對러시아 원유도입량이

<표5> 에너지産業 現況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석 탄 생 산 량	만톤	3,100	3,315
원 유 도 입 량	"	189	252
발전시설용량	만kw	714	714
(수력)	"	(429)	(429)
(화력)	"	(285)	(285)
발 전 량	억kwh	263	277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전년비 1/10 수준(1991년 : 4만톤, 1990년 : 44만톤)으로 격감된 데 있다.

1991년도 북한의 총발전시설용량은 1990년도 수준인 총 714만 kw로 평가되었으나 發電量은 석탄공급 부진, 시설설비 노후 등으로 1990년도보다 다소 감소된 263억kwh에 불과하여 전력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2) 金屬工業

금속공업은 기계공업과 함께 북한 重工業의 핵심부문이다.

북한은 금속공업을 제철·제강을 내용으로 하는 黑色金屬工業과 금, 은, 동, 연, 아연 등을 제련하는 비철금속 즉, 有色金屬工業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제철·제강공업은 함경북도 청진의 「金策製鐵聯合企業所」와 황해남도 송림의 「黃海製鐵聯合企業所」를 동서지역의 축으로 하고 그 주변에 製鋼工場을 배치하여 생산을 계열화하고 있다.

1991년 현재 북한의 제철능력은 銑鐵이 20만톤 증가된 537만톤 鋼鐵이 4만톤 증가된 598만톤이었으며 壓延鋼材는 404만톤으로 1990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991년도 鋼

<표6> 金屬工業 生産施設能力

단위 : 만톤

구 분	1991年	1990年
선 철	537	517
강 철	598	594
압 연 강 재	404	404
동	9.04	9.04
아 연	29.5	29.5
연	8.75	8.75
알 루 미 늬	2.0	2.0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鐵生産量은 316.8만톤으로 평가되었다.

비철금속은 북한이 1980년대 이후 戰略輸出産業部門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1991년도 현재 생산능력은 1990년도와 비슷한 銅 9만톤, 아연 29.5만톤, 鉛 8.8만톤, 알루미늄 2만톤 등이며, 비철금속의 1991년도 총생산량은 22.7만톤으로 평가되었다.

(3) 機械工業

북한은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전후 복구단계에서부터 기계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제품의 질이나 기술수준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最新設備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정밀기계나 통신, 전자, 자동화공업 등 尖端技術을 요하는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아직도 組立生産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공장설비를 생산하는 일반 기계공장으로는 용성기계총국을 비롯하여 북중기계, 대안중기계, 낙원기계공장 등이 대표적 공장이며, 공작기계공장으로는 희천, 구성, 만경대 및 평양공작기계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철도차량, 조선 등 輸送機械工業部門은 북한 유일의 자동차공장인 승리자동차공장과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6월4일 차량공장(원산철도차량공장),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 등에서 트럭, 전기기관차, 重量貨車, 2만톤급 선박을 자체 생산 및 건조하고 있다.

<표7> 主要 機械製品 生産施設能力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자 동 차	만대	3.3	3.3
공 작 기 계	"	3.5	3.5
조 선	만톤(G/T)	21.4	21.4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1991년도 현재 주요 기계제품의 연간 生産能力은 트럭 3.3만대, 공작기계 3.5만대, 조선 21.4만톤(G/T) 등으로 전년도 生産能力과 변동이 없다.

(4) 化學 및 建材工業

오늘날 세계 化學공업의 발전추세는 대부분 石油化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내 자원의 開發利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石炭化學工業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정유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은 규모도 영세하고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精油工場은 舊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연간 200만톤 원유처리능력의 승리화학공장(함북 선봉)과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연간 150만톤 原油處理能力의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이 있고, 석유화학공장은 서구에서 플랜트를 도입하여 건설한 청년화학종합공장(평남 안주)이 가동되고 있는 정도이다.

建材工業은 시멘트, 판유리,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는 시멘트의 原料인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시멘트공장은 북한 전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1991년도중 化學·건설부문의 생산동향을 보면, 순천비날론공장, 2·8비날론공장 등 기존 공장, 기업소의 확장공사 추진에도 불구하고

<표8> 主要 化學 및 建材工業 生産施設能力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화 학 비 료	만톤	351.4	351.4
화 학 섭 유	"	17.7	17.7
시 멘 트	"	1,202	1,202
마 그 네 샤 이 트	"	300	300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고 生産施設能力은 199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991년도 생산실적은 시멘트 516.9만톤과 化學肥料 143.5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5) 輕工業

경공업은 북한의 공업부문 중 가장 뒤떨어진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극소수의 일부 규모가 큰 방직공장이나 신발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재공장이 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생산규모도 零細하고 제품의 질도 粗惡한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부터는 주민들의 日用生必需品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8·3소비품생산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가 遊休資材나 廢資材를 이용하여 각종 생활필수품을 생산해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 내에는 生必需品工場이나 生必需品作業班이 조직되어 이를 전담하고 있다.

<표9> 主要 消費財生産 施設能力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TV 수상기	만대	26	24
냉장고	만대	12.6	12.6
직 물	억m	6.7	6.6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마. 輸送·通信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구조적 특징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부족과 技術水準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輸送·通信은 지리적인 제약조건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수송은 전체 수송량의 80% 이상을 鐵道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송정책은 鐵道電鐵化 및 廣軌化를 통해 수송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1991년도의 철도총연장은 1990년도보다 14km, 전철총연장은 86km, 포장도로는 144km가 각각 늘어났으며, 전철화율은 65%, 도로포장율은 약 10% 수준으로 평가된다.

通信部門은 1991년중에 특별한 동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침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10> 輸送施設 現況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철 도 총 연 장	km	5,045	5,045
(전 철)	"	(3,280)	(3,194)
도 로 총 연 장	"	23,000	23,000
(포 장 도 로)	"	(1,861)	(1,717)
(고 속 도 로)	"	(3.54)	(3.54)
항 만 하 역 능 력	만톤	3,490	3,490
선 박 보 유 량	"	60	54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바. 貿易 및 外債規模

1989년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난 情勢變化로 북한은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되었음은 물론, 이들 국가의 실리추구경향에 따른 交易條件의 악화로 1990년 이후 무역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1991년도중의 輸出入規模는 전년비 41.4%가 감소된 27.2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수출 10.1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7억 달

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어 赤字幅도 1990년도보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對外貿易의 급격한 감소는 경기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코크스 등의 공급부족은 정유, 철강 등 基幹産業의 가동률을 저하시켜 북한의 중추적 산업인 광공업부문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1> 貿易 現況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무 역 총 액	억불	27.2	46.4
(수 출)	"	(10.1)	(20.2)
(수 입)	"	(17.1)	(26.2)
무 역 수 지	"	-7.0	-6.0

출처 :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북한은 1960년대 있었던 中·蘇理念紛爭의 영향으로 이들 국가의 對北經濟支援이 감소되자,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해 일부 서방선진국들로부터 延拂輸入이나 商業借款 등을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국제에너지파동과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국제경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북한은 대외채무의 償還能力을 상실하여 연체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元利金에 대한 연체이자의 누적 및 貿易收支赤字의 지속으로 북한의 외채규모는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債務償還不履行에 따른 대외신용의 상실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어 왔다.

1991년 말 현재 북한의 總外債規模는 약 92억 7700만 달러로 GNP의 40.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62.7%가 러시아 및 舊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債務이며 나머지 37.3%가 서구은행단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가들에 대한 채무이다.

<표12> 外債 現況

구 분	단 위	1991년	1990년
외 체 총 액	억불	92.8	78.6
외 체 / GNP	%	40.5	34.0
구 사 회 주 의 권	억불	58.2	43.7
서 방 권	"	34.6	34.9

출처: 1991년도 북한경제동향 종합평가, 통일원.

5. 南北經濟共同體 形成方案

가. 「南北基本合意書」에 따른 期待效果

남북분단 46년 만에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南北交流協力の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그 主要內容으로는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같은 經濟交流協力部門의 합의에 따른 예상 후속조치로는 ①陸·海·空路를 연결해야 하므로 저 유명한 표어 “철마는 달리고 싶다”로 상징되고 있는 단절된 京義線, 京元線, 金剛山線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복구공사의 추진 ②우편, 통신, 전기 등을 잇기 위한 南北兩側의 실무협약과 공사 ③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자원의 共同開發, 交易, 合作投資 및 海外共同進出 方案의 모색 등이 있는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나.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基本方向

南北韓은 본질적으로 다른 經濟體制下에서 서로 상반된 開發戰略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自力更生’이라는 구호 아래 비용-수익 측면이나 자본수익률, 자본의 효율적 배분 등에는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으며, 產業構造에 있어서는 낙후된 기술의 鑛工業, 특히 重工業에 높은 비중을 두어 왔다.

반면, 한국은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추구하면서 최종재 생산에 높은 비중을 둔 產業構造를 이루어 왔다. 다시 말해 資源貧國으로서 해외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工業化政策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해외의존도를 가진 경제이다. 그런데 근년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國際競爭力을 잃게 함으로써 輸出伸張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²⁴⁾

24) 최주환, 「북한경제론」(대왕사, 1992), p. 215.

巨視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체제상의 차이로 인하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있어서, 한국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세계시장·국제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은 資源과 勞動力面에서 각각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短期的인 側面에서 남북한간의 經濟交流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장애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양측은 너무나 다른 社會·經濟體制를 갖고 있다(자유시장 경제체제 對 중앙계획경제체제). 둘째, 經濟交流은 미묘한 政治氣流에 제약을 받는다. 셋째, 情報不在에 의한 직접교류의 불가능성 및 소규모 間接交易에 따른 적은 이윤 등이 경제교류를 제약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그들의 經濟構造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전면적인 經濟開放은 주저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南北經濟交流協力の 접근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民族經濟共同體의 조기회복과 統一國家形成을 지향하여 점진적 단계별 접근방식을 택하며, 쌍방의 수용이 용이한 사업부터 順次的으로 추진하되 양측 입장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伸縮性을 가지고 상호 대응·보완적인 共同體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經濟協力を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相互補完可能性을 확인하고 쌍방의 수용이 용이하고 공동의 利益이 존재하는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協力の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은 直·間接交易은 물론 각종 산업면에서 協力 및 合作投資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은 남북

25) 延河清, 「동북아경제순환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한국개발연구원, 1991),

경제의 共同繁榮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外債問題이므로 자본원조, 차관보증 등을 해줌으로써 이를 통해 북한이 債務償還能力을 지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로 인하여 兩側政府의 관리하에서만 交易이 가능할 것이므로 남북한간의 交易에는 ‘經濟協定の 締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보완성이 크며, 나아가 民族經濟共同體가 형성될 경우 남북한 모두 우수한 人的資源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룩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東北亞에서 강력한 경제단위로 등장할 것이다²⁶⁾

다.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接近方法

(1) 分斷國家 經濟交流協力 事例

분단국의 사례로는 東·西獨 사례와 中國·臺灣間 사례가 있다.

먼저 東西獨間 交易은 1946년 초부터 4개 점령국 지역간의 공식 협정에 기초한 物物交換으로 시작되어, 1961년 8월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치, 동서냉전 격화 등 政治的 變動에도 불구하고 약 9,000개의 서독 중소기업과 40개의 동독 무역공사를 거래 당사자로 하여 그 交易規模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1950년대 초반에 7억 4500만 VE(Verrechnungs Einheit : 決濟單位)에 불과하던 東西獨間 交易은 1980년대는 평균 150억VE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독은 동독의 제2의 交易國으로서, 동독은 서독의 제15위 交易國으로서 밀접한 經濟關係를 구축해 왔다.

동·서독간 交易은 1949년 10월에 체결된 地域間 貿易協定(프랑

26) 같은 책.

크푸르트협정)과 1951년 9월 체결되고 1960년 8월에 새로이 수정된 「베를린협정」이 法的根據가 되어 왔으며,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에서도 양측이 베를린協定에 기초하여 교역을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하였다.²⁷⁾

東西獨間 交易은 ‘단일경제단위원칙’ 하에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無關稅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決濟는 양독 중앙은행간에 淸算計定을 설정하여 1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서독교류가 남북한교류에 주는 시사점은 우선 동서독교류의 가장 초기단계가 商品交易이었으며, 뒤이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人的交流가 뒤따랐고, 마지막 단계에서 借款供與와 각종 協力協定의 체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대만·중국간 교역은 華僑를 중심으로 홍콩, 마카오, 일본 등 제3국을 통해 꾸준히 증대되어 오다가, 1985년 7월 臺灣政府가 中國과의 「간접교역 불간섭원칙」을 발표하고 1987년 10월 中國에 있는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등 全面開放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중국간 經濟協力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9년까지 臺灣으로부터 中國에 1,000개 기업, 16억 2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중국측은 대만기업의 誘致를 위해 일반 외국기업에 주는 특혜 외에 부동산, 세금, 영주권 등에서 별도의 特惠措置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中小企業 위주로 생산라인을 대륙에 이전하여 현지의 勞動力을 이용하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7)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철강금속산업실태와 교류협력방안연구」(1991), pp. 350-353.

(2)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活性化 方案

남북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을 남북한 기업간의 直接交易으로 전환함과 함께,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制約條件을 극복하기 위한 交易方式과 교역상품의 개발, 남북한 교역 및 통행에 관한 基本協定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²⁸⁾

즉, 法的·制度的裝置의 구비와 함께 남북한 교역 및 협력사업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相互信賴基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民族經濟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間接交易의 확대와 활성화 제2단계, 直接交易의 추진 제3단계, 국제경제기구에서의 共同協力과 도로·철도의 共同利用 등 경제편의의 상호 제공 제4단계, 자원의 共同開發과 加工輸出 제5단계, 자본 및 기술협력으로 나아가 시장 및 화폐통합 그리고 經濟統合의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리라 본다. 상황 진척에 따라서는 周邊與件과 環境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 단계를 同時에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⁹⁾

(가) 南北交易의 活性化 方案

초기단계는 間接交易을 활성화하면서 상호보완적 物品에 대한 直接交易을 추진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상사 등을 활용해서 남북한 기업간의 접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相互利益構造에 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交易方式은 북한의 외환사정상 바터무역(구상무역방식)의 相計貿易이 초기에는 가능성이 높으며, 교역량 증대 및 남북한 관계의

28) 같은 책, p.354.

29) 같은 책, p.354.

진전에 따라 清算決濟方式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새로운 決濟通貨, 貿易信用供與制度(swing) 등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품목은 南北經濟會談에서 쌍방이 제의한 교역희망품목과 북한의 對일본·OECD 수출입품목, 남한의 對北方 교역품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의 수출입상품 구조와 南北經濟會談, 南北經濟共同委 등의 제의내용 등을 고려할 때, 對北韓 搬入可能品目으로는 무연탄, 철광석, 선철, 마그네슘, 크롬, 아연, 니켈, 알루미늄, 생사, 한약재 등과 일부 농산물을 들 수 있으며, 우리가 設備와 技術을 제공하고 그 생산품을 搬入할 수 있는 품목은 철강재, 직물류 및 의류,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농수산물 등을 들 수 있다.

(나) 南北經濟協力事業의 活性化 方案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人的·物的交流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交流關係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투자 및 과실송급에 대한 보장 등 협력사업의 安定性과 持續性이 보장될 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經濟協力事業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남북한 관계 개선에 波及效果가 크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소규모의 시범적 사업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점차 남북한 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構造形成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協力段階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상으로는 南北經濟會談과 南北基本合意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共同漁撈水域 설정, 관광자원 공동개발, 대외공동진출 등과 북한 내 合作工場 건설,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間接協力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合作工場 건설은 남북한 모두가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 대상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나, 對南 波及效果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³⁰⁾

合作事業은 초기에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보다 특수하고 작은 규모의 합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제3국으로 제품을 輸出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合作對象分野는 북한의 合營推進現況과 북한이 UN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의한 ‘83개 해외유치합작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實現可能性이 높을 것이다.

한편, 최근 동북아경제협력체구상과 두만강유역개발 등과 관련 이들 地域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方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南北韓 經濟統合의 可能性

최근의 國際情勢는 과거 냉전구조하에서 유지되어 왔던 정치이념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國際協力體制가 붕괴되는 반면, 다분히 민족적 實利를 증시하는 새로운 지역간 협력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南北經濟共同體의 회복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의 體制를 점차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國際分業의 원리에 따라 물자와 자본, 기술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民族單一의 經濟圈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經濟統合은 경제공동체보다 완결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적 主權은 남과 북에 별도로 귀속될 수 있으나 각각의 經濟體制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經濟統合과 함께 政治的 統合이 실현되면 남과 북에 나누어져 있던 경제적 주권도 통합된 정부에 귀속되어 完全統一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30) 같은 책, p.358

南北韓 經濟統合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체제의 單一化이며, 獨逸의 경우는 동독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서독에 吸收統合되는 길을 택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체제가 市場經濟로 이행되는 것은 최근 世界情勢의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南北韓關係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내부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당장에 獨逸의 경우와 같은 經濟統合이 가능하리라는 성급한 기대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제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경우 남과 북은 經濟共同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經濟統合段階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6.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對外經濟協力

가.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中央統制的이고 閉鎖的인 경제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景氣沈滯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분적이고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經濟改革·開放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의 開放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國民經濟가 다른 국가의 국민경제와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의 交易 및 協力を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의 開放化는 대내적으로는 분권화된 市場經濟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외적으로는 國際分業과 經濟協力を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는 본질상 自給自足の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經濟交流 및 協力を 국내경제의 보조적 기능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提高시킬 수 있는 대외적 요인을 차단시켜 왔다.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해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은 改革·開放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 노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段階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前半期の 경제개방의 시도이다. 즉, 북한은 自力更生의 폐쇄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産業部門에서 기술수준이 落後되고 생산시설은 老朽化되어 6개년계획(1971~1976년)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의 資本裝備를 일본 및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1970~1974년 동안 북한의 對西方輸入은 年平均 89.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4년의 경우 북한의 對OECD 수입은 전체 수입의 51.7%로 增加하였다.³¹⁾

둘째, 1980년대 중반 償還負擔이 없는 외국의 合作投資를 유치하여 資本 및 先進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合營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북한 경제로서는 合營法制定으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貿易擴大를 위한 노력 또한 1980년 對比 1985년에 무역액이 오히려 5%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 결국 1990년에는 -3.7%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共產圈의 改革·開放의 영향과 북한 경제의 심각한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도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31) 延河淸, 「남북한경제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한국개발연구원, 1991), pp.10-

물론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시장경제체제로의 基本的인 수정이나 本格的인 개방은 결코 아니고, 경직된 북한 체제의 構造的인 침체를 打開하기 위한 일시적인 方便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豆滿江地域開發計劃

두만강지역 개발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提起된 것은 1990년 7월 中國 長春(장춘 제1차회의)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主題下의 국제학술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同 국제학술세미나에서 中國側은 中國의 吉林省 防川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고, 琿春을 통하여 中國 내륙과 유럽으로 鐵道가 연결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송상의 비용절감방안과 두만강유역의 中國·러시아·북한 3국 接境地域에 經濟特區를 건설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제공하에 天然資源을 개발하고 消費財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도 同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두만강 隣接地域인 연해주지역 보다는 이미 社會間接資本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등 기존 항구를 이용하여 이 지역을 開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사실상 豆滿江地域의 개발에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1991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東北亞小地域計劃會議에서부터이다. 즉, 이제까지 민간

32) 同국제세미나는 남북한, 중국, 미국, 舊소련, 일본, 몽골 등 7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차원의 논의에서 UNDP를 매개로 하는 정부차원의 協議가 시작된 것이다.

울란바토르회의에서 북한은 羅津·先鋒地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문제와, 淸津·羅津·先鋒 등이 지역의 항구를 남한, 일본, 러시아의 遠東, 중국의 東北3省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交通中心地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울란바토르회의에서 UNDP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東北亞地域 협력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공식 결정,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두만강지역 개발에 관한 國際的 協議는 크게 두개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第1次 長春會議 이후의 民間次元의 국제학술세미나 형식과, 다른 하나는 울란바토르회의에서 결정된 UNDP를 매개로 하는 政府次元의 협의 형식이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 차원의 二元化된 접촉은 서로 補完的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두만강지역의 開發範圍와 관련하여서는 199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의(PMC)에서 3개의 案이 제시되었다.

첫째, 小三角地域으로 불리는 두만강경제구역(TREZ)은 북한의 羅津, 중국의 琿春,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總 1,000km²의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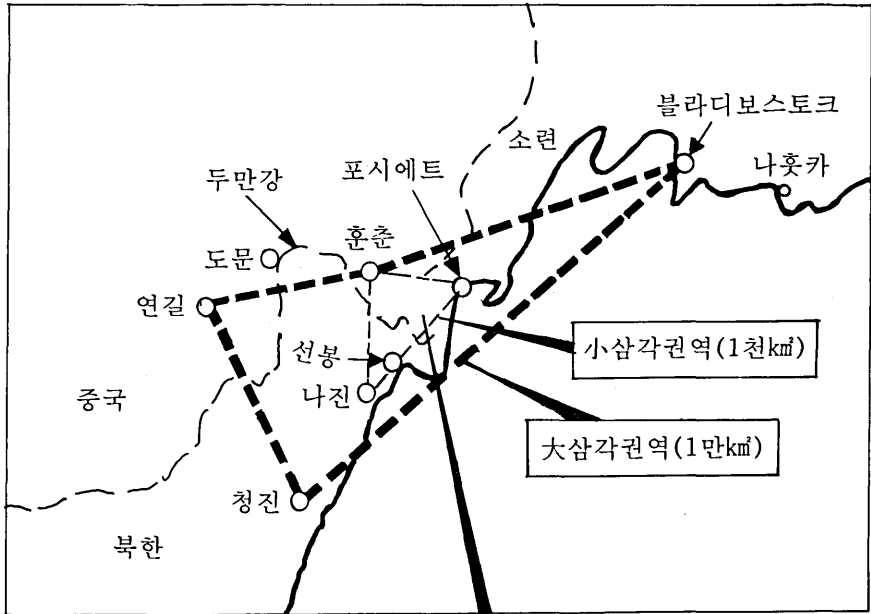
둘째, 大三角地域으로 불리는 두만강경제개발지구(TEDA)는 북한의 淸津, 중국의 延吉,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약 10,000km²의 지역이다.

셋째, 동북아시아개발지구(NEARDA)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東北亞 內陸地方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소삼각지역의 개발에 集中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전문가집단보고서’에 의하면

豆滿江流域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구주,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陸橋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에 걸쳐 약 300억달러의 자금이 投入되어야 할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下部構造建設 130억달러, 交通기반시설 100억달러, 教育投資 10억달러, 예비비 10억달러 등이며 10~11개소의

<그림> 두만강유역 개발계획도



근대적 항만시설이나 50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등의 建設이 포함 되어 있다.³³⁾

다.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開發計劃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政務院 결정 제78호로 羅津·先鋒地域 621km²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 지대에 인접한 淸津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이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지정한 나진·선봉지역은 중국 및 러시아와 接境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接觸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한의 북부지구 循環鐵道와 道路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되어 있으며, 청진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海上貨物을 취급해 오고 있었다.

나진·선봉지역의 전체 면적은 總 621km²이나 傾斜地 15% 이하의 개발 가능한 지역의 면적은 195km²이며, 현재 이 地帶內의 총 도시 면적은 11km²에 불과하다. 또한 이 지대 내에 거주하는 人口는 약 13만 1천명으로서 지대 내의 人口密度는 km²당 211명으로 북한의 平均密度보다 낮고, 지대 내의 전체 인구 중 약 70%인 9만명이 羅津市에 집중되어 있다.³⁴⁾

북한의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새로운 都市地域을 형성하여 인구를 장기적으로 75만~100만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에 입주하는 製造 및 加工企業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항만시설의 대폭적 擴張, 철도의 전철화구간의 擴大 및 複線化, 기존 도로의 擴充과 고속도로의 建設, 통신시설의 投資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33)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1992), pp.104-116.

34) 같은 책, pp.117-118.

따라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은 外資誘致를 통한 제조·가공단지의 造成과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의 貨物을 淸급하는 輸送通路로서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비록 制限的 地域이기는 하지만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대외적 經濟關係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外國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던 合營事業의 問題點과 限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984년 合營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의 經濟特區와 같은 對外開放地區開發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合營법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合營事業의 업종에 따라 地理的 立地가 좋은 곳에 合營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당국은 外國과의 經濟協力은 合營법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合營實績이나 投資規模의 영세성으로 볼 때 合營事業을 통한 북한의 經濟的 實利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自由經濟貿易地帶 지정은 중국의 經濟特區開發의 성공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合營法이 가지는 제약적 요소를 緩和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自由經濟貿易地帶에 적용될 새로운 外國인투자관련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발표한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社會間接資本施設(표13 참조)과 外國人投資關聯法을 정비·발표하여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대내외의 情勢變化에 따른 대외개방의 경제정책 轉換意志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표13> 羅津·先鋒 및 淸津地域의 社會間接資本 現況과 擴張計劃

區分	現況	擴張計劃
港灣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羅津：연간 화물처리능력 300만톤 ·先鋒：원유 및 석유제품 200~300만톤 ·淸津：8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만톤 500~700만톤 2000만톤
鐵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북 북부지역 순환철도망 총연장 405km 이중 복선구간 34km 전철구간 237km ·중국, 러시아 중계화물 수송능력 연간 1200만톤 羅津-南陽-中國으로 연결 羅津-豆滿江驛-러시아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단계：중계화물 수송능력 2000만톤으로 확대 순환철도망 전구간 전철화 복선구간 126.5km 추가 신설구간 14km ·제2단계：중계화물 수송능력 5000만톤으로 확대 전구간 복선화
道路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북 북부지역 순환도로망 431km를 중심 평균도로폭：5~6m 포장구간：159km ·중국, 러시아 연결도로 65km 羅津-先鋒-豆滿江-러시아연결：43km 穩城-元汀-中國연결：22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건설：총연장 306km 중계화물 수송능력 6000만톤 羅津-새별간 71km 羅津-豆滿江區間 18km 淸津-南陽間 131km 淸津-鐘城間 25km
通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통신시설은 극히 취약 平壤-淸津間은 약간의 통신회선 국제통신은 중국 3회선 러시아 1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단계： 국제통신 120회선 자동교환 5만회선 텔레кс 1천회선 ·제2단계： 국제통신 480회선 자동교환시설 총 10만회선 텔레кс 총 5천회선

출처：高日東,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남북한경제협력」(한국개발연구원, 1992. 6),

라. 外國人投資關聯法規의 主要內容

(1) 外國人投資關聯法 制定背景

북한은 1984년 9월 外債償還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년)을 모델로 한 「合營法」을 제정·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폐쇄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내수시장의 협소, 외자유치관련 法·制度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합영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1991년 말 현재 朝總聯 商工人들이 주축(68건)을 이루는 100여건의 合營契約이 체결되었으며 總投資規模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989년 이후 東歐 및 蘇聯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주요 海外市場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貿易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經濟沈滯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經濟孤立과 景氣沈滯를 벗어나기 위해 1991년 12월의 自由經濟貿易地帶 설치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法은 이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법」을 基本法으로 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이 附隨法으로 되어 있다.

최근의 外信報道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법」, 「은행법」 등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外國人投資關聯法 主要內容

(가) 「外國人投資法」 主要內容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創設·運營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外國人 投資企業은 ‘공화국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회사, 합영회

사, 외국인(단독)기업을 말하며, 合作企業과 合營企業은 북한 전 지역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創設·運營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外國人의 投資를 우대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免除하고,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 내에서 減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合營法」의 主要內容

合營當事者는 北韓의 회사, 기업소와 外國의 회사, 기업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南韓의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合營當事者로 될 수 없다.

合營會社는 최고의결기관으로 理事會를 두며 의결방식은 전원일치제로 하고 있어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고용 및 해고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의 勞動法規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合作法」의 主要內容

합작의 대상은 수출품생산 및 선진기술이 도입된 공업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觀光·奉仕(서비스)部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外國投資家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合意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하며, 외국 투자자가 合作企業에서 얻은 이윤, 기타 수입은 북한 외화관리법 규에 따라 해외에 送金이 가능하다.

社會主義國家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當局의 간섭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합작법 제7조와 같이 매월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지나친 간섭조항 등이 있다.

(라) 「外國人企業法」의 主要內容

외국인기업은 外國의 法人과 個人이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는 기업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創設, 運營을 허용한다.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織을 결성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活動條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라의 安定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企業은 창설할 수 없으며, 人民經濟發展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도 두고 있다.

(3) 投資關聯法 制定關聯 向後展望

북한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投資與件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치·사회적 경직성이나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서방기업의 對北投資가 단기간 내에 증대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外國人投資關聯法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海外同胞들의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북한은 對美·日 관계개선 및 南北經濟交流協力の 확대를 위해 대외정책의 본질적인 轉換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結 言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優越性에 관한 논의는 사회주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終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共產主義理想이 실현될 수 있다는 妄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經濟體制 및 政策으로 인하여, 구조

적 모순과 대외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되어 심각한 經濟難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對外經濟協力 여건의 악화와 농수산업 생산기반의 미비, 심각한 에너지난, 原資材 공급부족 등으로 인하여 1991년중 북한 경제의 주력부문인 鑛工業部門은 1990년보다도 -10.7%의 극히 부진한 實績을 나타내었으며 經濟成長率은 -5.2%(1990년은 -3.7%)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景氣沈滯에 빠져 있다.

북한이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西方先進國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북한의 改革·開放도 필연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 指導層이 대내적으로는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구호로 주민들에 대한 思想教養과 統制를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經濟開放을 시도하는 兩面戰略을 구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의 經濟沈滯과 기술의 낙후 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中央集權的 計劃·統制라는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人權과 自由를 보장해 주는 體制로 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合意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마련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북한의 이러한 성실한 자세전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현 여건상 南北經濟統合이 당장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統一方案에 따라 交流와 協力を 발전시켜 나갈 경우 南北經濟共同體의 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經濟統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북한 내부에서 돌발적인 變數가 발생할 경우에 경제통합의 기회가 의외로 빨리 주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經濟統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經濟力을 충분히 길러 놓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Ⅲ (北韓의 社會

教授 任 鍾 嬾

1. 序 言	97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的 特性	98
3. 住民生活	101
가. 衣·食·住 生活	101
나. 家庭生活	110
다. 職場生活	111
라. 消費生活	113
마. 餘暇生活	116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118
가. 冠·婚·喪·祭	118
나. 歲時風習	120
5. 保健·醫療	122
가. 無償治療制	123
나. 豫防醫學的 方針	123
다. 醫師擔當區域制	124
라. 醫療施設	125
마. 東醫學	126
6. 言論實態	127
가. 新聞	128
나. 放送	129
7. 結 言	130

1. 序 言

우리는 自由民主主義理念에 따라 個人的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북한식 社會主義方式에 따라 全體의 이익을 앞세운 전 사회적 動員體制를 형성하여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통제하여 왔다.

人間은 원래 다양한 욕구를 가진다. 生存과 관련된 衣·食·住 등의 生理的인 欲求를 비롯하여 안전, 소속, 지위, 인정, 성취, 자유 등의 社會的 欲求에 이르기까지 욕구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이러한 욕구들은 社會·文化的 環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모든 生活의 조건은 黨的統制에 의하여 個人的 욕구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며 集團의 욕구에 귀속시키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이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 사회적 욕구는 黨으로부터 결정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宣傳資料에 의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즉, 주민의 衣·食·住 問題를 골고루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國家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은 無料나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食糧을 공급받고 있으며, 衣服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國家가 부담하고 있고, 住宅을 통해서도 막대한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택은 國家資金으로 건설되어 모든 勤勞者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商業은 주민을 위한 供給活動이며,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地域別, 階層別, 季節別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

들은 全國의 尙業망에 체계적으로 할당되며, 勤勞者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公共給食事業과 便宜서비스事業도 크게 신장되어 그러한 시설들은 勤勞者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부들의 家事負擔을 덜어 주어 적극적으로 職場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는 黨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失業者도 乞人도 없으며, 누구나 衣·食·住 문제로 신경을 쓰는 일이 없이 넉넉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러나 북한의 선전대로 하더라도 주민생활은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黨의 계획적·조직적 통제로 個人의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黨과 政府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의 이러한 宣傳資料를 참작하면서 그들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의 特性

사회정책의 기본은 階級政策인데 그 내용은 계급노선과 계급교양을 앞세워 體制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政治權力의 안정·유지도모하려는 일련의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계급정책은 社會主義建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社會主義革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은 인류역사를 계급투쟁과정으로 보는 共產主義 階級鬭爭觀

1) 「조선개관」(평양:외국문출판사, 1987), 통일원 번역자료(1988), pp.150-156.

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階級政策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 입각한 온 사회의 革命化, 勞動階級化의 실현에 있다.

金日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는 표면상으로 볼 때, 擄取階級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그 目標로 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共產主義 社會政策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物質的 土臺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生産手段을 국유화하고, 소위 ‘反黨·反革命分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사회를 組織化하며, 전 주민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개조하는 과정으로 일관된다.

북한이 이같은 政策目標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온, 사회분야의 정책으로는 階級政策을 비롯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풍습의 변질, 衣·食·住 생활의 통제노력 강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社會政策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勞動黨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金日成家系 우상화조작과 사상적 교화작업을 통하여 전 사회적 動員體制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會政策의 결과, 북한 사회의 특성은,

첫째, 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唯一政黨에 의한 완전 지배권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이다.

黨은 혁명의 중추적 推進勢力이고, 또한 국가 최고의 命令機關이다. 즉, 북한을 통치하는 집단은 조선노동당이며, 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國家主席이며, 黨 總祕書이고 國防委員長인 金日成이다.

黨員은 전체 주민중에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선발되고 體制維持에 공헌할 열성분자들로 구성된다. 黨은 국가조직의 基幹이고, 독재의 基盤이기도 하며 또한 미래의 지도층을 양성하기도 한다. 黨員은 정상적인 각자의 課業외에 국가적 사업을 지지하고, 또 성원하면서 일반 주민을 감시하고 反體制的 活動을 견제하는 일을 맡는다. 현재, 북한에는 약 300만 黨員²⁾이 特權階級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이나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엄격히 구분된다.

둘째, 主體思想과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이다.

북한 憲法 第3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主體思想에 반대되는 이데올로기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主體思想은 정치·경제·종교활동을 비롯한 人間行動의 전부를 규제하는 광범한 包括性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의지이며, 누구나 이 원리에 복종하도록 강제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社會體制의 지향은 主體路線인 것이다.

셋째,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통제적 조직사회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모든 住民을 조직속에 묶어 두고 집단적 능력의 相互競爭으로 효율성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이 自律的이고 獨創的일 수 없다.

2) 통일원, 「북한개요」(1992, 12), pp.60-61 참조.

북한의 모든 社會組織은 상이한 계층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支配階級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住民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黨의 후비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憲法 第63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와 개체의 이해는 언제나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集團主義體制下에서는 모든 주민이 조직속에 묶어져야 하며, 黨의 지령에 따르는 일사분란한 획일성이 요구된다. 이는 바로 북한이 지향하는 ‘主體型的 共產主義革命家’로서 지녀야 할 행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3. 住民生活

가. 衣·食·住 生活

衣·食·住 問題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조건인데, 북한과 같은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이에 대한 공급조건과 수단을 국가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주민을 國家政策目標에 따라 쉽게 동원하고, 사회적 逸脫行爲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주민들의 衣·食·住 生活의 향상 욕구를 ‘社會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이라는 정책목표에 종속시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점증하는 주민들의 消費生活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軍需産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輕工業分野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소위 ‘人民生活消費品 增産運動’을 통해 다각적인 소비생활 향상책을 추진하는 등, 의식주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衣生活이나 住生活에서는 그런대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食生活은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衣生活

북한은 經濟與件의 미비로 고급 天然纖維 등 다양한 직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데트론, 비닐론 등 合成纖維를 연간 6억m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衣類供給은 신분에 따라 차등공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계층에 따라 中央供給對象과 一般供給對象으로 구분, 공급량과 품종을 달리한다.

中央供給對象者에게는 급수에 따라 2~4년에 양복 또는 복지가 한벌씩 염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一般供給對象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벌 정도 勞動用物資라는 명목으로 광복, 포플린, 스포직물 등이 配給된다. 그리고 예술가, 당·정간부, 기자, 교원들에게는 의류를 特配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1950년대 말까지는 男子는 인민복에 레닌모(帽), 女子는 흰저고리에 검정통치마의 韓服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재일조총련계 교포의 北送事業과 관련한 入北者들의 옷차림 영향과 1970년대 초부터 南北會談이 실현되면서 韓國人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의복패턴으로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日常服보다 外出服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각종 옷전시회, 옷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住民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검정통치마에 흰저고리 차림은 거의 자취

를 감추었고, 도시여성들에게 出退勤 등 외출시에는 필히 化粧을 하고 양장 또는 색깔있는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부 露出이 있는 의상도 더러 나타나고 있으며, 구두도 하이힐을 신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男子들에게는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짝짝이색 의복(콤비), 잠바 등을 착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多様化, 洗鍊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農·漁村의 일반 주민들은 신사복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설사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人民服을 계속 입는 사람이 많다.

平壤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외출시 服裝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罰金을 물린다고 한다. 이는 북한 사회의 虛像과 實像이 괴리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 등에 被服研究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研究所에서 만들어 낸 옷으로 전국적인 옷전시회(패션쇼)를 개최하고 있다.³⁾

최근에는 在日朝總聯系 실업인들과의 合營事業이 그런대로 활발해지면서 옷공장이 많이 생겨, 平壤을 비롯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洋服을 입거나 洋裝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食生活

북한은 社會主義政權 수립이후 지금까지 農業生産體制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농촌경제의 수리화,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및 화학화” 등 농업근대화를 推進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岡田聰, 「平壤の人民生活(上)」(現代코리아, 1988. 5), pp. 41-42.

그러나 食生活에 있어서는 식품가공 및 처리기술, 저장수단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다, 生産과 供給에 대한 철저한 통제 로 각종 食品의 공급이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食生活의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식량은 自由販賣制가 금지(1957년 내각결정 제96호 및 제102호)되어 있고, 주민들은 配給에 의존하고 있다(단, 協同農場員은 연말 결산분배). 따라서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食生活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個人消費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延命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金正日은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⁴⁾라고 강조함으로써 食生活問題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이라는 目標을 내걸고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조청호 쟁취운동’ 등의 각종 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食糧配給은 통상 15일마다 실시되는데 각 職場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里·洞배급소에서 有償으로 배급받으며,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시기 등에 따라 配給量, 쌀과 잡곡의 比率 등에서 差等配給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출장 또는 여행시에는 미리 발부받은 糧券과 食代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訪問의 경우에 통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는 糧券을 지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배급시 白米와 雜穀의 비율은 평양이나 직할시는 6(쌀) : 4(잡곡)이고, 지방은 作況에 따라 다르며, 산간오지에서는 2(쌀) : 8(잡곡)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9년 「平壤祝典」 전까지는 성인의 경우 身分에 따라 하루에

4)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p.7.

600g ~ 800g 씩 배급을 받았으나, 平壤祝典이 끝난 이후부터는 10%씩 공제했으며, 1992년 6월 15일부터는 군인과 탄광노동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다시 10%씩 공제하여 일일 500g 정도를 配給받고 있다.

그리고 평양과 도시에서는 主食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半製品으로 된 부식물 및 국거리를 배급하는 奉仕施設을 운영하고 있다.⁵⁾ 그로 인하여 북한 주민중 가족이 적은 家庭은 15일간 먹을 食糧을 배급받을 때 糧券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淸사하여 식사하는 것보다 飯工場의 아침·저녁 配대에서 糧券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

副食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副食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食料品店에서 임의 구입하고 있다.

고기류는 名節特配를 통하여 할당되는데, 金日成父子 生日, 黨創建日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배급받으며, 配給받는 대상과 시기, 수급사정에 따라 供給品目이 다소 달라진다. 만약, 배급 이외의 主·副食을 구입하려 할 때는 비싼 값으로 農民市場이나 暗去來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배급가격의 10~20배 이상).

地上天國임을 자랑하는 북한은 밀려오는 開放의 물결에 대비하여 우선 눈에 띄는 외형적인 모습, 즉 주요 都市의 정비와 건축물, 주민의 衣服 등에는 상당한 變化를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문제는 일반 住民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절도, 약탈, 횡령 등의 犯罪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 生活苦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

5) 노동신문, 1984. 4. 2. 字

6) 「북한실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100.

배해지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中國, 泰國, 캐나다, 濠洲, 美國 등지에서 食糧을 구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韓國產 쌀과 라면을 반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食糧難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營農體系와 營農基盤의 문제이다. 토지뿐 아니라 낫, 호미에 이르는 小農機具까지도 일체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共同作業場에서 일한 노동의 量과 質에 따라 분배받는 體系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農業勤勞者들의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의욕은 없는 편이다. 농민의 生産意慾이 결여된 상태에서 食糧增産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耕地面積이 부족하며 氣候條件이 나쁘다. 이런 여건 때문에 북한 당국은 간석지개간, 다락밭일구기, 새땅찾기운동을 벌여 農耕地 확장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灌溉水路, 揚水場建設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다락밭일구기 사업으로 황폐해진 山은 비가 오면 山沙汰가 나

<표1>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름)

구 분	배급량(g), 1인1일기준	백미:잡곡 혼합비율
당 및 정권기관간부	700g	10:0
특수군인(경보병)	800g	7:3
군인	700g	3:7
중노동자	800g	3:7
일반노동자, 사무원	600g	3:7
대학생	600g	3:7
고등중학생	500g	3:7
인민학생	400g	3:7
유치원이하 아동	300~100g	3:7
부양가족 등 무직자	300g	3:7

서 오히려 기존의 농경지를 잠식해 가고 있다.

북한은 農耕地 중 70%가 밭이기 때문에 쌀보다 잡곡을 많이 생산한다. 그리고 食生活改善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주민이 밥만 먹기 때문에 먹는 문제 解決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3) 住生活

북한에 있는 모든 건물은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集團所有이기 때문에 주택도 個人所有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은 우리의 宿舍이나 賃賃住宅과 비슷한 것이라 하겠으나 우리의 宿舍이나 賃賃住宅과 다른 것은 주택선택을 입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成分과 職位에 따라 등급별로 규격화된 獨立家屋 또는 聯立住宅, 아파트를 할당해 준다는 것이다.

住宅形態는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이며, 組立式工法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격화된 아파트와 연립식 주택형태는 施工의 경제성과 편의성 이외에 집단주의적 주거양식에 의거한 劃一化 추구에 따른 것이자, 이른바 民族的 樣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으라는 黨施策의 결과로서 이는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 상호간의 감시·통제 및 住民動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住宅의 규모 및 시설은 주택의 規格化·集團化施策으로 말미암아 住居生活空間이 매우 협소하고 內·外裝도 거의 획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마다 독립적 부대시설도 제한되어 있다.

주택사정은 연간 住宅建設目標 달성의 부진과 供給對象人口의 증가에 따라 住宅普及率은 6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러한 어려운 주택사정 때문에 結婚하여도 쉽게 방을 할당받을

7) 內外通信, 자료판 제744호, D2(1991. 5. 17)

수가 없어 상당기간 新婚夫婦가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1세대용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2~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農村의 경우는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改良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는 평양 창광 거리에 4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1986년까지의 천리마거리 제2기 住宅建設, 그리고 1988년까지로 계획된 광복거리의 再開發에 따른 주택건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1991년까지 낙랑거리, 하당거리에 20~3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방도시에는 10~20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였다.⁸⁾

현재 住宅建設工事が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평양을 비롯하여 신의주, 함흥, 원산, 순천 등 도시지역으로서 住宅建設現況은 통일거리, 버드나무거리 등 평양시 일원에 5만 세대, 함흥시에 6천 세대, 순천, 원산, 남포, 남신의주 등지에 각 수천 세대 등 모두 7만 세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에 계획된 주택건설목표인 20~30만세대 건설의 30~5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북한은 住宅難이 심해지자 공여지책으로 개인이 집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시멘트와 벽돌은 當局에서 實費로 지원하고 개인이 기타 建築資材를 부담하여 건축하며, 대개의 경우 방 1칸, 부엌 1칸 정도라 한다. 이 경우 집은 원칙적으로 個人財産으로 인정된다고는 하나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私有財産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주택형은 크게 보아 黨·政 副部長級 이상이 거주하는 特號로부터 말단근로자와 협동농장원에게 할당되는 1號住宅에 이르기까지 5종류로 구분된다.

8) 内外通信, 자료관 제744호, D3(1991. 5. 17)

<표2> 住宅事情(平壤)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住者
特號	獨立高級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立式 단층 또는 2층 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號	新型高層아파트 (세대당 20~3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변소 ○ 베란다, 冷溫水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 기업소 책임자
3號	中級單獨住宅 및 新型아파트 (세대당 15~2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 ○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이상 ○ 기업소 부장 ○ 학교 교장
2號	一般아파트 (세대당 7~1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마루방1,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원 ○ 일반노동자 ○ 시·도과장급 ○ 사무원 ○ 도급기관 지도원
1號	集團 公營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근로자 및 말단사무원
	農村 文化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層 聯立住宅 ○ 방2,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農村既存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농민

나. 家庭生活

家庭이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人間的 삶의 공간이며,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安息處가 된다. 家庭生活은 그 사회의 체제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의 유형이 社會構造的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한 국가의 國民性形成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북한은 憲法 제77조에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共產政權 수립이후 조상 전래의 전통적 家族制度를 낡은 思想과 生活樣式을 전승시키는 온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社會의 건설을 위해서는 가정을 먼저 革命化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전래의 家族制度를 타파하고 ‘붉은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해 이른바 가정의 革命化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가족구성의 변형은 戶籍制度를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은 封建社會의 잔재라 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公民證制度(1946. 9)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족범위가 直·傍系 血族으로 제한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민행정에 대한 統制機能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家父長的 위계질서와 大家族制度의 붕괴를 초래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족 성원간의 情感的 紐帶關係는 유지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歸屬意識 역시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男兒選好 경향이나, 전통적인 祖上崇拜意識, 친족간의 交遊慣習 등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정권이 그동안 ‘家庭革命化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래의 가족제도의 상당 부분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繼承되고 있는 것 같다.

다. 職場生活

북한 憲法 제70조에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職業選擇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職業選擇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나 자질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就業希望者의 의사보다는 黨과 政權機關의 조정, 통제하에 배치되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는 中央集權的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모든 직장이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 노동당의 획일적 지도, 감독을 받으며 관리되고 모든 농장, 공장, 기업소가 國有化·協同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배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成分(출신성분, 사회성분)과 黨性이라는 이른바 政治的 表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職場配置와 사회적 地位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표징인 職務遂行能力으로서, 여기에는 학력, 자격, 전개력,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연수, 근무평정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學歷이 사회적 階層上昇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基本階層과 複雜階層의 자녀는 진학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職種 및 職場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직장배치과정을 보면 모든 就業은 전적으로 黨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市·道행정위원회의 勞動部(노동자의 경우), 幹部部(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配置狀 혹은 紹介狀을 발부받아야 就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人事行政의 기본원칙은 政治的 信任度를 기준으로 직장

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도 오직 중앙의 需給計劃에 의한 직장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希望, 素質, 能力은 그 다음으로 참작되고 職場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북한은 모든 勞動能力者를 전원 직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완전히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黨幹部의 자녀는 중앙당과 정무원 등 中央機關에 배치되고, 平黨員의 자녀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개 지방의 기관 및 기업소에 배치된다.

이와 같은 획일적, 차별적 人力配置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태업적인 근무자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政治思想敎養이 요구되는 것이며, 소위 ‘社會主義競爭’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적 감시에 의한 노력의 集團化와 노력동원의 極大化를 강요하고 있다.

도시주민들의 職場生活은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正午에 오전 일과가 끝나며, 점심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다. 오후 6시에 日課가 끝나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 별로 또는 직장별로 약 1시간 정도 作業總和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각종 會議나 學習이 진행된 후 저녁 8시경에 퇴근한다.

그리고 農民들은 새벽에 마을의 종소리나 사이렌에 따라 기상하게 된다. 起床하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作業班이나 分組別로 집합하여 15~30분에 걸친 朝會를 가진다.

조회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 作業道具를 준비하여 가지고 8시까지 協同農場에 출근해 각 분조별로 12시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한 다음에 午後作業은 7시경에 끝나고 作業總和가 있는 다음 당일의 노력공수발표를 듣고 귀가한다. 협동농장원도 매일 政治學習이나 會議에 참가하는 내용과 시간은 도시의 노동자의 경우와 비슷하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性別, 年齡別에 관계없이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報酬를 지급하며, 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자, 사

무원 구분없이 都給支拂制와 定額支拂制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賃金은 직종 및 기술급수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賃金技能等級制를 적용한다. 한편, 協同農場員들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는 달리 協同農場의 결산분배에 의해 現金과 現物을 분배받는다.

<표3>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

(단위 : 북한원)

구 분	직 책	보 수
당·정기관	○당·정무원 부장	300~350
	○정무원 부부장급, 도인민위원장급	250~300
	○도인민위 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	170~200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
	○1~2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150~200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 제련공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75~80
	○일반노동자	70~80
	○사무원	60~70
편의시설기관 중사자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50~80

* 주 : 이 표는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평균인상률 43.4%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 출처 : 「북한개요」(통일원, 1992), p.286.

라. 消費生活

북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이 都賣所와 小賣所를 통해 유통된다. 都賣所는 생산업소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小賣所에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里·洞單位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이나 都市에 있는 백화점과 유사한 종합상점이 小賣所에 해당된다. 都賣所의 종류는 중앙도매소, 각 道の 도매소, 市·郡의 지구도매소로 구분된다.

이밖에 중요한 商品에 대해서는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고, 小賣所의 종류는 평양의 백화점, 지방도시의 종합상점, 직매점, 각 里·洞상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小賣商店들은 상품에 따라 이동판매, 배달판매, 야간판매, 주문판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生活必需品를 일반 주민들에게 供給하고 있다.

북한의 공급체계는 기본적으로 注文方式에 입각해 각 하부단위에서 주민들의 需要에 맞도록 商品注文書를 작성, 상급단위로 올리면 그 量만큼 생산하여 小賣商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이후의 輕工業重視政策에 따라 이 注文生産制 방식에 예외가 생겼다. 즉, 사전주문 없이 工場으로부터 그때그때 직접 調達해 판매하는 대도시의 直賣店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 각자가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農産物을 파는 農民市場도 활발해지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나마 市場經濟要素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의 價格은 「정무원 가격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同委員會는 제품의 평균원가에다가 企業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利潤으로 추가하여 상품별, 등급별, 품위별로 價格에 차이를 둔다.

이렇게 國定價格이 결정되어 각 지역 里·洞單位로 설치되어 있는 小賣店으로 하달되면 小賣商店은 일반 주민들의 구매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數量을 확인하고 판매한다. 그러나 TV, 냉장고, 시계 등 奢侈品은 구매카드에 따라 商店에서 판매하지 않고, 職場에서 할당해 주는 자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카드 없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商品은 휴지, 옷핀, 손톱깎이 등 극히 값이

싸고 소형인 제품에 한정된다.

한편, 적당한 곳에 農民市場(장마당)을 개설하여 協同農場의 초과생산물, 텃밭에서 생산된 각종 채소, 家內副業으로 키운 축산물, 잡곡류 등에 한해 自由販賣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의 農民市場 개설목적은 協同農場員들의 생활향상 도모와 노동의욕 고취, 國營商店이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의 적기공급, 物物交換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식량, 식료품, 중고가구, 외제옷감, 귀중품, 축산물, 중국거주 韓人이 訪北時 가지고 온 옷감과 피복류, 시베리아파견 伐木勞動者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온 공업생산품, 北送僑胞 및 일본내에 거주하는 북송교포의 親戚이 訪北時 가지고 온 물건 등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資本主義社會의 시골장터를 연상케 하고 있다.

1984년부터 農民市場은 확대되기 시작하여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도 구역별로 農民市場(장마당)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식량, 술, 담배 등 몇몇 品目を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민시장은 최근에는 常設 市場化되어 시장내에 管理所를 두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며 식당과 청량음료코너가 마련되는 등 편의시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農民市場에서는 잡곡류, 채소류, 가내수공업제품 등 去來가 허가된 상품들뿐만 아니라 賣買禁止品目까지도 눈을 피해 暗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상품들의 市場價格은 국정가격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價格이 비싸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農·工產物 등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마. 餘暇生活

북한은 주민들이 법적으로 餘暇를 즐길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 헌법 제3장 “문화” 및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具體的으로 明文化되어 있다.

즉,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헌법 제30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1조)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노동법 제65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工場, 企業所와 協同農場 등 모든 일터와 직장이 國家管理下에 있어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근로자들은 계획된 日課表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職種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과는 共通性을 갖게 된다.

특히, 노동과 생산분야의 경우 매일 완수해야 할 作業責任量이 정해져 있고, 休日이나 休暇期間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예가 허다함으로 餘暇時間을 個人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職場에서 며칠의 休暇를 얻어도 그 활용이 쉽지 않다.

우선 우리와 같이 餘暇의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旅行의 자유가 없고, 한가족의 여름철 휴가 및 방학 일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름철 休暇를 다같이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旅行을 해도 도착지 人民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도 많고 번거롭다. 그리고 旅行地域의 숙박시설과 식당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旅行客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북한의 宿泊施設은 일반 주민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호텔 및 초대소는 外國人 및 黨幹部들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은 旅館만 이용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름철만 되면 人民學校나 高等中學校에 다니는 학생들은 放學을 이용하여 소년단 야영을 떠나거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답사, 붉은 청년근위대 야영을 떠난다. 또, 大學生은 매년 80일간의무적으로 勞動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경기장건설, 도로건설, 강의실신축 등에 動員된다.

그리고 일반 勞動者나 事務員들은 분기당 배당되는 休養券을 타기 위해 模範勞動者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⁹⁾ 따라서 우리처럼 여름철에 온 가족이 산이나 바다 등으로 休暇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休暇를 받으면 고된 職場生活와 緊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 한다.

그리고 평양시같은 경우 日曜日이나 公休日에 일부 주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遊園地에 나들이를 가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약 5만的人波가 모여, 그곳에서 전동열차를 타기도 하고, 曲藝公演, 映畫, 演劇 등을 보기도 한다. 지방에서는 오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職場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끼리 각자 먹을 것을 장만하여 인근 山이나 江가 등을 찾아 하루를 즐긴다.

북한에서도 여름철 休暇期間에 등산, 낚시,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趣味活動이나 娛樂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職場이나 文化會館 등에는 탁구대, 장기판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으며, 윗놀이 등은 舊正에 하고, 화투 대신 주패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9) 内外通信, 자료관 806E2(1992. 7. 30)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가. 冠·婚·喪·祭

(1) 婚 禮

북한은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률」(1946년 제정)에 혼인적령기를 男子 만18세 이상, 女子 만1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실제 結婚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나 가능했었다. 최근에 와서는 婚期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완화되어 女子의 경우 23~24세, 男子의 경우 27~28세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結婚適齡期에 도달한 남녀가 交際를 하는 것은 조직생활의 紀綱을 흐트리지 않고 生産目標 초과달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묵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結婚適齡期에 도달하지 않은 異性간의 교제는 엄격히 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戀愛風俗은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이며, 平壤의 경우 대동강, 보통강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婚姻의 성립도 부모가 결정하는 仲媒結婚 형식에서 당사자간의 선택이 중시되는 경향으로 변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配偶者의 선택에 있어서는 黨性, 出身成分, 職業 등이 고려된다. 당 고위간부가 아닌 일반 계층에서는 黨員, 非黨員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6·25 당시 治安隊員, 地主, 越南者家族 집안 등은 기피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있는 結婚相對로는 당고위직, 전문직, 군인이 選好되지만 최근에는 비행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운전사, 요리사

등도 歡迎받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부문 종사자나 상점판매원 등 직접 日常用品을 취급하는 분야의 종사원의 인기가 높다.

그리고 結婚擇日에는 종래의 吉凶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生産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으며, 結婚式은 회의실이나 신부집에서 하고, 主禮는 집안의 年長者나 職場幹部가 맡게 된다. 禮式이 끝난 후에는 신랑, 신부집에서 마련한 술과 음식을 賀客들이 나눠먹기 때문에 結婚式이 가장 흥청거리는 잔치라고 한다. 禮服은 대부분 평상복차림에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다.

최근에는 平壤 등 도시에서 新郎은 신사복을 입고, 新婦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 면사포를 쓰고 式을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式이 끝나면 新婚旅行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통 職場에서 내준 승용차로 시내를 드라이브하거나 金日成銅像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新婚旅行을 대신한다.

(2) 回 甲

북한은 1950년대 말까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回甲, 生日, 돌잔치 등을 금지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默認하는 경향이며, 간혹 回甲잔치를 할 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食糧으로 선물을 하거나, 2~3원 정도의 축의금을 내며, 근무하고 있는 職場에서도 축의금을 각출해 준다.

回甲床은 별도로 차리지 않고 접대용으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直系子孫들이 서열순으로 獻酒 후 절을 한다. 접대용 음식으로는 강냉이국수, 명태볶음, 고사리무침, 무생채, 당근무침, 떡, 막걸리, 소주 등이 준비된다.

그러나 勞力動員과 食糧節約을 위해 회갑잔치를 치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3) 葬 禮

북한의 葬禮節次는 극히 간소화되었고 보통 3日葬을 치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2日葬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다.

葬禮式과 埋葬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한다. 喪服은 따로 만들어 입지 않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하며, 葬地는 도시에서는 주로 공동묘지, 지방에서는 편리한 장소에 임의로 매장한다. 喪輿는 없어지고 運柩時에는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한다.

그리고 1年 脫喪이 통례이나 3年 脫喪도 한다. 최근에는 묘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火葬을 권장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별로 火葬을 하지 않고 있다.

直系尊屬의 사망시 喪主에게는 3일간의 공식휴가가 주어지고,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배급된다.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는 車輛을 지원하기도 하고 扶助金을 각출해 주기도 한다.

(4) 祭 禮

북한은 전통적인 祭禮는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祖上崇拜을 復古主義의 병폐와 封建的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전통적 제례는 없어졌다.

그러나 가정에 老人이 있는 경우 매년 祖上들의 제사를 지내는 데, 祭床은 평시에 먹는 음식으로 차리고 傳統祭禮에 따른 祭需는 별도로 장만하지 않는다. 대체로 밥, 떡, 지짐이, 생선, 과일, 나물 등 주위에서 購入할 수 있는 것으로 차린다.

나. 歲時風習

북한은 우리 전래의 歲時風習 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지하여 왔다. 예컨대, 중추절의 경우 封建殘滓의

유물, 復古主義의 부활, 긴장의식의 해이, 노동력의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북한은 1972년의 秋夕名節 용인에 이어 조상묘소의 秋夕省墓를 묵인하더니, 그 후 증명서없이 他郡에 2일간 여행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秋夕을 휴무일로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舊正과 端午까지 휴무일로 하여 민족고유의 명절로 부활시켰다. 음력 설날은 年賀狀도 보내고, 쌀로 만든 떡국으로 아침을 먹고, 각기 형편에 따라 省墓도 하고, 옷놀이와 연날리기 등도 한다.

이는 南北對話와 우리의 海外同胞 추석성묘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최근 美洲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北韓訪問이 점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표4> 북한의 명절

구 분	일 자	비 고
<국가 명절>		
설	양력 1월1일	2일연휴
김정일생일	" 2월16일	2일연휴
김일성생일	" 4월15일	2일연휴
국제노동절	" 5월1일	
해방기념일	" 8월15일	
정권창건일	" 9월9일	
당 창건일	" 10월10일	
헌 법 절	" 12월27일	
<민속 명절>		
음 력 설	음력 1월1일	1989년 부활
한 식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1989년 부활
단 오	음력 5월5일	1989년 부활
추 석	" 8월15일	1988년 부활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民俗놀이는 가무놀이(노래와 춤), 경기놀이(각종 운동경기), 겨루기(실내오락 중심의 놀이), 아동놀이, 씨름, 장기, 윷, 농악, 널뛰기, 그네뛰기 등이 있다.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이같은 歲時風習의 부활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찾아주신 명절을 맞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다그쳐 나갈 우리 인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은 金日成生日(4.15)과 金正日生日(2.16)이다

5. 保健·醫療

북한은 憲法 第56條에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또한 제72조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보아 북한의 保健·醫療政策은 무상치료제를 기조로 豫防醫學的 方針 관철, 醫師擔當區域制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모든 保健·醫療施設은 소위 국가소유로 국가가 관리하며, 住民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社會主義的 醫療體制를 갖추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無償治療制

북한은 1946년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에서 「사회보험법과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산업의료시설에 관한 결정서」를 議決하여 1947년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이로써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無償治療制가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완전 無償治療制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無償治療制였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1960. 2. 27)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無醫村의 근절과 無償治療制 실시를 계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무상치료제 적용범위는 全地域, 全住民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無償治療와 관련한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달 月給에서 미리 社會保障費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老弱者는 약값 명목으로 治療費를 내야 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治療費를 내야 하는 등 여러 구실로 基本賃金의 10% 이상이 공제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無償治療制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포장된 북한판 醫療保險制度라고 할 수 있다.

나. 豫防醫學的 方針

豫防醫學이란 질병의 治療보다는 豫防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은 1953년부터 이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實質的으로는 1960년 5개년 계획이 끝나고 保健施設과 保健要員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 같다.

이러한 保健管理는 질병으로 인한 勞動力喪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원이 부족한 데

서 오는 최선의 조치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疾病豫防事業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全국가적, 全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생선전 계몽교양 사업, 위생 일꾼의 체계적 양성
-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 개선사업
-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 예방의학의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 등.¹⁰⁾

다. 醫師擔當區域制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우선 평양을 비롯한 道소재지 등의 몇개 區域病院과 일부 큰 규모의 産業病院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969년부터 각 市·郡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醫師擔當區域制를 실시했고, 탄광 지역에서는 職場坑擔當區域制가 실시되었다.

醫師擔當區域制는 전인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健康管理를 받을 수 있는 건강제도로서, 市·郡·區域병원, 공장병원, 里인민병원 또는 里진료소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맡고 있으며,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市·郡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 전체 의사들과 里인민병원, 里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擔當地域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 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¹¹⁾고 한다.

그러나 1명의 醫師가 200~300명의 患者를 한나절에 진료해야

10) 북한총담(북한연구소, 1983), pp.1003-1004.

11) 「조선중앙연감」(1984), pp.289-292.

되니 정상적인 診療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住民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醫師擔當區域制에 충실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¹²⁾ 또한 이 제도는 질병예방적인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으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여 이를 은폐함으로써 결국 患者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초래케 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라. 醫療施設

북한의 의료시설은 크게 一般病院과 特殊病院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생, 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衛生防疫所가 있다.

一般病院으로서는 중앙에 特殊層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이 있고, 一般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병원, 평양의 대부속병원, 명예전상자병원을 비롯하여 정무원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중앙병원, 운수부중앙병원, 육·해·공군중앙병원 등이 있고, 헝가리의 支援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在日朝總聯系 교포가 건설한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각 道(직할시)에 道인민병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고, 市(區域)·郡에는 市·郡인민병원, 里에는 里인민병원 또는 진료소가 있다.

特殊病院으로는 중앙 및 각 도에 결핵병원, 간염병원, 만성병원, 구강병원 등이 있으며 그리고 몇개의 郡에도 결핵요양소와 간염병원이 있다.

그 외에 주요 産業地域에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船團에는 船醫가 배치되어 치료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의료분야 종사자는 醫師, 看護員, 藥劑師, 調劑師

12) 김만철 증언(월남귀순의사, 1987. 1. 15)

등인데 의사는 정규의사, 부의사, 준의사, 동의사, 위생의사로 구분된다.

正規醫師는 7년제 의대, 副醫師는 4년제 고등전문학교, 準醫師는 3년제 고등의학교에서 양성되며, 이들은 각각 진료나 대우면에서 차이가 난다. 정규의사를 양성하는 醫大는 평양을 비롯한 각 도에 1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부의사나 준의사는 집도나 마약처방 등을 하지 못하며, 職場·里·郡병원에 배치된다.

그리고 看護員, 藥劑師, 調劑師 등은 중등보건일꾼으로 불리운다. 藥劑師는 북한 전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고려약학대학(前함흥약학대학 5년제)과 각 의학대학 藥學部(5년제)에서 양성되며, 이들은 거의가 큰 병원에서 調劑監督과 研究業務를 맡는다.

調劑師는 2년제 보건간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며, 작은 병원에서 調劑業務나, 약국에서 家庭常備藥을 판매하는 일을 맡는다.

이밖에 助產員과 保育員도 의료인력에 포함되는데 助產員은 보건간부학교(2년제)와 의학전문학교(3년제)에서, 保育員은 보육원 양성소(3개월제)에서 양성되며, 대부분 여성들이다.

마. 東醫學

북한은 漢方治療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東醫治療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休戰 이후부터인데, 1954년부터 국가 치료기관에 東醫師를 두게 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東醫科를 설치하게 했다.

북한이 東醫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現代醫藥品의 절대 부족과 의학수준의 落後性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즉, 그들의 技術水準으로는 현대의학의 개발이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 現代醫學과 東醫學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정책하에 漢方을 토대로 한 동의학연구와 제약공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1958년부터 의과학원 산하에 東醫學研究所를 설치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市·郡단위까지 東醫學管理局를 설치했으며, 1974년에는 東醫學 藥草試驗場을 설치하는 등 동의학개발에 주력하였다.

1978년부터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일정량의 藥草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발조성을 義務化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텃밭(20~50평) 중 2~5평 이상씩 藥草栽培를 장려하는 등 북한은 약초재배,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群衆運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의과학원 산하 東醫學研究所에서는 5만여건의 民間療法을 이론적으로 體系化한 「민간요법」, 「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 등의 서적을 출판한 바 있다.

6. 言論實態

북한은 헌법 제67조에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본권은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에 역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북한에 있어 言論의 역할은 金日成敎示와 金正日方針을 해설·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것이며, 또한 一人獨裁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政治思想的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즉, 북한에 있어 言論의 自由는 인민대중을 社會主義建設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밑에 대중의 指導者 및 案內者 또는 教師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가장 큰 임무는 黨政策 및 革命事業을 선전, 옹호하는 데 있다.

북한의 모든 新聞, 放送을 비롯하여 정무원의 언론관계부서도 勞動黨 선전선동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자동맹과 政務院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출판국 등이 있는데, 朝鮮中央放送委員會는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放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표면상으로는 政務院 직속이나, 내용상으로는 勞動黨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 新聞

북한에는 우리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고, 다만 勞動黨, 政權機關, 社會團體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을 뿐이다. 즉, 노동당 기관지로서 「노동신문」, 最高人民會議과 政務院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로청의 기관지인 「노동청년」, 그리고 「평양신문」, 「인민군신문」과 각 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개의 지방지가 있다.

그외에 工場, 企業所 발행의 공장신문과 각 大學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으며, 海外弘報用인 영·불어판 「평양타임스」가 있다. 그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과 정무원의 각 委員會·部·院에서 발간하는 기관지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신문은 발행 전에 당의 事前檢閱을 받으므로 속보성이 없고, 또한 사회면, 독자투고란, 광고란도 없으며 購讀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노동신문은 연중무휴로 발행되며 겹지 4면과 간지 2면 등 6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나. 放送

북한은 해방 후 日帝때의 평양방송국 기능을 정비하여 「조선중앙방송국」이라 改稱하고 500w의 출력으로 일부 지역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북한 放送事業의 시발이다.

19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제1중앙방송(300kw)과 제2중앙방송(500kw)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對內放送, 「제2중앙방송」은 對外放送을 담당하도록 했다. 1970년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1963. 3. 開局), 대외방송을 組織하여 각 道(직할시)와 市·郡에 지방방송위원회를 설치했고, 다시 1972년 11월 조선중앙 제1방송을 조선중앙방송으로, 제2방송을 평양방송으로 改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비서국 통일전선부에서 관장·운영하고 있는 「구국의 소리방송」은,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으로 개설된데 이어 1969년에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되었다가, 1985년 7월 현재의 방송 명칭으로 대남흑색방송을 맡고 있다. 1989년부터 방송이 시작된 「평양FM방송」은 음악을 통한 對南宣傳用 放送으로 등장했다. 현재 북한은 4종류의 라디오 방송 이외에 10개의 지방방송국과 10개의 유선방송국을 運營하고 있다.

또한 TV방송은 1969년부터 5kw 출력으로 정규 黑白放送을 시작했으며, 1971년에는 對南宣傳을 전담하는 「개성TV방송국」을 개설하였다. 북한은 1974년 4월 15일 金日成의 63회 생일을 계기로 조선중앙TV방송의 컬러방송을 실시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평양 지방방송인 「만수대TV방송국」을 開局, 현재 3개의 TV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은 黨 및 政務院을 대변하는 북한 유일의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다.

7. 結 言

북한 사회는 외형상으로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계급없는 平等 社會이며, 開放體制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하여 주민생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 그리고 철저한 閉鎖政策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統制와 階級差別이 심한 사회이다.

소위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 사회는 金日成 일인 지배체제 확립과 權力世襲에 맞도록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民主社會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全體主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삶의 기회는 크게 두 계층(特權階層, 一般階層)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의식구조 면에서도 체제동조적이고 현실만족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동조적이고 불만 의식에 젖어 있는 층이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한편으로는 불만계층을 대상으로 한 政治思想 教養事業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각종 統制方法을 통해서 획일적 社會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에도 서서히 變化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와 西方國家들의 자본주의적 思潮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사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衣·食·住 問題를 비롯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體制維持에 강력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89년 7월에 있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平祝) 행사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劃一的 사고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0여년간 북한의 宗主國 역할을 해 왔던 蘇聯邦의 붕괴, 蘇聯共産黨의 해체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완전 승리’에 대한 회의적 사고를 갖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정권은 對外·對南·對內政策에서 전술적 변화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改革·開放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험부담 때문에 과감한 政策變化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의 衣·食·住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北韓의 教育

教授 金 淳 培

1. 序 言	135
2. 教育理念과 政策	136
가. 教育理念	136
나. 教育目標	137
다. 教育政策의 變遷	138
라. 「교육체제」에 나타난 政策路線	139
3. 教育行政과 制度	141
가. 教育行政體系	141
나. 學校制度	142
다. 教育制度의 特徵	148
4. 教育內容과 方法	152
가. 教育內容	152
나. 教育方法	160
다. 社會教育과 思想學習	162
5. 結 言	165

1. 序 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을 人間改造事業, 思想革命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교육의 社會·政治的 性格을 강화시켜 왔다. 그들은 교육의 目標을 한편으로는 金日成父子의 偶像화를 통한 세습체제의 鞏固化에, 다른 한편으로는 共產革命이라는 이름 아래 韓國의 자유·민주 이념과 체제를 顛覆시키는 데 두어 왔다.

金日成父子를 神으로 떠받드는 ‘偶像化教育’과 대남투쟁심을 고취하는 ‘憎惡教育’은 건전한 인격의 형성이라는 우리의 교육목표와 상치되는 것이다. 그 결과 南北의 同胞間에는 민족관, 가치관, 의식구조와 행동양태가 달라지는 등 민족의 同質性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민족적 和解와 統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民族이 平和統一을 순조롭게 성취하자면 북한에서 실시하는 政治教化教育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統一力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무형적인 精神力量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의 教育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教育理念과 政策, 教育行政과 制度, 教育內容과 方法 등 정규 학교교육 전반의 핵심 사항을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教育理念과 政策

가. 教育理念

공산주의는 教育을 인간의 潛在力, 創意力, 個性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똑같은 共產主義的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革命事業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教育이 바로 혁명사업인 階級鬭爭의 한 형태이자 政治思想事業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教育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로, 敎員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教育機關을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¹⁾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가 진전할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화된다.”는 공산주의 敎條에 집착하고 있어서 教育에 의한 思想革命이 강조되고 있다. 金日成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教育기관의 날을 버려야 한다.”고 教育에 의한 思想革命을 촉구하였다.²⁾ 思想革命이란 바로 낡은 사상을 뿌리뽑는 人間改造事業으로서 공산주의의 완전승리에 이를 때까지의 階級鬭爭의 기본 형식이라고 한다. 때문에 思想, 技術, 文化의 3대혁명 가운데서 특히 사상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

북한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유일사상으로서 모든 분야의 지

1) “사회주의 教育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선집 32권」(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참고.

2) 「사회주의 教育학에 대하여」(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73), p.313.

3) 김정일이 1992년 1월 3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에게 한 담화 참고.

도지침이 되고 있듯이, 教育에서도 ‘주체의 요구대로’란 標語가 최고의 지도원칙이 되고 있다. 여기서 ‘主體’의 결정권자는 金日成父子밖에 없다는 사실이 教育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主體’ 혹은 ‘共產主義的 새 인간’이란 金日成을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教育은 정통적인 社會主義 教育理論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⁴⁾

나. 教育目標

북한의 개정 「社會主義憲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社會主義教育學이란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 정의하고 있다.⁵⁾

그들이 내세우는 교육목표인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의 의미는 金日成 1人支配體制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個人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인정치 않고 全體를 위하여 個人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인데, 이때의 全體란 그것을 대표하는 金日成父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金日成父子만을 따르는 孝子和 忠臣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전형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라나는 後代들을 金日成에게 목숨바쳐 忠誠토록 하는 教育이 主體思想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4) 최근 북한은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상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 및 1992년 10월 10일 논문).

5) 「교육테제」 발표 15주년 기념 「교육일군대회」의 보고문 및 당 축하문 참고.

실시되고 있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教育은 역설적으로 극도의 非主體的 人間을 육성해 내는 것이다.

다. 教育政策의 變遷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共產政權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분야에 걸쳐 蘇聯式 制度를 그대로 모방하였듯이 초기에는 教育에서도 ‘소비에트 敎育학’을 그대로 도입, 적용하였다.⁶⁾ 1940년대 말까지는 文盲退治를 통해 共產主義思想의 기초지식을 보급하는 데 힘을 썼다. 6·25동란기에는 “모든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學校敎育을 軍事訓練으로 대치하였다.

1953년 7월 休戰後에는 인력동원의 필요상 초등敎育인 人民學校 課程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戰後復舊에 주력하였다. 1956년 말에는 敎育制度의 개편을 단행하여 4년제 초등敎育을 義務敎育化하고, 1958년 11월에는 중학교 3년과정을 포함하여 7년제 義務敎育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에는 새롭게 革命傳統敎養이라는 주입식 사상敎育을 學校敎育의 중심과제로 삼으면서도 生産技術敎育을 강조하였다. 1967년부터 9년제 技術義務敎育制(1966. 1. 1. 공포)가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부터 黨의 유일사상이라는 金日成主體思想이 政治敎化의 중심 내용이 되었다.

1970년 「노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金日成主體思想을 敎育의 基本原則과 政策路線으로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主體’의 원칙과 노선은 1977년 9월 공포한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에 의해 制度化되었는데, 이 테제는 오늘날까지 북한 敎育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고 있다.

6) 任鍾嫻, “北韓의 敎育·文化”, 「民主統一論」(統一硏修院, 1989), p.156.

1980년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革命的 首領觀이란 후계이론을 내세워 金正日에 대한 偶像化教育을 본격화하였다. 人民學校에서부터 ‘김정일 따라 배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더니 1985년에는 각급 학교교육과정에 金正日 偶像化 교과목을 포함시켰다.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人間改造論이 “주체 혁명 이론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면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金正日이 독단적으로 教育을 장악하여 제반 政策과 制度의 수립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각종 集會에서는 “김정일의 현명한 령도로 주체 교육의 화원이 개화·만발했으며, 대학생들은 해바라기와 같이 오직 김정일만을 충직하게 따라야 한다.”는 決意를 하고 있다.⁷⁾

라. 「교육체제」에 나타난 政策路線

북한에서 社會主義教育이란 용어를 나름대로 概念化한 시기는 1968년 3월 金日成이 ‘교육부문 일군’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비롯된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인 낡은 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조아 자본주의 사상이 특히 교육 부문에 만연되어 있다.”고 질책하고 낡은 부르주아 教育事業을 개선하기 위해 社會主義教育學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金日成이 여러 차례 독창적인 社會主義教育學의 창조, 적용을 촉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976년 4월에 탁아소·유치원 교육을 법으로 규정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제정되었다.

7) 「전국 대학생 최우등생 대회」(1990. 1. 12.~13)에서 「社勞青」委員長 최용해의 보고.

곧 이어서 1977년 9월에는 主體思想을 구현한 教育綱領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다.

이 「교육테제」는 5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인 것이다.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教育目標은 이미 지적인 대로 모든 인민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든다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노선으로서 ①교육에서 黨性, 勞動階級性의 구현 ②교육에서 主體의 확립 ③교육과 革命實踐의 결합 ④국가의 教育事業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테제」에 대하여 共產主義的 革命人材 양성의 참다운 교육강령이라 선전하는데, 그 공표일인 9월 5일을 「教育節」로 정하여 매년 紀念行事를 개최하고 있다.⁸⁾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教育政策方向은 전보다 더욱 교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모든 교육에서 政治思想教育을 우선시킬 것을 강제화하였으며, 教育制度和 教育內容, 教育方法 등 제반 교육관련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地域別, 學校別, 對象別, 個人別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배제하고 있다.

「교육테제」는 主體思想을 사회주의교육학에 반영시키려 한 시도였지만, 이들은 서로 調和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唯一思想體系의 도입은 사회주의적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일반적 교육원리가 희생되고 대신 金日成敎示라는 주체사상의 敎理가 북한 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북한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金日成·金正日 우상

8) 北韓總覽(북한연구소, 1983), p.1258.

화학습 경향이다.⁹⁾

3. 教育行政과 制度

가. 教育行政體系

북한의 전반적 教育體系는 「조선노동당」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 하에 놓여 있다.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黨의 전담부서는 中央委員會 祕書局 산하의 「教育部」이다.¹⁰⁾ 이곳에서 주요 教育政策이 수립되며, 그 집행과정을 지도, 감독한다. 各道黨과 郡黨도 당해 지역의 教育行政을 통제하며, 각급 학교를 직접 지휘, 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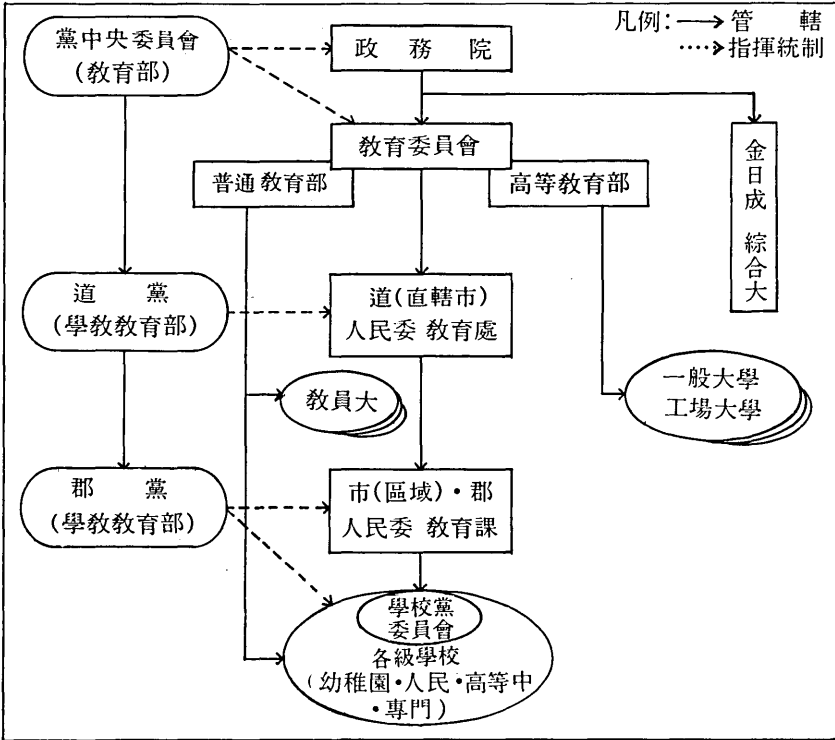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의 教育委員會는 黨에서 결정한 교육 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政務院의 교육위원회 산하에 高等教育部와 普通教育部가 설치되어 있는데, 前者가 일반 대학과 사범대학을, 後者는 교원대학을 포함한 그밖의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맡는다. 예외로 金日成綜合大學은 교육담당 행정부서의 관할하에 있지 않고 政務院에 직속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黨과 政務院의 이중적인 系線이 중첩되어 있으며, 또한 타분야의 一般行政과 엄격히 분리, 독립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9)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 최명編, 「북한개론」(을유문화사, 1991), p.392.

10) 초기에는 黨 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교육을 관장하다가 과학교육부가 별도로 신설되어 1980년대 말까지 관장하였다

<표1> 學校行政 및 統制體系



나. 學校制度

북한 정규 교육의 기본學制는 4-6-4(6)制로서 인민학교는 4년, 고등중학교는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義務教育期間을 1974년부터 취학전 1년(유치원 높은반: 5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모두 합쳐 11년제(1973년 4월 最高人民會議에서 채택)로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日日·週·月 託兒所와 유치원교육, 11년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데 주력해 왔다.

북한과 같이 모든 生産手段이 국·공유화되어 개인이 소비재 이외의 私有財産을 보유할 수 없고 또, 모든 소비마저 國家計劃에 따라 이루어지는 共產體制에서는 유상교육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공산국가의 教育學者들도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부만이 모든 生産施設과 教育施設을 소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無償教育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¹⁾

義務教育, 無償教育에 대한 선전은 마치 ‘세금없는 나라’라는 선전과 같이 全體主義體制의 특성을 말해 주는 사례밖에 안된다.

初等教育은 만 6세에 입학하는 4년제의 人民學校에서 이뤄지는데, 이 시기에는 취학전 탁아소·유치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金日成 숭배심과 共產主義思想의 주입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人民學校에서부터 “수령에 대한 흠모의 감정과 혁명적인 의지를 길러냄으로써 학생의 사상과 감정 속에 수령을 절대화하고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도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¹²⁾

感受성이 예민한 인민학교 과정에서부터 內的志向으로 ‘충성과 복종심’을, 外的志向으로 ‘혁명투쟁심’을 갖도록 감성을 유발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이러한 감정이 고착되도록 反復教育이 실시된다.

6년제의 高等中學校는 4년간의 중등반과 2년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기간에 “기초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金日成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

11) 北京大 教授 賀僉城, “북한의 교육”, 「北韓의 實相과 展望」(同和研究所, 1991)참고.

12) 鐸木昌之, “北韓의 社會政治의 生命體論”, 「北韓의 實相과 展望」(同和研究所, 1991), pp.246-247.

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中等教育機關으로는 정규의 고등중학교 이외에 特殊學校(革命學院, 藝能·體育學校 등)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는 萬景臺革命學院, 康盤石革命學院과 같은 특권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음악, 무용, 조형예술, 체육 등의 특기자가 다니는 藝體能系學校가 있다. 이들 특수학교의 대부분은 人民學校에서 高等中學校까지의 과정이 10년제로 되어 있다. 藝體能系學校의 학생선발에서는 장차 해외 宣傳活動에 종사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特技 이외에도 出身成分과 思想性을 중요시한다.

1985년에는 專門科學技術者の 조기양성을 위해 平壤을 비롯하여 各道에 1개교씩 科學英才學校로 「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하였다. 최근 제1고등중학교와 함께 高等教育機關을 대폭 증설하였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金日成 偶像化 등 사상교육에만 치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확보가 부진한 데에 기인한 政策變化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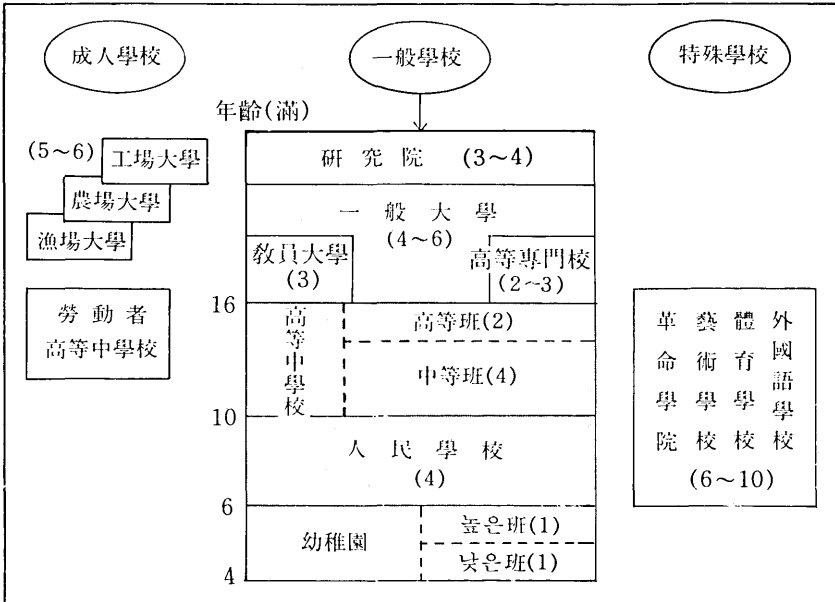
高等教育은 대학과정(4~6년)과 그 위의 연구원(3~4년), 박사원(2년)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밖에 高等中學校 졸업자가 입학하는 教育기관으로서 教員大(3년)와 高等專門學校(2~3년)가 있다. 이런 正規學校 이외에 노동현장에 설립된 工場大學, 農·漁場大學 등 성인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은 綜合大學, 單科大學, 教員大學 등 3종류가 있으며, 教員大를 제외하면 대부분 4년제이다. 다만 政務院 직속의 金日成綜合大學은 社會科學部가 주로 5년, 自然科學部는 6년제이다. 金策綜合工業大學, 金亨稷師範大學, 平壤醫科大學 등 몇개의 수준급 대학만을 中央(教育委員會)에서 관장하고, 그밖의 많은 대학은 地方級 大學이라 하여 도(직할시) 단위의 行政機關이 관할한다. 이들 지방급의 單科大學은 실제로 전문대학 수준이거나 南韓 大學에 설치된 하나의 專攻學科의 규모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

컨대, 원산 철도차량단과대학, 은천 제염단과대학, 경성 도자기단과대학 등이 그것이다.

<표2> 學校教育制度

凡例：□ 義務教育



1980년대 이후 북한은 매년 수십 개의 單科大學, 高等專門學校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1977년 「교육테제」 발표 이후 15년 동안 大學은 1.8배인 130개가 더 늘어 280여개교가 되었는데, 그중 工場大學은 2.2배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高等專門學校를 대학으로 昇格시킨 것도 많다고 한다.¹³⁾ 大學에는 정보공학과, 숫자조종학과, 간석지건설학과 등 150여개의 學科가 더 설치되었다.

13) 「교육테제」 발표 15주년 「교육일군대회」의 보고문(1992. 9. 2)

북한의 敎員大學은 명칭 그대로 人民學校 敎사와 탁아소·유치원의 敎養員을 양성하고 있다. 師範大學은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敎사를 양성하는 第1師範大學과 중등반 敎사를 양성하는 第2師範大學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敎원대학, 제1사범대학, 제2사범대학들은 각각 道別로 1개교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

1990년 10월에는 대부분의 師範大學과 기타 일부 大學의 校名을 바꾸었다. 金日成 혁명업적을 계승시킨다는 명분하에 그의 血族과 그에게 忠誠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校名으로 붙였다. 대표적으로 회령敎원대학은 김정숙(前妻:金正日 生母)敎원대학으로, 평양사범대학은 김철주(어릴때 죽은 동생)사범대학으로, 함남제1사범대학은 김형권(叔父)사범대학으로, 청진제1사범대학은 오증흡(김일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열사)대학으로, 신의주제1사범대학은 차광수(김일성에 충성했다는 숨은 영웅)대학 등으로 改名한 것이다. 개명 당시에 각 대학에서는 黨의 지도층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대대적인 紀念行事를 거행했다.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高等專門學校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서 각 產業分野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을 이곳에서 양성한다. 高等專門學校는 건설전문대학과 같이 북한 전역에 共通으로 필요한 人材를 양성하는 학교와, 제2고등도자기전문학교와 같이 어느 한 지역의 特性에 맞는 학과만을 설치하여 敎育하는 전문학교로 구별할 수 있다.

북한의 高等中學校 졸업생들은 綜合大學 등 일반대학보다는 高等專門學校에 진학하기를 더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¹⁴⁾ 그 이유는 黨員이나 行政幹部가 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雜收入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14) 내외통신, 주간판 817호(1992. 10. 15. 내외통신사)

大學에 진학하려면 치열한 경쟁률은 물론 각 道·市·郡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까다로운 大學推薦原則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高等專門學校 진학시에는 그같은 黨的, 階級的, 思想的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도 入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는 약 560여개로 추정되는 高等專門學校에 16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高等中學校를 졸업하고 2~5년간 기업소 등의 職場生活이나 7년 이상의 軍服務를 마치고 난 후, 그동안 黨이나 社勞靑의 조직생활에서 인정을 받아, 각지의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진학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家族과 親戚의 출신성분이 불확실한 사람(과거 地主나 財産家, 宗教人 등)은 대학입학 자격심사에서 제외된다.

특권층 자녀들은 예외로 高等中學校 졸업과 동시에 大學進學의 특권이 부여된다. 萬景臺革命學院 출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숫자는 高等中學校 졸업생의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부터는 대학입학 자격고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出身成分 위주의 대학추천으로 많은 불만이 생기고 人力資源의 관리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분 중심의 추천이 여전히 決定的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學位를 수여하지 않고 資格證을 준다. 인문·사회·예술계열의 졸업자에게는 專門家의 칭호, 자연계와 기술계열의 졸업자에게는 技士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師範大學과 敎員大學 졸업자들은 해당되는 敎員資格證을 받는다. 學士學位는 研究院(南韓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博士學位는 博士院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준다.¹⁵⁾

북한은 각급 학교와 학생수에 대한 統計數値를 밝히지 않고 있

15) 金東圭,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p.84.

다. 각종 報告文이나 宣傳物 등에 때때로 단편적인 教育관련 숫자를 간접적으로 발표하는 때가 있으나, 그런 數値는 때에 따라 상이하 며 다른 宣傳內容과 비교할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宣傳으로 발표하는 教育관계 統計數値에는 “인구의 1/3인 860만 명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6만개의 탁아소·유치원에서 300만 명이 양육되고 있다.”, “280개의 대학과 600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다.”라는 內容이 대표적인 것이며, 또한 이 정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1987년 10월 평양 외국문출판사가 海外宣傳용으로 발간한 「朝鮮概觀」(日語版)에는 학교와 학생수에 관해 다음 표와 같은 숫자를 밝히고 있다.

구분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전문학교
학교수	28,358	19,262	4,792	4,738	235	473

*이 책자에서 북한은 학생총수는 492만 3천명, 탁아소·유치원생은 200만명으로 주장하고 있음.

다. 教育制度의 特徵

(1) 黨의 統制와 集團主義教育

黨 中央委員會가 모든 教育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적으로 指導, 監督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밖의 각급 지역 당과 부문당 및 학교 등 教育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黨機關들이 教育의 세부 사항까지 통제한다.

따라서 黨에서 결정된 제반 정책들을 즉시 教育에 반영할 수 있는 一絲不亂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각종 宣傳機關들

은 항상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밖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社勞靑) 등 黨의 외곽단체들도 教育에 개입하여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黨의 統制는 集團主義 教育原則을 철저히 보장하는 장치인 것이다.

「사회주의헌법」에 明示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全體主義的 集團主義教育은 북한 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잘 말해 준다. 「교육체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個人을 하나의 독립된 自主性을 가진 個體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全體라는 집단의 한 구성부분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集團主義 教育에서는 全體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하는 全體란 성립할 수 없다. 개인의 個性과 素質과는 관계없이 모두를 집단에 귀속시켜 ‘首領과 黨’을 무조건 따르는 定型化된 인간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集團主義 教育原則은 그 목표와 정책, 또는 教育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一貫되게 나타나며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급 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걸쳐 集團的 思想教養을 담당하는 政治組織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8~13세), 고등중학교와 대학 단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14~28세)이 勞動黨의 외곽 청소년조직으로 設置되어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학생은 「붉은 청년근위대」, 대학생은 「교도대」와 같은 準軍事組織에

망라된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한 靑少年組織에서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한다”는 구호하에 각종 회의와 모임, 집단행군과 야영같은 兵營生活이나 다름없는 集團生活에 참가한다.

(2) 早期 政治思想教育(金日成·金正日 偶像化)

북한은 早期教育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 단계에서부터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이 본격화된다.¹⁶⁾ 1976년에 制定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의해 대부분의 幼兒가 태어난 지 30일부터는 託兒所에서, 만 4세부터는 幼稚園에서 양육·교양되고 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婦女子의 어린이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에게 共產主義思想을 주입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교육 단계에서 金日成·金正日 偶像化學習을 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북한이 조기교육을 강화한 것은 政治思想의 주입과 集團主義精神 함양이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인 만큼, 어릴 때에 金日成父子의 孝子和 忠臣을 만들자는 데에 주목적 이 있다.

人智가 발달하기 전의 유아에게 부모에 의한 家庭教育의 여지를 제한, 축소시키어 가정과 전통문화체계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낱

16)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 제49조에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 思想과 慣習'이 어린이에게 전승되지 못하게 하면서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정치교화는 人間本性和 人道主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民主社會와도 양립할 수 없다.

(3) 勞動과 軍事動員教育

북한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勞動力動員과 軍事訓練을 제도화하고 있다.

「社會主義憲法」에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고 명시하고 「교육테제」에서도 教育과 生産勞動의 결합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⁷⁾ 북한 共產政權이 들어선 이후, 학생의 勞動力動員은 강제되어 왔다. 이것이 1959년부터는 ‘학생 사회의무노동’이라는 이름으로 正規教育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학생의 授業料免除는 바로 1959년 학생 사회의 무노동제의 채택과 동시에 이뤄졌다.

학생들의 勞動力動員은 대학생에서 인민학교학생까지 적용된다. 각급 학교별로 연간 義務勞動日數가 정해져 있으며, 그 勞動은 무보수로 1일 작업량이 할당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긴급을 요하는 課業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수시 動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과된 실제 노동시간은 매년 義務勞動時間을 초과하게 마련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勞動에 참가하는 외에 軍事訓練을 받음으로써, 軍事力增強에 동원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 청년 근위대」를, 대학에는 「교도대」(1959년 「대학노동적위대」로 발족하여 1974년에 教導隊로 개편)가 조직되어 학생들을 軍事組織에 편입시키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학생이 되면 교내 軍事組織에서

17)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 제44조 및 「교육테제」 3장에서는 “리론교육과 실천 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을 규정하고 있다.

정규군 못지않은 고도의 軍事訓練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매주 실시되는 교내 군사훈련 이외에 野外訓練 및 入營訓練을 받고 있다. 대학졸업 전에 실시하는 40여일의 入營訓練을 마치고 예비 少尉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군사훈련을 받은 대학생은 학교 특성과 전공에 따라 軍種과 兵科가 부여된다.

4. 教育內容과 方法

가. 教育內容

(1) 初·中等學校 教科課程

북한의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을 대별하면 ①金日成父子 우상화와 對南革命意識 고취 등의 정치사상 내용 ②生産과 建設에 유용한 技術人力 양성을 위한 내용이다. 이런 점은 각급 학교생활의 전반적 내용과 교과과정 안에 잘 나타나 있다.

教科課程案은 인민학교(만 6세 입학) 4년간 다음 표와 같이 國語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人民學校 교과목 구조상의 특징은 國語는 전체 수업시간의 1/3, 數學은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57%나 되나, 科學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은 統合的 經驗을 주기에는 부족하며, 各領域別 經驗의 전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人民學校 1~2학년은 1학기에 17주, 2학기에는 22주의 授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3~4학년은 1학기에 16주, 2학기에 21주의 授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授業時間은 하루에 5시간, 토요일은 2시간을 넘지 않게 실시하고 있다.

<표3> 人民學校 教育課程 編制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김 일 성 어 린 시 설	152	1	1	1	1	1	1	1	1
김 정 일 어 린 시 절	152	1	1	1	1	1	1	1	1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자 연	222					3	3	3	3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출처 : 「북한개요」(통일원, 1992. 12), p.332.

高等中學校에서는 6년간 數學 등 총 21개 과목에 6,742시간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高等中學校의 학과 영역별 비중은 數學을 위시한 科學 계통이 단연 높으며, 다음이 語文科目과 政治思想領域이다.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도 역시 인민학교와 같이 統合的 經驗을 주기보다는 교과영역별 知識經驗을 주기에 맞도록 꾸며져 있다.

1985년부터 人民學校에 「김정일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 교과목이 새로 설정되었고, 高等中學校에는 金正日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 등 2개의 金正日 偶像化 교과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蘇聯, 東歐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에 잡사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高等中學校 교과서에 수록된 소련·동구 국가들에 대

<표4> 高等中學校 敎育課程 編制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 당 수 업 시 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김일성혁명활동	150	2	1	1			
김일성혁명역사	195				2	2	3
김정일혁명활동	112	1	1	1			
김정일혁명역사	110				1	1	1
현행 당 정책	102				(34)	(34)	(34)
국어문학	769	5	4/5	4	4	3	2
한문	251	2	2/1	1	1	1	1
외국어	591	3	3	3	3	3	3
역사	280		1	2	2	2	2
지리	344	2	2	2	2	2	
수학	1,283	7	7	6	6	6	7
물리	549		2	3	4	4	5
화학	381			2	3	4	4
생물	410		3	2	2	3	3
체육	309	2	2	2	1	1	1
음악	143	1	1	1	1		
미술	76	1	1				
여학생실습(여)	210	1	1	1	1	1	1
기계조작실습(남)	197						
제도	60				1	1	
실습: 전자기계	120				(36)	(50)	(34)
선택과정	100					(26)	(74)
계	6,742	27	31	31	34	34	34

출처: 「북한개요」(統一院, 1992. 12), p.333.

한 歷史敎育을 중단하는 등으로 학습교재를 수정, 보완하였다.¹⁸⁾

18) 내외통신, 주간판 771호(1991. 11. 22. 내외통신사)

高等中學校 하루 수업시간은 6시간으로, 토요일에는 3학년까지 2시간, 4학년부터는 4시간을 넘지 않게 실시하고 있다. 授業日數는 1학기에 16주, 2학기에는 22주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공히 教科課程에 정해진 수업일수와는 관계없이 정치조직의 思想事業, 軍事訓練이나 勞動에 참여하는 등 집단적 組織生活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 교육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2) 教科書에 나타난 政治思想性

「교육체계」에는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 혹은 “정치사상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교육내용의 政治思想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金日成도 “어떤 과학이나 모두 혁명에 복종해야지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치사상성은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語文教育의 목표가 무조건 金日成父子를 본받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음악 등 예능계, 수학 등 자연과학계 교과서에도 教科目 본래의 교육 취지와 목표보다는 政治思想의 주입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편찬되어 있다.¹⁹⁾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들이 政治思想的 內容, 특히 金日成父子 偶像化 內容으로 구성된 점은 國語 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音樂 교과서 노래가사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극

19) 통일원은 1992년 7월 북한의 人民學校 국어, 수학, 자연, 음악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15권, 高等中學校 국어, 수학 등 8개 과목의 교과서 33권 등 모두 48권(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년 및 1991년판)을 입수하여 교과서의 정치·사상 관련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요지를 인용하여 4-가-(2)의 ‘교과서의 정치사상성’ 항목을 작성한 것이다.

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國語의 경우, 인민학교 1~4학년 교과서의 161개 단원 가운데 64개 단원(40%)이, 고등중학교 1~3학년 교과서의 75개 단원 가운데 32개 단원(43%)이 金日成父子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音樂의 경우 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 가운데 金日成父子 偶像化 내용이 인민학교는 68%, 고등중학교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표5> 國語教科書에 나타난 各單元的 主題別 分布 ()은 %

주제 구분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계	대남·미· 일 적개심 고취	공산주의 도덕교양	언어 생활	계
인민학교 (1-4)	32 (20)	25 (16)	7 (4)	13 (8)	31 (19)	53 (33)	161 (100)
고등중학교 (1-3)	16 (21)	9 (12)	7 (10)	10 (13)	12 (16)	21 (28)	75 (100)

<표6> 音樂教科書에 실린 노래歌辭의 主題別 分布 ()은 %

주제 구분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계	적개심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	기타	계
인민학교 (1-4)	41 (36)	20 (17)	5 (4)	17 (15)	13 (11)	19 (17)	115 (100)
고등중학교 (1-4)	18 (33)	6 (11)	2 (4)	9 (17)	10 (18)	9 (17)	54 (100)

앞의 도표 가운데 국어 교과서의 경우 主題領域으로서 읽기, 쓰기, 문법 등의 ‘言語生活’로 분류한 단원의 문장에서도 金日成 偶像化 구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학년 國語 교과서의 제1과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詩를 수록하

였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김일성과 어린이’에 얽힌 이야기를 素材로 한 단원이 나오고 있다. 金日成父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상화 내용의 흐름은 ‘일상적이며 사소한 일을 素材로 시작→金父子의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와 도움→感服과 忠誠 決意’의 도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音樂 교과서의 각 학년 제1과는 金日成 찬양노래, 제2과는 金正日 찬양노래를 수록하고 있으며, 金正淑 찬양노래도 교과서마다 들어 있다. 노래가사의 50% 이상이 이들 3명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며, 愛國歌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音樂理論을 가르치는 단원에서도 金日成父子 찬양의 문구는 반드시 들어 있다. 音樂鑑賞을 해설하는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 3절에서는 이 행복, 이 기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소녀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을 보다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고등중학교 1학년, 음악 제5과 여성 중창, 「해와 별빛 안고서 자라나지요」 감상, P.13)

數學과 기타 自然系列 교과서에는 본문뿐 아니라 연습문제에서도 金日成父子 우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數學 교과서에는 “김일성·김정일 어린시절 이야기 책자를 몇번이나 읽었느냐”는 유형의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그들에 대한 忠誠心을 고취시키고 있다. 기타 自然系列 교과서의 각 단원 첫머리는 金父子의 교시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교시’나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常識的이거나 平凡한 것들로서 金日成父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존재로 되고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의 兒童心理學科 교과서에 따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덕성, 지도의 현명성, 투쟁 업적에 대한 인식, 자각 그리고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듯이 政治思想教育의

초점이 金日成父子的 偶像化에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政治思想教育 內容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측면은 착취사회와 착취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憎惡心을 고취하면서 이를 모두 對南 憎惡心, 敵愾心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 革命鬪爭心의 고취내용은 對南 지방·모락, 地主·資本家의 탐욕과 무자비, 美·日의 만행 등의 유형이다. 그 내용들은 도식적으로 전개되는데, 國語 교과서의 경우 ‘대남모락→대남 혁명투쟁심 고취’, ‘美帝와 日帝의 만행→복수’ 등이 주제가 되고 있으며, 글의 전개는 ‘억압받는 상황의 설정→人民의 저항→상대방의 대응 탄압→敵에 대한 잔인한 복수→계속적인 투쟁심 고취→金父子에 대한 충성 결의’의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革命鬪爭心을 고취하는 내용에는 죽음을 美化, 讚美하는 문장이 종종 삽입되어 있고 문구들도 극단적으로 刺戟的이며 卑俗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교과서의 문장에는 美辭麗句와 함께 반대로 好戰的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배뱃기를 찌르다’, ‘까부시다’, ‘피바다’, ‘원쑤’ 등과 같은 문구와 ‘혁명의 전취물’, ‘타승(승리)’, ‘고지점령(목표달성)’ 등과 같은 軍事用語가 교육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²¹⁾

音樂 교과서에는 노래말이 천편일률적으로 ‘남녘땅을 짓밟는 원쑤 美帝·日帝’를 쳐부시러 나간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 피자국은 우릴보고 웨친다. 아, 나 어린어깨에 복수의 충을 메고 나섰다.”(고등중학교 3학년, 음악 제10과 「소년빨치산의 노래」, P.25)와 비슷한 노래 가사가 「소년근위대원의 노래」, 「나는야 꼬마 명사수」,

20) 鐸木昌之, “北韓의 社會政治의 生命體論” 「北韓의 實相과 展望」(同和研究所, 1991), p.247.

21) 「문학예술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1072.

「꼬마 땅크 나간다」라는 노래 등에도 있다.

數學 교과서에는 남한 어린이의 비참상을 부각시키고 美·日에 대한 鬭爭心을 고취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적지 않게 설정해 놓았다. “남조선에서 학교에 못가는 아동중 구두닦이는 몇명이고 빌어 먹는 아이는 몇명인가?”, “차돌이가 미제를 반대하는 뼈라를 뿌린 숫자는?”과 같은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수록했다.

자연계열 교과서, 특히 數學의 연습문제에서는 鬭爭心의 고취와 함께 軍事知識을 전수하기 위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로서 “군사놀이를 하면서 <암호>를 정했습니다. 보초가 부르는 수와 합하여 600이 되는 수를 불러야 우리편입니다. 보초가 239를 불렀습니다. 몇을 불러야 우리편입니까?”(인민학교 2학년, 수학 「덜기」, P.32)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政治思想敎化의 내용 중에는 같거나 비슷한 것이 여러 교과서에 반복 수록됨으로써 청소년들의 知的·心理的 構造의 변화를 의도하는 대로 유도, 金日成父子體制에 순응시키기 위한 일관된 과정을 담고 있다. 동일한 주제와 소재의 비슷한 문장을 점차 구체화하여 반복 수록하여 가르침으로써 기초교육 과정에서 처음 짝이 튼 편향된 感性과 價値觀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人民學校 3학년과 高等中學校 2학년의 국어 교과서에는 똑같이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해 어떤 종류의 ‘우러러 모시다’는 뜻을 가진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용어들을 나열하여 제시한 비슷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라는 시와 노래는 人民學校 국어와 음악 교과서에 동시 수록되어 있어서 政治敎化의 반복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初·中等學校 교과서 내용은 건전한 인격을 배양하고 폭 넓은 지식을 전수하도록 짜여지기보다는 政治思想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모아져 있어서 강력한 政治敎化의 도구가

되고 있다.

나. 教育方法

「교육테제」는 教育方法으로서 ①깨우쳐 주는 教育 ②이론과 실천 教育, 教育과 生産노동의 結合 ③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④학교前 教育,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양성’을 위해 集團教育, 反復教育 및 早期教育에서 平生教育까지 세뇌와 순치의 다양한 教化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과거 소련의 教育方法과 理論을 도입한 것이다.

소련의 생물학자 파블로프(I. P. Pavlov:1849~1936)에 의해 제시된 條件反射理論이나 행동주의적인 強化理論에 의해, 반복학습을 통한 조건화된 인간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밖에 소련 교육학자인 마카렌코(A. S. Makarenko)나 크루프스카야(Krupskaya) 등이 제시한 集團主義 教育原理와 早期教育理論, 理論과 實踐의 結合理論이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이런 教育방법의 적용은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외부 환경에 자율·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불가능하게 한다. 다만 조건반사하는 人間集團,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人間集團을 양성하는 데 효용이 있을 뿐이다.

集團主義原理에 기초한 教育방법뿐 아니라 生産勞動과의 結合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들은 학생에게 工夫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본다. ‘教育과 生産活動을 結合시킨다.’ 혹은 ‘산 知識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수시로 生産勞動에 동원하거나 혹은 집체적 軍事訓練에 참여시키고 있다.

大學生은 연간 3개월, 高等專門學校 학생은 연간 10주, 高等中學校 학생은 연간 4~8주, 人民學校 학생은 연간 2~4주의 의무노동을 하도록 한다. 각급학교 학생에게 규정된 義務勞動時間은 있지만 실제로 노동참여시간의 제한은 없는 형편이다.

또한 集團主義 教育原則에 충실하도록 조직생활을 통한 政治思想 活動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²²⁾ 「교육체제」에서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고 규정한 대로 組織生活를 통해 공산주의의 敵對思想이라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부르주아 사상을 용해시키라고 강조한다. 적대사상은 出身成分이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農民이나 勞動者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상혁명은 누구에게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면서 集團主義에 충실한 조직생활을 강화시키라고 한다.

集團主義社會의 유지, 강화를 위한 학교생활에서의 조직생활은 교내 군사조직과 정치사상조직에서 어릴 때부터 행해지고 있다. 각급 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따른 政治思想組織으로 「소년단」,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黨組織과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등 軍事組織이 있다.

학교내의 政治組織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 이념학습, 조직규범에 대한 강의시간 등을 갖는다. 조직을 통한 政治思想教育에서는 ‘긍정적인 학습법’을 장려한다면서 인내력, 지구력, 그리고 자발심을 고취·함양할 것을 촉구한다.

高等中學校 고등반부터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키다가 大學生에게는 「교도대」 생활을 통해 正規軍 못지않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校內訓練과 함께 학기말에 野外訓練을 시킨다. 대학 4년간에

22) 3-다-(1)의 ‘黨의 統制와 集團主義教育’ 참고.

校內訓練 960시간과 入營訓練 1,780시간을 합하여 모두 2,740시간의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학교의 조직생활에서는 다른 教科課程이나 體育時間과 마찬가지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내면화시키면서 戰鬥力 향상을 꾀한다. 高等中學校 고등반 학생부터는 學校 社勞靑 지도하에 제식훈련, 사격, 병기조작, 지형지물의 파악 등 軍事的 訓練을 한다.

학교 組織生活와 思想學習의 담당자들은 학급담당이나 정치학습담당 교사뿐 아니라 少年團의 단장, 社勞靑의 지도자, 혹은 黨의 간부들로서 당정책에 충실한 자들이다.

북한의 學校教育 方法은 포괄적으로 金日成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의 고취, 黨의 노선에 충실하게 '혁명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인간이든 集團과 組織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獨創性과 自由는 위축되게 마련이며, 교육과 훈련에서 획일성 요구는 非人間化의 현상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다. 社會教育과 思想學習

북한에서는 정규학교 학생들만 政治教育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에 대한 政治學習과 再教育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黨의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 기관과 단체의 간부요원을 再教育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런 기관으로는 金日成高級黨學校, 道共產大學, 郡黨學校, 人民經濟大學 등을 들 수 있다. 郡黨의 책임자와 道黨의 간부는 김일성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에서, 下級黨 간부는 道共產大學 등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재교육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가운데 비판을 받고 現職에서 축출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洗腦教育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일반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成人教育機關을 설치, 운영하며 通信教育制度도 운영하고 있다. 成人을 대상으로 한 教育課程에서는 학습과 동시에 생산노동 및 작업이 병행되는데,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思想武裝을 새롭게 한다. 이런 기관으로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生産現場에 설치된 3년제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공장(농장·어장·광산)대학」(4~5년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成人教育機關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에서 할당된 作業量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교육이수 후에도 그 職場에서 계속 근무하며 다른 곳으로의 轉勤은 없다.

북한에서는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없이 학령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政治學習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政務院의 부장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²³⁾ 일반 주민들은 職場과 地域 단위로 실시되는 각종 思想學習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간부나 일반 주민이나 하루 2시간 이상 학습하는 風潮를 가지라고 강조한다.

學習의 종류는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작업전에 진행하는 독보회와 조회 등이며, 學習資料는 주로 「김일성노작」, 「노동신문」 등이다. 그밖에 주요 學習手段은 공장이나 마을, 거주지 별로 집단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이다. 作業場과 建設現場에는 매일같이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확장기로 思想武裝과 勞動을 독려하는 정치구호를 외치고 있다. 政治學習은 지나치게 노골적이며, 때로는 기괴한 내용의 映畵를 상영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다.

住民學習을 담당하는 기관은 勞動黨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

23) 조선중앙연감(평양 : 조선중앙통계국, 1976), p.189.

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이다. 黨에서 출판한 「정치사전」에는 이러한 社會團體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 학교”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學習이 조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면서 전 사회적 규모에서 학습을 生活化, 習性化하고 추구하고 있다. 그들의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學習口號로는 “전당, 전군, 전민이 학습하자”, “학습으로 혁명 사업을 시작하고 학습으로 일생을 마치는 인민”, “학습으로 일과가 시작되고 학습으로 일과가 끝나는 나라” 등과 같은 宣傳文句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新聞들은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절서, 1주일에 1번씩 강연회 및 정기강연, 화요학습, 만나질 학습, 해마다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한달 학습”을 실시하고 있음을 선전한다. 그밖에 전투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軍政學習, 행군중의 問答式學習,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밭머리學習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모범적 學習事例로 죽음을 눈앞에 둔 군인, 교원, 의사 등이 얼마나 충실히 학습하였는가를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중상을 입은 人民軍의 처녀 소대장이 자기가 죽는 날에도 病床에서 2시간 학습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켰다는 내용 등이다.²⁴⁾

북한에서는 思想學習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주 「전국학습경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저작집 등 學習資料를 소지하고 다니도록 강요하고 있다.

학습목표는 金日成父子의 효자와 충신을 만들기 위해 그에 대한 충실성을 信念化, 良心化, 道德化, 生活化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

24) 「노동신문」(1981. 5. 21)

조된다.²⁵⁾

5. 結 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政治思想教育에 치중해 왔다. 그들이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閉鎖的·盲從的 인간을 육성하는 규범으로서 비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전 인민의 ‘共産主義化’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사상혁명, 획일적인 정치교화로 인해 북한 동포의 사상과 가치관, 의식구조와 행동양태는 우리 남쪽동포와 달라진 면이 많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平和的 民族統一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하나이다. 북한이 思想革命을 계속 추구하는 한 民族統一의 실마리는 풀기 어렵다. 북한의 교육에서 인류의 普遍的 價値를 수용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은 좀더 쉽게 하나의 共同體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인류의 普遍安當한 가치관과 인간본성에 배치되는 政治敎化와 思想革命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들이 反動思想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사상이란 따지고 보면 人間本性的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人間本性이란 人爲的으로 억제, 말살하려 해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

그들이 오랫동안 人間改造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25) 김정일은 1992년 1월 3일 담화와 1992년 10월 10일의 논문에서 소련·동구의 공산당이 붕괴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주민사상학을 옳게 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로청」위원장 최용해는 1992년 10월 20일 「사로청」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로청」 조직들이 김정일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청년들을 교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들 내부에 혁명의 背信者, 變節者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外部思潮의 침습과 開放의 압력은 思想革命이 완벽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오직 한길 따라 충성과 효성”의 구호를 내걸고 교육에 임하며 思想革命을 전개하고 있으나 세계사적 추세인 變化의 물결을 완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時代의 변화는 북한의 教育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V 北韓의 文學·藝術

金 勇 範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博)

1. 序 言	169
가. 北韓 文學藝術의 本質	169
나. 機能主義 藝術觀	170
2. 本 論	173
가. 北韓 文學藝術의 갈래	173
나. 北韓 文學藝術의 創造方式	176
다. 北韓 文學藝術의 理論	179
라. 北韓의 文藝組織	187
마. 北韓의 主要 文藝理論 分析	192
3. 結 言	196
가. 南北 文化藝術의 同質性回復方向	196
나. 統一을 準備하는 우리 藝術界의 問題	197

1. 序 言

가. 北韓 文學藝術의 本質

북한의 문학예술이라 함은 북한의 文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文學과 藝術 전반을 통털어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우리의 文藝 혹은 文化藝術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

북한에 있어 문학예술은 그 자체가 目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政治·思想的 洗腦의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예정책은 黨(따라서 金日成)통치정책에 예속된 下位政策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사상적 이데올로기가 文藝政策의 동인이자 환경으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변할 때 文藝政策이 뒤따라 변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適實性(relevancy)에 문제가 야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변동 상황과 文藝理論 내지 文藝政策의 변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일치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主體文藝理論과 種子論에 기초한 문예정책은 북한이 소련을 宗主國으로 한 국제공산주의 衛星國家의 대열에서 벗어나 主體思想을 바탕으로 한 民族的 共產主義 내지 金日成 唯一思想體制로의 전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文藝政策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社會主義 民族文化의 건설에 그 基調를 두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帝國主義的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고 수령의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革命偉業에 힘있게 服務하는 혁명적 文學藝術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목표라고 할 수 있는 文學藝術의 임무에 있어 문

학예술은 반드시 노동당의 路線과 政策에 의거하여 창작되어야 하며 革命發展의 매 시기에 당의 정책을 높은 藝術性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當代의 가장 절실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예술적 解明을 줌으로써, 당의 唯一思想, 김일성의 革命思想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革命化, 勞動階級化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黨의 政策을 관철시키는 데 先鋒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文藝政策이 개개인의 내적 욕구에 의한 미적 가치의 創造, 예술적 情緒生活을 통한 인간 삶의 質的 향상, 민족문화와 전통예술의 창조적 繼承, 發展 등을 根本目標로 하고, 이를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이상으로 하는 藝術創造 지원, 국민의 文化享受權 신장을 위한 고급문화의 大衆化와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유형·무형의 傳統文化材 보호관리와 전승 등을 實踐目標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문예정책은 朝鮮勞動黨이 규정, 제시하는 문예정책의 根本目標와 任務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體制維持를 위한 유일사상적 통치 내지 權力世襲을 위한 이상화 수단으로서의 존재의의가 더욱 강조된다.

나. 機能主義 藝術觀

북한의 文學藝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예의 기본적인 觀點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文學藝術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선 黨性, 勞動階級性, 人民性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原則의 기반에는 당의 唯一思想體系라는 불변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敎示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에서 다음과 같이 文學藝術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예술은 반드시 깊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높은 예술

성과 결합된 고상한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입니다.”¹⁾

이와 같이 문학의 機能과 任務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문학의 機能이 예술의 본질인 美의 추구를 本領으로 한다기 보다는 革命의 전파, 그리고 思想의 전달이란 기능에 더욱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같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機能的 論理는 북한의 文學藝術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前提가 된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論旨는 1975년 북한의 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가 발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관철하며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한데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혁명적 사상의식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건설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밝히고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당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는 길을 휘황하게 밝혀준다. 로동계급에 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창조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옹기 수행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²⁾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은 문학예술이 思想的 무기, 즉 당의 唯一 思想體系의 전파매체로서 가지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編,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 p.13.

2) 같은 책, p.13.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의 文學藝術은 각 장르마다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에 입각한 創造力의 강화에 바탕을 두고 首領의 혁명사상과 黨의 노선과 정책의 정확한 반영을 추구한다. 특히, 김일성의 革命思想을 구현하는 것만이 참다운 共產主義 文學藝術의 근본조건이라 明示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김일성 저작선집」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오직 黨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인 文學藝術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黨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³⁾

이와 같은 金日成의 교시는 곧 창작의 基礎이고, 창작 전과정의 指針이며, 창작총화의 基準으로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創造者와 享受者의 역할이란 결국 黨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하는 창조자의 創造力이 혁명적 文學藝術이란 作品形象化의 과정을 통해 근로대중을 教養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자의 個性, 즉 예술적 해석력, 창조적 상상력보다는 共有하고 있는 지도지침의 公理的 傳達者로서의 임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 살펴본 북한 文學藝術의 本質과, 그 본질에 근거한 機能主義 藝術觀은 북한의 文學藝術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제 이러한 前提를 바탕으로 북한 文學藝術의 갈래(장르)를 파악해 보고, 북한 文學藝術의 논리 및 文藝政策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2권」, p.579.

2. 本 論

가. 北韓 文學藝術의 갈래

북한 文學藝術의 갈래를 살피에 있어 단순히 북한에서는 文學藝術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80년대 북한 文學藝術의 유형별 성과를 결들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 文學藝術의 목표는 앞서 살펴본 主體思想의 문화예술적 구현이라는 基本路線과 일치한다. 그들은 文化藝術 전 장르를 통해서 金日成을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확립, 옹호하며 그가 지닌 革命歷史의 藝術的 구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실질적인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일에서 인민대중의 創造性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대중이 創造者며 享有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黨과 首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수령의 지도 없이는 인민대중이 主體性도 創造性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으로써⁴⁾ 명백한 矛盾을 드러낸다.

1980년대 이후 文學藝術의 장르별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과물들은 무엇일까?

文學에서는 「불멸의 역사」 총서발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演劇 및 公演藝術에서는 5대 혁명가극의 완성과 창조 및 무대화, 舞蹈에서는 그들 특유의 무용표기법의 개발, 國樂分野에서는 그간 지속되어 온 민족악기의 개량사업, 映畫分野에선 「조선의 별」 완성

4) 고병철,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 체계 분석”,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10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모든 작업들은 創造者 개인의 창조적 상상력이기보다는 바로 북한식 集體創作을 통한 주체적 인간의 典型에 대한 형상화작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내용을 개관하는 것이 최근 북한 전체의 文學藝術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은 世襲體系의 구축과 김일성 主體思想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文學藝術界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데, 그의 문학예술에 대한 指導力은 「영도예술」이란 주체사상총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金正日에 의해서 현지교시와 직접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예술 전반의 成果는 映畫部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바, 그의 ‘영화예술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舞踊分野의 ‘무용표기법’ 역시 김정일의 創案에 의한 작업이다. 이 작업은 舞踊의 동작을 기호화하여 音樂의 총보에 병기함으로써 민속무용의 새로운 革新이라고까지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시 舞踊表記法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타이프라이터의 개발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그들이 不朽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이야기하는 3대혁명노작을 歌劇化하고 이러한 패턴을 ‘피바다式 歌劇’이란 형태로 전면 무대화 하는데 이 작업에 金正日이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 작업은 다시 「금강산의 노래」, 「밀림아 이야기하라」라는 새로운 創作形態로 표현된다. 이 가극과 방창의 유형을 삼입하여 새로운 舞臺藝術化를 추구하는 집체적 창작작품들은 대형의 무대를 추구하는 거대한 예술의 奇型形態로 정립된다.

그리고 ‘옥류금’의 창조로 대표되는 民族樂器 개량사업이다. 북한에서는 金正日의 제안에 의해 그간 ‘대평소’, ‘해금’, ‘피리’ 등 기존의 5음체계를 革新하여 서양식의 음정과 구성체계로 轉換했으며, 또한 반음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개량하였다. 특히, 가야금의 경우 絃의 조정으로 音域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의 줄을 쇠줄로써

대체하고 그 音色을 하프에 가까운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弄絃 등의 기법과 함께 새로운 彈琴方式을 채용하였다. 이들 악기들은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등의 오케스트라에 西洋樂器와 병치하여 그 실현을 보고 있으며 남북한 文化交流時 우리에게 선보인 바 있다.

예술계의 각 장르에서 金正日은 작품창조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총서 「불멸의 역사」이다.

이 총서의 발간작업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文化藝術界 전반의 黨政策의 수용과, 그것의 예술적 形象化作業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줌과 동시에 主體思想의 체계화와 金正日의 領導藝術體系의 확립과정을 증명해 주는 일종의 文化的 대사업이다. 우선 叢書의 의의부터 점검해 본다.

“총서 「불멸의 역사」가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15권의 큰 분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긴 시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김정일의 권력 강화 과정, 이른바 ‘지도자동지’ 시기에 대두되고 있음은 거의 확실하다. 관점에 따라서는 ‘어버이수령시대’에서 ‘지도자동지시대’에로의 정치적 성격 변화에 해당되는 구체적 이미지 창출의 일환으로 제기된 여러 예술적 장치 중에 그 예술적 성과에 있어,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출 못지않은 비중을 가진 것이 총서 「불멸의 역사」라 할 것이다.……「불멸의 역사」총서는 소설 부문, 곧 묘사 문학을 통해 주체사상을 의식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⁵⁾

이같은 지적은 「불멸의 역사」에 대한 가장 명확한 創作意圖의 규명이다. 이같은 사실로 보아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문학예술은 金正日에 의한 主體의 人間像의 창조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이라 보인다.

5) 김윤식, 「북한개론」(서울 : 을유문화사, 1990), p.429.

이상으로 북한 文學藝術의 갈래와 1980년대 이후의 북한 文學藝術의 성과를 동시에 검토해 보았다.

나. 北韓 文學藝術의 創造方式

북한 文學藝術의 창조방식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考察할 수 있다.

첫째는, 문학창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理論的 土臺 위에서 創作作業을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文學創作을 하되 누가 어떤 형태의 자격을 부여받고 創作作業을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前者의 방법에 의해서 그 創造方式을 살펴보고자 한다. 後者의 경우에는 이후 항목인 북한의 文藝組織 항에서 살펴 보겠다.

북한 문학예술의 理論的 土臺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모든 文學藝術의 근본이 되는 創造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機能主義 藝術觀 역시 그 根底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론적 바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은 당초 1930년대 초반 蘇聯作家同盟이 규정한 창작 슬로건으로, 중국에는 공산권 국가의 중심적인 文藝創作理論으로 정착된 것이다. 舊소련 국가정치서적 출판사가 刊行한 「막스-레닌주의 미학원리」(1960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을 ‘社會主義的 내용과 民族的 형식을 가진 예술’로 정의⁶⁾하고 있는데, 人民大衆이 선호하고 각 민족의 口味와 情緒에 맞는 고유한 형식에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社會主義 理念內容을 담는 것을 말한다.

6)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서울: 평민사, 1981), p.31.

북한의 한 文學概論書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주장을 이어받아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역사적인 具體性和 혁명적 發展過程 속에 진실하게 묘사하되, 共產主義的인 긍정적 주인공을 主導的인 입장에 세워 形象化하는 창작방법⁷⁾이라고 하여 이를 보다 具體化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창작 방법상의 요건으로는 黨性, 階級性, 人民性이라는 세가지가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文藝理論에서는 계급성을 특히 勞動階級性이라 바꾸어 부르고 여기에 敵對主義를 새로 추가시키기도 한다.

우선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黨性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傾向性 내지 理念性, 즉 黨路線과 政策에 입각하여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고 사회의 발전과 생활의 근원을 黨政策과 관련시켜 描寫하고 反映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 있어서는 김일성 저작선집(제3권)에서 이를 “당에 대한 끊임없는 충실성”이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론서⁸⁾를 통해 黨性은 수령에 대한 忠實性에서 가장 철저히 구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든 共產主義社會든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인 모든 문학예술은 必然的으로 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 지지, 옹호하는 階級的 性格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階級的 性格은 자기 계급의 利益을 옹호하는 예리한 思想的 무기라고 보는 것이 북한 文藝理論의 기본 시각이다. 즉, “계급성은 가장 선진적·계급적인 노동계급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

7) 정석홍,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서울: 국토통일원, 1986), p.9.

8)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73.

는 로동계급성으로 발현된다.”⁹⁾고 보고, 노동계급성을 階級鬭爭의 무기임과 동시에 근로대중의 階級敎養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人民性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를 완성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人民大衆의 이익을 反映하고 인민에게 服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人民性은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강한 階級性, 즉 黨性 및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지·옹호하는 勞動階級性과 통일되어 있는 概念으로서, 인민대중에게 쉽게 이해되고 이에 服務하여 인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革命과 建設에 꺾기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人民性은 또한 예술의 特質, 이념적인 要素, 사회적 機能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며 사회주의 문예의 本質的 부분으로서 通俗藝術論이나 群衆(集團)藝術論 정립의 단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人民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해서’ 抽象畫는 자취를 감추고 ‘人民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해서’ 水墨畫(전문미술인들 사이에서 기량전시 방식으로만 소개된다.)는 일반에 전시되지 않으며, 예술무용 외에 餘興舞踊이라는 群衆舞踊이 보급되는 등 이 理論을 반영하고 있는 藝術政策의 예는 많다.

또한, “온갖 반동적 문예조류 및 반혁명적 문예사상과의 비타협성”을 의미하는 敵對主義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명목 밑에 비본질적이며 의의없는 잡다한 생활적사실 등을 기계적으로 복사하는”¹⁰⁾ 自然主義,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藝術至上主義, 기타 形式主義 등과 같은 관념론철학과 부르주아사상에 의해 생겨난 문예조류에 반대하여 非妥協的으로 鬭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文學藝術의 創造方式은 사회주

9) 같은 책, p.237.

10) 같은 책, p.99.

의 리얼리즘에 기초하여 黨性, 곧 사회주의적 傾向性 내지 理念性, 즉 黨路線과 政策에 입각하여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고 사회의 발전과 생활의 근원을 黨政策과 관련시켜 描寫하고 反映하는 創造方式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北韓 文學藝術의 理論

일반적으로 文藝作品과 理論은 본질적으로 個人的이고 個別的인 성질을 갖는 반면, 文藝政策은 集團의 또는 國家的 차원에 놓여 있어 이러한 兩者間의 대립·긴장관계가 오히려 相互補完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兩者의 발전적 緊張關係는 완전히 去勢되고 오직 집권자의 統治手段 내지 공산주의적 革命과 建設을 다그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이 그 存在意義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北韓의 文藝理論이고 文藝政策이다.

공산주의국가에 있어 文藝理論은 그것이 곧 文藝政策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양자는 表裏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文藝政策을 알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文藝理論에 대한 이해가 必須的이다. 北韓의 文藝理論 중 文藝政策과 직접 관련이 있고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이론으로는 主體文藝理論, 集團藝術論, 種子論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1) 主體文藝理論

주체문예이론은 思想에서의 주체, 政治에서의 자주, 經濟에서의 자립, 國防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주장하는 主體思想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이다.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서 ‘主體’ 확립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 그것이 文學藝術을 시대의 현실적 조건과 文學藝術 자체 발전의 요구에 맞게 創造, 發展시키는 가장 올바른 길임

을 闡明한다는 목표를 지니며, 文學藝術을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 역사와 현실에 맞도록 하여 革命과 人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武器가 되게 한다는 것¹¹⁾으로, 결국 그 논리적인 성격으로 볼 때 理想的 보편성과 形式的 특수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의 社會主義的 내용과 民族的 형식의 결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文藝의 ‘민족적 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일제 식민지시대에 金日成에 의해 지도, 창작되었다는 抗日革命 문예형식이고,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것도 黨의 唯一思想인 金日成 革命思想이라는 이론을 펴고 있음을 볼 때, 이 이론 자체가 결국은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變形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주체문예이론에 따른 결과로 홍기삼¹²⁾이 지적한 다음의 세 가지 文藝現象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첫째, 모든 文藝作品과 理論에 金日성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絶對的인 요청이다. 따라서 북한 문예의 가장 많은 創作比重은 金日성에 대한 稱頌과 禮讚을 위해 바쳐진다.

둘째, 金日성의 절대화, 이상화에 따라 그의 家系 전체도 마찬가지로 神聖한 차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선문학사」는 “……위대한 혁명적가정에 대한 빛나는 형상”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40면이 넘게 그 一家의 생애를 神聖化, 偶像化한 작품들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金日成主義에 철저히 귀의, 순응, 복종, 실천하는 人間像의 구현이다. 모든 인간과 사회현상은 金日성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11)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예술과 비평」, No.13 가을, pp. 150-177.

12) 홍기삼, 앞의 책, pp.47-48.

하고, 金日成과 똑같이 생각하여야 하며,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등등의 表現은 가장 자주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集團藝術論

북한의 文學藝術을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黨政策과 唯一思想의 文學예술적 形象化를 통한 실질적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구는 文藝總, 즉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다. 이 조직의 하부에는 영화, 문학, 음악, 무용 등 藝術全般의 장르별 同盟이 구성되어 있다. 이 文藝總은 실질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사회문화부의 지도를 받으며 政務院 문화예술부의 행정적 管理體系 하에 있다.

북한의 행정기구인 政務院은 15위원회, 28부, 1원, 2국, 1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文化藝術部가 문화예술행정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다. 정무원 文化藝術部에는 음악무용지도국, 영화총국, 연극지도국, 미술지도국, 대외사업국, 군중문화국 등이 있는데 이들은 黨의 課業을 관철하기 위해 中央黨의 지도, 통제하에 문예부문에 관한 對內住民 思想宣傳 및 문화예술을 통한 공산주의 敎養業務를 관장하고 행정적인 指導, 監督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機構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부와 사회문화부의 實踐的 路線을 정무원 문화예술부가 수용하여 이의 行政運用을 맡고, 이같은 黨의 課業의 예술적 형상화 문제는 創造者 집단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내의 각 예술장르별 同盟에서 실현하는 運用組織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북한 文學藝術 창조의 실질적인 성원들이며, 또한 그들은 각각 그들이 지니고 있는 功勳과 力量에 따라 11등급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즉 人民藝術家, 功勳藝術家를 비롯하여 1급에서 8급까지 그리고 급의

등급을 합쳐 11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우리와 달리 專業藝術家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人民藝術家와 功勳藝術家이다.

우선, 功勳藝術家의 칭호는 1952년 6월 4일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중앙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人民藝術家의 칭호는 1961년 7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국가적 최고 명예인 국기훈장의 級數로 인정되는데 人民藝術家는 국기훈장 1급, 功勳藝術家는 국기훈장 2급에 해당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¹³⁾에 의하면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는 藝術人들에게 수여되는 국가 명예칭호의 하나로서, 인민(공훈)예술가 칭호는 당의 唯一思想으로 무장하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文藝思想과 그 구현인 조선노동당의 文藝政策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功勳을 세움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唯一思想으로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적 民族藝術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회화·조각·작곡·공예부문 등의 藝術家들에게 수여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곧 국가의 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으며, 공훈과 서열에 의한 국가적 禮遇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작품의 창작활동에는 현직 勤勞大衆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식 概念으로 분류해 본다면 문예총 산하 각 예술장르 동맹소속 作家들은 프로예술가들이며, 창조작업에 참여하는 勤勞人民大衆은 아마추어라 생각할 수 있다. 근로인민대중들의 藝術活動은 직장의 문예서클이나 작품의 현상모집을 통해 발굴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중요한 創作成員들로 인정된다.

이같이 창작자들은 그들이 속해진 同盟에서 운영하거나 國家에서 직영하는 창작집단에 속하게 되며, 이 創作集團이란 개념은 북

1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編, 「문학예술사전」(평양: 1972) 참조.

한 문학예술의 가장 특징적 活動單位이며 또한 活動樣式이라 할 수 있다.

무용, 음악(특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극 등 종합적이며 집단적인 藝術活動을 전제로 하는 예술행위일 경우 創作集團이란 개념은 쉽게 이해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피바다가무단, 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 인민군협주단 등의 藝術團體에 속한 각종 예술가들은 집단적 창조행위에서 상호 協力性 등의 문제와 共同創作 등의 문제를 통해 볼 때, 우리와 같은 형태의 藝術創造行爲를 할 수 있다지만, 문학과 미술분야만큼은 개인적 개성이 그 藝術性的의 질을 판정하는 만큼 集團創作行爲의 문제가 이해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미술과 문학 역시 집단창작형태의 藝術行爲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藝術創造方式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미술분야를 살펴보면 북한은 金正日의 特別指導를 받고 있다는 만수대창작사, 당중앙위원회 미술지도국 직속인 중앙미술창작사, 당중앙위원회 미술국 소속의 경공업미술창작사, 사회안전부미술창작사, 무대미술창작사와 같은 創作社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 예술가들은 개인적 創作行爲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創作社에 배속되어 그들이 말하는 소위 '集體創作'을 수행하고 있다.

창작사소속 예술가들이 만수대 대기념비군상, 왕제산과 삼지연 및 대성산 등지의 혁명전적비, 대기념비, 주체사상탑, 남포갑문기념비 등의 국가적 기념비적 藝術創造活動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들 창작사들이 미술활동의 集體創作을 위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현인원 260명 규모의 최대 創作社인 만수대창작사의 역할과 소속 예술가들의 集體製作은 하나의 뚜렷한 創造的 異質性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文學의 영역에서는 소위 「4·15문학창작단」이 있다. 문학의 集體創作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4·15문

학창작단은 作家들이 創作室을 별도로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작가동맹소속으로,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그들이 가장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총서 「불멸의 역사」의 創作作業에 투입된다.

이 총서는 책임집필의 형태로 筆者가 선정되고는 있지만 4·15창작단 전원이 참여하는 集體作이다. 이들의 작업은 「낮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1932년»,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戰區)」 등의 작품을 통해 김일성의 抗日武裝鬪爭時期的 혁명 역사를 단계적으로 形象化·小說化시켜 나가고 있다.

「불멸의 역사」 총서는 이미 여러 분야의 分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革命歷史學習의 기본지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 등은 靑少年들의 실제행군을 통한 혁명 역사 체험 등의 방식으로 運動化되어 있다.

이외에도 映畫文學 분야에서는 다수의 시나리오 作家들이 조선 예술영화촬영소 산하 백두산창작단, 대흥단창작단, 보천보창작단, 왕재산창작단과 삼지연창작단에 속해 있으며 北韓軍 總政治局 소속인 2·8예술영화촬영소 산하 3개의 創作團인 월비산창작단, 월미도창작단, 대덕산창작단과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의 文學創造成員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集體創作의 형식은 북한 문학의 특징이며, 집체적 토의에 의한 唯一思想 구현의 방식을 택하여 국가적인 文學事業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自由國家에서의 예술의 自由市場經濟에 의한 창조와 보급이 아닌 국가적인 藝術家 관리에 따른 專業作家의 국가관리양식이며, 동시에 출판상업주의와는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 藝術市場의 한 특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어쨌든 文學과 美術 등 각 분야에 있어 창작사 또는 창작단의

존재나 운영형태는 우리 藝術界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그들만의 藝術形態이다.

(3) 種子論

種子論은 북한이 주체문예이론과 함께 북한만의 獨創的 문예이론이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주체문예이론이 美學原理라면 種子論은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藝術創作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實踐綱領¹⁴⁾이라 할 수 있다.

種子란 작가가 말하려는 基本問題이자, 작품의 사상·예술적인 핵으로서, 북한 사회가 공동의 이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일체의 價値體系를 하나의 이데아로 尖銳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種子는 이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미학적 意圖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哲學性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種子는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요소로서 모든 예술작품에는 반드시 작가의 個性的이고도 獨創的인 種子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예술적인 形象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種子에 관한 사상은 “문학창작의 어느 개별적인 범주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소재의 선택과 구상으로부터 작품의 얽음새와 구성, 성격 창조와 양상 등 창작의 전과정에 전일적(全一的)으로 작용하는 근본고리에 대한 사상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을 밝혀주는 기초에 관한 사상”¹⁵⁾이라고 주장된다.

결국, 種子란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美的 요소이자 思想的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요소 중 물론 思想性的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여기서 思想性이란

14) 권영민, 앞의 책, p.166.

15) 홍기삼, 앞의 책, p.49.

바로 당의 政策을 정확히 반영하고, 당의 路線과 政策에 철저하게 의거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社會政治的 과제에 올바른 思想的 解答을 제기할 수 있는 것¹⁶⁾을 뜻하므로, 種子論 또한 金日成 偶像化로 귀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은 “종자에 있어 기본은 사상에 두어야 하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며 거기에 복종된다.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 種子論이 김일성주의의 實踐的 美學인을 밝히고 있다.

(4) 기타의 理論들

앞에서 언급한 社會主義的 리얼리즘, 主體文藝理論, 種子論은 북한 문예이론의 기본줄기를 이루는 核心的인 이론이다.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文藝理論이 주장되고 있다.¹⁷⁾

우선 가장 북한다운 이론으로는 문학을 戰鬥行爲의 하나로 看做하는 ‘速度戰理論’이 있다. 빠른 속도로 戰鬥을 감행하는 것과 같이 創作도 속도를 내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典型化理論’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骨格을 구성하는 이론으로, 典型的인 인물의 대표적인 인간형으로 金日成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 때문에 특별히 강조된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實踐的 차원에서 人民性和 관련을 갖는 文藝理論들로는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平易하고 通俗的으로 되어야 그들의 念願과 鬪爭의 방향이 옳게 반영될 수 있다는 ‘通俗藝術論’, 창작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群衆 또는 集團이 되어야 한다는 ‘群衆藝術論’,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다.’라

16) 권영민, 앞의 책, pp.164.

17) 홍기삼, 앞의 책, pp.52-94.

는 극단적인 命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문예의 추상주의적 경향을 美學的 自殺이자 反藝術的인 것으로 매도하는 ‘反抽象主義’, 文學藝術作品은 철저히 생활체험과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體驗論’ 등이 있다.

이밖에 金日成 偶像化政策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는 개인숭배를 통해 永遠不滅의 길을 지향한다는 ‘永生主義 藝術論’ 등이 있고, 문예이론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文學藝術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革命的 浪漫主義’, ‘革命的 樂觀主義’, ‘革命的 大作主義’ 등이 거론된다.

라. 北韓의 文藝組織

북한의 文學藝術 관련 기관과 단체로는 政府機關으로 정무원 문화예술부가 있고, 社會團體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문예소조 등이 있다. 이를 文藝政策 수행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정병덕¹⁸⁾, 김경웅¹⁹⁾, 홍기삼²⁰⁾, 권영민²¹⁾, 이기봉²²⁾ 등의 글을 참고로 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1) 政務院 文化藝術部

정무원 문화예술부는 1957년 8월 教育文化省으로 통합되어 있다가 1960년 12월 文化省으로 독립하였으나 다시 文化藝術部로 개편되었으며, 북한 문학예술의 정치선전 道具化를 반영하듯이 黨中央委 선전선동부와 사회문화부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고

18) 정병덕, “북한의 문화예술 조직”, 「문화예술」, No. 121, pp.119-130.

19) 김경웅, 「북한의 문화예술이론과 교육실태」(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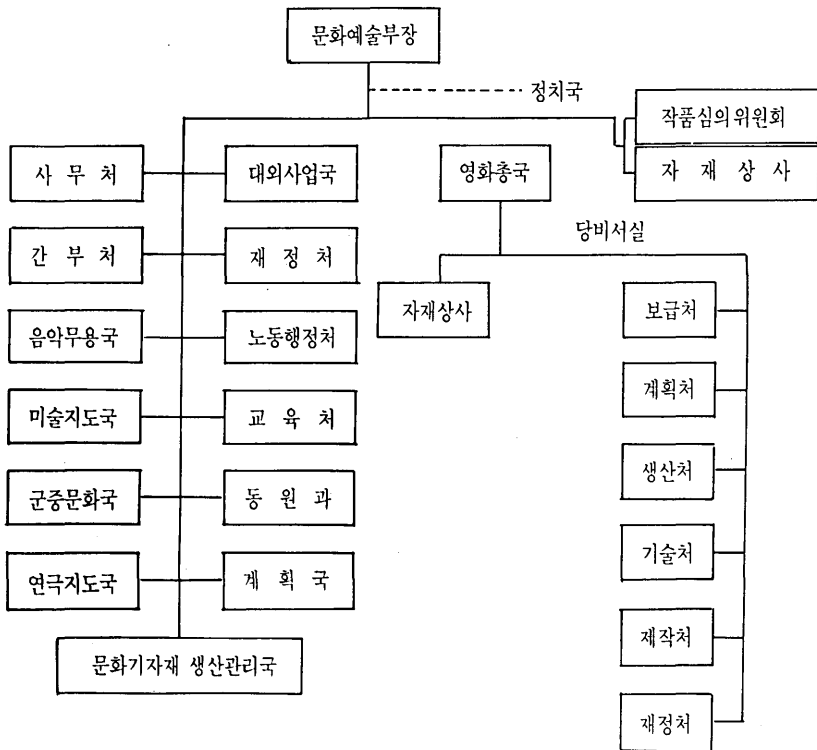
20) 홍기삼, 앞의 책.

21) 권영민, 앞의 책.

22)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서울: 사사연, 1986)

있다. 직제상으로 남한의 文化部에 해당되는 정무원 文化예술부는 창작사업에 대한 행정적 指導와 執行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宣傳과 김일성 偶像化施策에 따른 對民 정치, 사상, 교양사업 활동도 아울러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표>와 같은 정무원 文化예술부의 部署組織을 통해 그 기능의 대강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정무원 文化예술부의 조직현황



(2) 對外文化連絡委員會

이 위원회는 북한이 1955년 4월 반동회의를 계기로 對共產圈 일변도 외교에서 중립권 및 신생독립국과의 다변 外交工作을 위해 1956년 4월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黨과 內閣의 외곽단체로 정부간의 접촉에 앞서 民間外交 또는 친선단체들의 교류나 문화활동을 통해 宣傳工作을 벌이고 있고, 그 산하단체로 각종 친선협회와 김일성연구소조 및 북한지자연대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기구를 순수 文化藝術團體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있어서는 외국공연단의 초청과 문화예술을 통한 對外宣傳事業에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關與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朝鮮文學藝術總同盟

文藝總은 북한의 作家, 藝術人들을 망라하여 결성된 통일적인 조직이자 사회단체이다. 文藝總은 당초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²³⁾으로 發足하였다가 6·25동란중인 1951년 3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改編되었으며, 1953년 9월 이를 發展의으로 해체하여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작곡가동맹으로 分離, 改編되었다.

현재의 문예총은 1961년 3월 再發足된 것으로 중앙위원회에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5명)을 두고 조직부, 선동부, 교양부 등의 部署가 있으며, 그 산하에 작가, 음악가, 미술가, 무용가, 연극인, 영화인, 사진가 등 장르별 同盟이 있는데 同盟別로 분과위원회와 각 도(직할시)지부가 있고, 本部 직속기관으로 문예총출판사가 있다.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文藝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23) 북한총람에는 1946년 3월 25일에 「북조선문학예술동맹」이 발족되고, 같은 해 10월 각 부분별 동맹을 두기 위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1945년~1982년」(서울 : 1983), p.1081 참조.

의하여 이룩된 혁명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며 그이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使命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①당의 領導 밑에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충실한 文藝戰士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수행 ②당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創作事業을 진행하도록 협의, 조직, 집체적 지도를 保障 ③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革命的 문학예술을 창작하며 문학예술을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文學藝術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 ④反黨의이며 反動的인 사상의 침투와 발현을 반대, 투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群衆 속에서 문학예술의 새세대들을 體系의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 ⑤세계의 모든 進步的이며 革命的인 작가, 예술인들과 연대성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수행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문예총은 남한의 藝總(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나 民藝總(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그 조직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나 機能上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총이나 민예총이 예술단체 내지 예술인들의 自發的인 의지로 結成되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機能上으로도 예술인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守護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적 성격의 民間團體임에 비해, 북한의 문예총은 사실상 노동당의 政策執行機關 내지 작가·예술인들을 지도, 통제, 감독하기 위한 行政機構로서, 이를 통해 국가배급과 작품발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加入의 의무화되고 盟員은 公務員 신분을 갖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4) 朝鮮作家同盟

문예총의 산하단체인 作家同盟은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의 산하단체로 發足하였다가 몇차례의 改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중앙위(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서기장, 조직

부, 신인지도부, 시·소설문학·희곡·아동문학·평론·고전문학·외국문학 등 각 분과위, 문학신문사, 각 잡지 편집부, 각 도지부로 組織되어 있다.

作家同盟의 임무와 기능은 ①작가들이 노동당의 文藝政策을 잘 알며, 그를 관철하도록 지도, 통제 ②작가들이 黨이 요구하는 작품을 적시에 創作해 내도록 창작 지도 ③作家들 속에 黨의 유일사상 체제를 확립하며, 공산주의 교양을 실시 ④맹원 또는 후보맹원의 黜盟과 加盟 권한을 통해 문단 등용 및 축출 문제를 결정 ⑤正盟員(중앙공급대상 8호)들에게 식량과 의복 배급 ⑥黨委員會를 통해 작가들에 대한 黨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作家同盟은 ‘창작지도’라는 명칭의 사업을 통해 작가 개개인의 創作生活을 속속들이 검열·통제하는데, 작가동맹이 盟員에 대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특히 盟員으로의 가입·축출과 식량·의복 배급권한만으로도 모든 작가들이 同盟의 권위에 철저히 隸屬되고 統制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한 작가동맹원들은 소속 作家同盟 창작실에서 8시간 9 상근무 하며 일과종료 후에는 2시간의 思想學習과 1일 사업총화 討論을 거치게 되어 있다. 현지 파견작가는 일정기간 작업현장에 가서 勞動者나 農民과 어울려 노동하지 않으면 안되며, 직장을 가진 現職作家는 ‘창작휴가’를 얻어 필요한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作家同盟 중앙위원회 산하단체 중 특기할 만한 團體로는 「4·15 문학창작단」이 있는데,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主體型的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典型으로 삼고 있는 首領(김일성)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며 창조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集體文學創作團體이다.

(5) 文藝小組

文藝總이 전문작가, 예술인들의 조직이라면 文藝小組는 아마추어 작가, 예술인 내지 同好人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文藝小組는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로동자, 농민, 인민군대, 청년학생들의 자원적인 대중조직”으로 문학소조, 연극소조, 음악소조, 무용소조, 미술소조, 사진소조, 교예소조 등 장르별로 構成되어 있다. 이 文藝小組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학교, 인민군대 및 가두들에 조직되어 직맹, 사로청, 농근맹, 여맹 등 근로단체들의 지도밑에 활동”²⁴⁾하며 藝術作品들을 창작하여 群衆들 앞에서 공연한다.

그러나 문예소조의 첫째가는 任務에 대하여 「문학예술사전」은 金日成의 “혁명적 문예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문예 작품을 감상하고 연구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사상리론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²⁵⁾이라고 규정하여 소조운동의 政治教育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大衆化를 겨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남한의 同好人 문예서클인 ‘문화가족’과 비견될 수 있는 文藝小組는 문예정책을 포함한 북한 노동당의 政策路線을 일반 人民大衆에게까지 파급, 확산시키는 유력한 手段이 되고 있다.

마. 北韓의 主要 文藝理論 分析

1980년대 이후 북한의 文學藝術은 그들이 정립하고 있는 소위 主體藝術論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金正日에

24)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242.

25) 사회과학원, 같은 책, p.375.

의한 문화예술의 領導體系 확립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에 소위 ‘唯一思想’이란 말로 표현되어 왔던 主體思想論의 핵심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체사상이 하나의 思想的 體系 혹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核心的 思考의 뼈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소위 金正日에 의하여 제기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책자에서부터이다. 이미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에 의한 權力承繼가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며, 그 묵시적 認定이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북한 권력의 核心部에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과정과 主體思想의 철학체계적 확립이 동궐의 틀 속에서 進行되어 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김정일에 의해 구체화된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는 무엇인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²⁶⁾

말하자면 主體思想의 철학적 원리가 사람 중심의 哲學思想이며, 이를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곧 金日成이라는 뜻이다. 金日成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自主性和 創造性, 意識性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本質的 特性을 이룬다는 것을 밝혔다고 김정일은 말하고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2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동방사, 1982), p.9.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개조자입니다.”²⁷⁾

이와 같은 論理의 개진을 바탕으로 金正日은 金日成에게 역사의 발전을 주도하는 歷史發展의 主體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主體思想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全社會의으로 통용되는 논리를 공고히 하였다. 金日成의 탄생 70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金正日의 메시지는 앞에서 引用한 책자의 내용을 이루는데 이 골격은

- 사상에서의 주체
- 정치에서의 자주
- 경제에서의 자립
- 국방에서의 자위

를 중심으로 하는 自主的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論理의 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創造的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는 實踐論理로서는

-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 분야의 革命을 위한 기본논리로서의 주체사상은 思想의 基本을 확립해야 한다는

- 사상개조 선행
- 정치사업 선행

의 전제적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具體的이며 實踐的인 주체사상의 논리틀과 그 실천방안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전 사회적 영역과 文學藝術의 새로운 이론의 開發을 필요로 하게 된다.

27) 김정일, 같은 책, p.10.

1988년 9월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돌 기념경축보고대회」에서의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란 보고에서는 문학예술적 주체사상의 實踐方式과 目標을 당정책의 기본노선으로 다음과 같이 提起하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개화 발전하고 있는 문학예술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참된 인간의 고상한 품모를 지닌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형성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린 문학예술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²⁸⁾라고 文化藝術界의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主體型의 인간의 전형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이 主體思想의 문학예술적 임무이자 기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안은 당의 主體思想이 세계의 主人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指向과 要求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自主思想이고,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세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偉力한 무기를 주는 과학적 革命思想이며,²⁹⁾ 주체사상의 敎養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데 문학예술이 담당해야 할 몫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한의 모든 文學藝術은 이와 같은 主體的 人間型의 典型創造라는 명제에 종속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북한 문학예술의 주목할 만한 成果와 業績들은 이같은 논리를 형성하는 예술분야의 한 具現方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8) 노동신문, 1988년 9월 9일.

29) 같은 신문, 1988년 9월 9일.

3. 結 言

가. 南北 文化藝術의 同質性回復方向

지금까지 북한 문화예술의 全般的 理解를 위한 방법으로 북한 문학예술이론의 근간을 살펴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文學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일면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異質的 개념의 창조형태인 集體創作의 유형과 그 이유를 검토하였으며, 북한 문화예술정책의 行政的 機能面을 동시에 검토해 보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金正日의 대두로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북한 문화예술계의 諸現象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위 主體思想에 대한 일개를 확인하고 문화예술계에 수용되어진 主體的 人間型的 形象化라는 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같은 점점은 북한의 문화예술을 現象的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재된 構造的인 면의 이해를 전제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문화예술은 창조자 집단의 藝術創造力과 함께 인민대중이 참여하는 大衆文化의 확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북한 전 주민, 즉 근로인민대중이 創造者며 동시에 享有者인 형태로 그들의 政策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보천보경음악단, 또는 왕제산경음악단과 같은 대중취향의 藝術團體가 참여하는 형식의 大衆文化, 즉 趣向文化의 확산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같은 구조적인 면에서 主體思想의 문화예술적 구현 사업은 더욱 強化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한 文化交流는 이같은 그들의 政策的 變化를 감안한 文化的 대응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應戰力의 結集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 文化藝術이 지니고 있는 기준과 틀로써가

아니라 그들 문화의 핵심과 구조를 省察한 바탕 위에서 同質性回復의 방향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統一을 準備하는 우리 藝術界의 問題

Hasan Ozbekhan이 二分化시켜 놓은 기획모형론³⁰⁾을 정책유형론으로 類推해 볼 때, 資本主義社會의 미학원리가 아닌 社會主義가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미학원리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상 文化政策은 어느 분야의 정책보다도 創造的 人間行動模型(Human Action Model)에 가장 가까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文藝政策은 그 수단적 성격상 ①價値를 선택하고 規範을 탐색하며 目標를 발명·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目標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특정 유형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다는 점 ②자기 규제와 자기 적응보다는 外部政策에 의해 통제되고 外部로부터 부과된 산출 결과를 향해 行動이 프로그램화된다는 점 ③行動代案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내지 적실성(relevancy)을 강조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창조적 人間行動模型과는 상반되는 모형인 機械論的 模型(Mechanistic Model)쪽에 보다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A. Almond와 G.B.Powell은 「비교정치론(Comparative Politics)」에서 政治體制의 산출, 즉 政策을 업적(performance)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를 配分政策, 規制政策, 抽出政策, 象徵政策 등의 네가지로 유형화시킨 바 있는데, 남한의 문예정책이 상대적으로 配分政策的 성격이 강하다면 북한의 문예정책은 象徵政策的 성격이 특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 Jantsch, Erich,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1970), pp.31-47.

Almond와 Powell의 설명에 의하면 象徵政策(Symbolic Performance)은 政治指導者들이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理念에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혹은 보상을 約束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象徵的 축적물들은 다른 정책의 成功的 추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象徵政策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국민들 사이에 政治體制 및 政府의 正統性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둘째, 다른 정책(특히 規制政策)에 내재한 順應(compliance)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된다.

요컨대, 북한에 있어 문학예술은 黨과 人民에 대한 복무를 근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창조의 個人的 역량과 성과 대신 集團化의 논리를 내세워 엄격히 지도, 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결국 作家, 藝術人들은 자유직업인들이 아니라 공산정권에 고용된 宣傳要員으로 존재하며, 黨의 통제하에 계획적인 作品活動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狀況이 문학과 예술로 하여금 非藝術化, 非人間化의 과정을 견도록 만들며 그 결과로서 문학예술의 存在의 美를 파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래 영화, 문학, 가요 등 여러 분야에서 作品主題와 素材가 복잡화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들어 북한 文化藝術의 변화가 운위되고 있으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戰略次元의 변화라기보다는 戰術上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북한에 純粹文學藝術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極端的으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북한의 문학예술은 美學的 의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金日成父子의 偶像化와 黨의 정책노선을 宣傳하기 위해서 존재하여 왔고,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민요, 전통문화재의 발굴과 보호관리 등 思想性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몇몇 분야를 論外로 한다면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偏向은 문학분야뿐 아니라 모든 예술분야에 한결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다못해 巧藝分野까지도 막간풍자교예라는 ‘사회주의적 내용’에 充實한 교예종목을 개발하여 남한과 미국사회의 腐敗相을 신랄하게 과장, 풍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예술인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즘(ism)과 체제의 차이로부터 胚胎된 남북한 문예현상간의 異質性은 분단 40여년간 점점 깊은 골을 형성하여 같은 民族이면서도 서로의 예술을 理論的으로 이해할 수 없고 心情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南北韓 文化藝術狀況은 1991년 12월에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 예술교류와 협력(제16조)이 本格的으로 추진될 때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남북한간 원활한 文化藝術交流과 協力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교류와 협력이 民族再統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政策方向 설정과 政策手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再統合過程에서 문화예술이 목표로 삼아야 할 理想的인 역할과 現實的인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민족악기 개량, 자모식 무용표기법, 무대미술과 무대기술 등 그들의 예술적 성과에 대한 學術的 차원에서의 편견없는 연구, 政治經濟的 통일이 이루어진 후 가장 단기간 내에 文化的·心理的 통합을 이루기 위해 文藝政策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과 접근방법 및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거 동서독간 文化交流의 經驗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등에 대한 研究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VI (北韓의 外交

教授 鄭 富 洛

1. 概 觀	203
2. 對外政策 基調	205
가. 對外政策 目標 및 方向	205
나. 對外政策 決定 및 執行過程	208
3. 對外政策 展開	213
가. 對外政策 變遷概要	213
나. 外交領域 擴大(修交)	216
다. UN 및 國際機構 進出	218
4. 主要 對象別 外交實態	220
가. 對中·러시아 關係	220
나. 對東歐 關係	225
다. 對非同盟圈 關係	229
라. 對西方 關係	233
5. 對外政策 展望	237

1. 概 觀

21세기를 향한 오늘의 國際情勢는 지난 20세기의 東·西冷戰構造를 탈피하고 새로운 協力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地域別, 國家別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離合集散하는 혼란된 과도기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구공산권 각국들이 改革·開放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퇴조했다. 이로 인해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공산권이 붕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東·西冷戰體制 속에서 분단되었던 독일 등 분단국들은 脫이데올로기·脫冷戰의 와중에서 再統合을 실현하였고 또 冷戰의 틀에 속박되었던 弱小民族들은 속속 獨立을 실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국제적인 변화는 韓半島 주변상황의 變化를 촉진하기도 했다. 韓國과 北韓은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會員國으로 각각 가입하였고, 이로써 남과 북이 國際聯合 등 국제무대에서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外交競爭을 지양하고 상호 補完, 協力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韓半島의 南北問題를 위요한 국제적인 協力基盤이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의 北方外交가 급성장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된바, 소련을 위시하여 동구 각국들이 韓國과 수교하고 經濟協力關係를 적극 희망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國交를 수립하였고, 이것이 북한의 對美·日關係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향력으로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韓半島의 주변 4개국들과 남북한이 交叉承認이 완성되는 추세라 하겠다. 이처럼 한반도의 分斷外的 與件이 본질적으로 變化되고 있다는 것은 나아가 북한의 變化를 적극 촉

진시키는 영향력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周邊狀況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對內政策이나 對南關係에서의 입장과 자세를 새롭게 摸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편으로는 國際情勢의 변화, 특히 공산권의 崩壞現象과 이데올로기의 退潮現象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려 하며 東·西冷戰體制가 탈피되었다는 역사발전의 현상을 歪曲, 이른바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尖銳하다고 선전한다.

金日成父子는 기회있을 때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縮小宣傳한다.¹⁾ 더욱이 북한은 이 같은 사회주의의 沒落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外面하고 외부의 세력 이른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내부의 ‘반동들’에 의해 일어난 치열한 ‘階級鬪爭’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노선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強辯한다. 국제적으로 三三五五 殘存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반제 혁명투쟁”을 위한 “혁명적 당을 건설해야 한다.”²⁾고 선동하는 등 외부의 變化思潮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社會主義 共產主義 革命運動을 부활시키기 위해 계속 선전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對外關係에서 많은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憲法을 개정하면서 종래의 헌법에 明示되었던 정치 외교분야의 조항 가운데 革命的 用語들을 대폭 수정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이니 하는 과거 憲法條文上的의 혁명적 표현문구들을 대폭 삭제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기구로 外交委員會를 신설하여 과거의 黨

1) 김정일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1992.1.3)
2) 김정일 논문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1992.10.10)

의外交보다 議員外交에 많은 비중을 두는 등 외교기구를 개편했다. 대외활동면에서도 對美·日關係를 개선하기 위한 접촉활동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1992년 12월 黨中央委員會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와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4차회의를 통해 延亨默을 해임하고 姜成山을 總理로 재기용하는 등 대외경제정책의 전문가들로 政務院 관료들을 대폭 개편했다.

이처럼 북한은 한편으로는 社會主義路線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對西方關係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二重的인 외교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외부의 變化思潮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西方先進國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經濟問題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변화하는 國際環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對外 開放政策을 더욱 구체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開放化는 한반도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게 될 것이란 측면에서 북한의 對外政策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격동하는 國際情勢의 변화 속에서 북한이 전개하는 對外政策의 본질과 한계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전개될 것인가?

2. 對外政策 基調

가. 對外政策 目標 및 方向

북한은 勞動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노선을 정책의 基本路線으로 설정하고 당의 革命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수

립, 전개한다.

노동당규약에 나타난 노동당의 革命鬪爭目標은 다음과 같다.

즉,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북한의 對外政策은 사회주의 革命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당의 規約과 憲法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북한 헌법의 對外政策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에 채택된 社會主義憲法(제16조)³⁾에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개정된 社會主義憲法(제17조)⁴⁾에도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北韓을 사실상 이끌어 나가는 金正日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勞動黨의 총노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1992년 1월 3일 勞動黨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金正日은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수령이 내놓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다. ... 앞으로 그 어떤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든지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지 한걸음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

3) 1972. 12. 27. 最高人民會議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폐기하고 전문 11장 149조로 된 사회주의헌법 채택.

4) 1992.4.9.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3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의 총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아직도 대외정책을 國際革命力量強化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共產圈이 붕괴된 현시점에서 내부의 社會主義政權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동조세력을 찾기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 소위 ‘反帝統一戰線’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대외정책에서 ‘反帝鬭爭의 統一戰線構築’을 당면한 대외정책목표의 하나로 내세운다는 사실은 다음의 몇가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새로 개정된 북한의 憲法(제17조)⁵⁾에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92년 11월에 발표한 金正日의 논문에서도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적 정당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적 당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 빨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애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反帝社會主義建設 鬭爭’을 위한 ‘共同戰線’을 구축하는 대외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 共產圈이 소멸된 가운데 對西方先進國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는 등 對西方先進國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때, 북한의 대외정책은 經濟實利追求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하겠다. 북한이 對外經濟外交를 중요시한다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5) 1992.4.9.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3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북한은 최근에 「外國人投資法」⁶⁾ 등을 제정하고 對外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의 憲法條項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基本立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改正憲法에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제16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제37조)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비록 대외정책상의 기본노선을 ‘社會主義 共產主義 革命運動’ 및 이를 위한 ‘反帝統一戰線’ 구축에 두고 있으나, 그들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모면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對外經濟實利를 추구하는 정책에 보다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門戶를 개방하고 對西方先進國들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對外政策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나. 對外政策 決定 및 執行過程

(1) 對外政策 決定過程

북한은 모든 정책을 黨과 首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결정 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對外政策은 노동당의 革命路線에 입각하여 결정되며, 그와 같은 범주 내에서 형식상 憲法の 規定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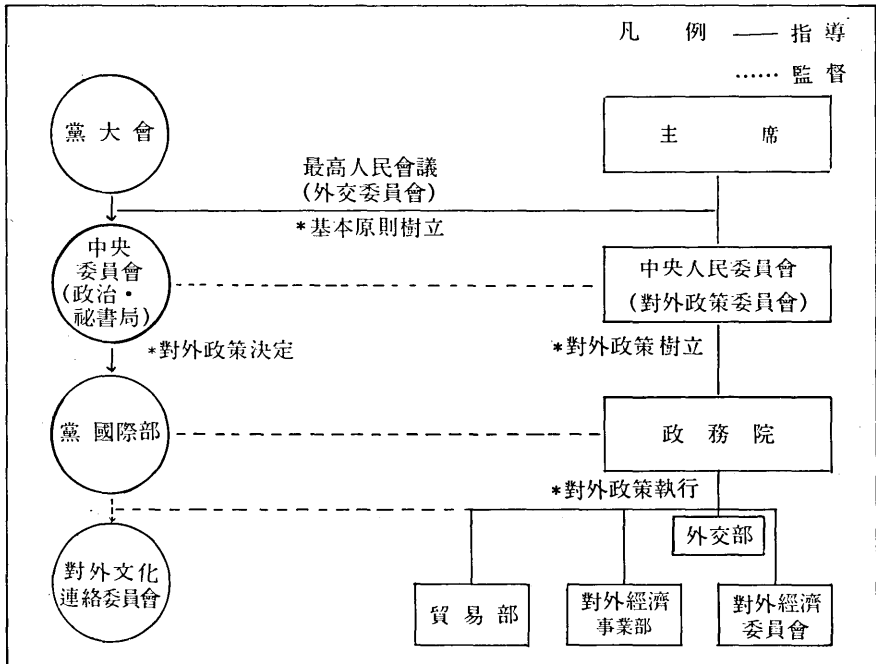
勞動黨 全黨大會⁷⁾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면 黨中央委員會와 黨政治局이 이를 구체화하

6) 1992.10.20.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을 공포했다.

7) 노동당 전당대회는 5년에 1회 소집(당규약 제3장 21조)되나 실제로는 그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진다. 1980년 10월에 제6차 당대회가 소집된 이후 1992년 말까지 12년이 지나도록 당대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고 黨祕書局의 대외사업담당 비서와 國際部의 지도하에 政權機關이 대외사업계획을 수립, 전개한다. 다시 말해서 당의 결정과 지도 아래 형식상 정권기관이 對外政策을 구체화, 현실화한다. 1992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상 外交政策決定過程은 다음과 같다.

<표1> 外交政策의 決定 및 執行機構表



출처 : 「북한개요」(통일원, 1992. 12), p.403.

最高人民會議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하며(개정헌법 제91조), 最高人民會議에 「외교위원회」(표 2 참조)를 두고 여기서 對外政策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게 했다(同法 제98조).

그리고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대외사업 중,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同法 제101조).

<표2> 外交委員會 構成員

○ 위 원 장	金容淳(前 許鏐)
○ 부위원장	鄭濬基, 姜錫柱, 金英鎬
○ 위 원	金哲明, 韓時海, 李賢昊, 崔賢德, 黃秉大, 高基俊, 李東哲, 禹鍾學, 張在澈 李成祿

主席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며(同法 제105조), 條約의 비준 및 폐기에 관해 공포하고(同法 제107조 5항), 外交代表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하고(同法 제107조 6항), 外國大使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同法 제107조 7항).

中央人民委員會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同法 제117조), 條約을 비준 및 폐기하며(同法 제120조 9항), 大使의 임명 및 소환을 결정한다(同法 제120조 10항).

(2) 對外政策 執行機關

政務院은 정책집행기관으로서(同法 제124조) 조약체결 등 대외 사업을 직접 관장한다(同法 제126조 7항). 政務院 산하의 외교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外交部이다. 外交部는 외교집행의 실무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對外業務는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대외관계의 기관들이 분담하고 있다.⁸⁾ 경제분야는 對外經濟委員會, 貿易部, 對外經濟事業部 등에서 집행하며 그 외의 민간차원 또는 문화예술에 관한 대외사업은 해당기관과 勞動黨의 의곽단체인 對外文化連絡委員會, 海外同胞援護委員會 등이 담당하고 사회주의 혁명사업은 祖國平和統一委員會, 祖國統一民主主義戰

8) 「북한개요」(통일원, 1992.12), p.405.

線,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女性同盟 등이 담당한다. 그러나 순수한 재외공관의 통괄 등 외교업무는 外交部가 전담한다.

① 外交部: 정무원의 기능 가운데 外交分野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수 실무기관이다. 이 部는 他國과의 관계 또는 國際機構와의 관계 등 공식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북한의 역대 외교부장으로서는 朴憲永, 南日, 朴成哲, 許鎔에 이어 현재 金永南까지 12명이다. 이들은 5년 내지 10년 이상씩 재임한 것이 특징이다.⁹⁾ 북한의 外交部에는 부장 및 副部長 5~7명이 있고, 그 아래에 10개의 地域局과 10개의 機能局으로 대별되며 외교부의 외곽단체로는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平壤市對外奉仕總局, 國家觀光總局, 對外保險總局, 政務院對外奉仕局, 外交團事業總局 등이 있다(표3 외교부 기구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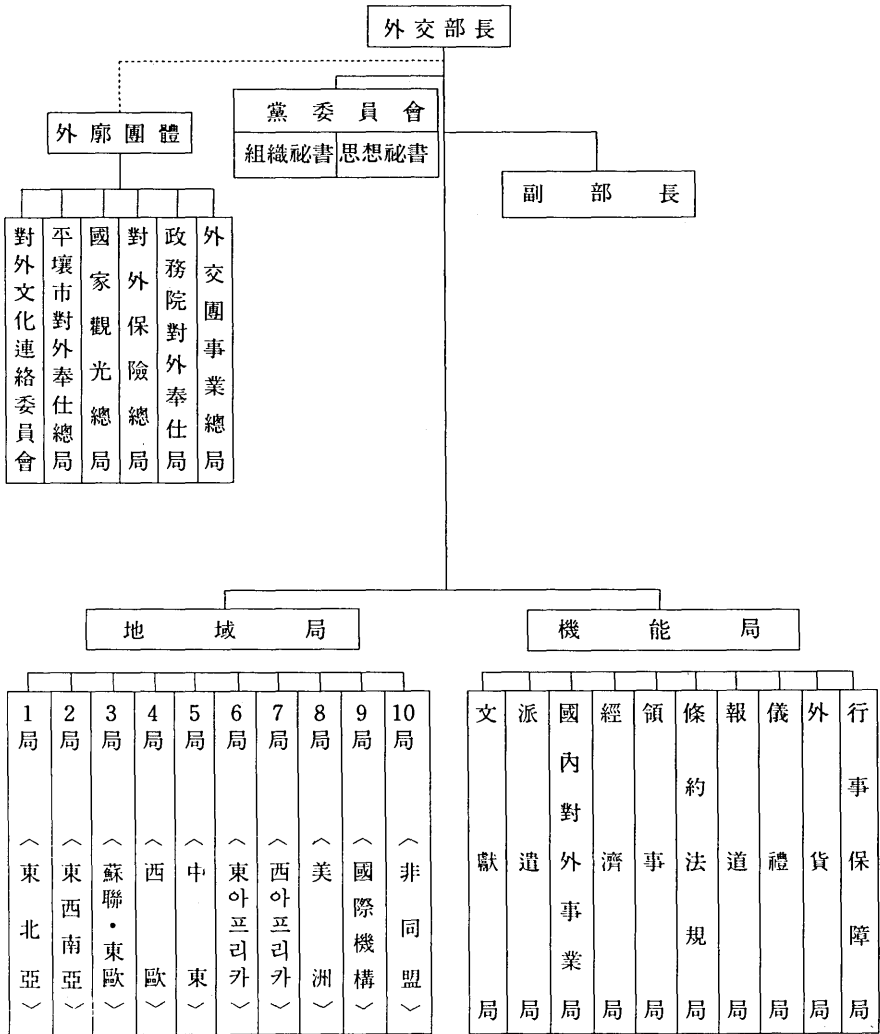
② 對外經濟委員會 및 對外經濟事業部: 경제분야의 대외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그중 對外經濟委員會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며 對外經濟事業部는 국교관계가 없는 나라들과의 경제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즉, 貿易關係의 개설, 상담, 기술도입 등이다.¹⁰⁾

③ 기타 勞動黨의 外廓團體: 對外文化連絡委員會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文化, 藝術 등 民間次元에서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북한이 1956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對非同盟國 및 新生 獨立國家들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黨의 외곽단체로 만든 것이다. 기타 勞動黨의 산하에 형성된 각종 親善團體, 宗教團體, 研究所 등이 각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외관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 강호양, “북한의 대외정책”, 「민주통일론(북한실태편)」(통일연수원, 1992.2), p.167.

10) 강호양, 같은 책, p.169.

<丑3> 外交部 機構表



출처 : 「북한개요」(통일원, 1992. 12), p.404.

3. 對外政策 展開

가. 對外政策 變遷概要

북한은 政權形成 이후 지금까지 勞動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목표를 위해 對外政策을 전개해 왔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國際革命力量’¹¹⁾을 강화한다는 것이 늘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대외관계를 國際的인 상황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해 왔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力學關係 또는 북한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에 따라 대외관계의 비중을 다르게 두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外關係의 변천과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政權樹立 초기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중심의 共產陣營外交에 국한되었다.

이 기간에는 북한이 소련에 의해 形成되고 소련에 의해 武裝하여 6·25南侵挑發을 감행하는 등 전쟁준비와 전쟁수행을 위한 軍事外交에 대외관계의 중점을 두었으며 또 戰後 復舊事業을 위해 소련 중심의 共產圈陣營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당시 북한의 대외관계는 蘇聯·東歐圈 및 中國 등 12개국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북한의 ‘陣營外交期’로 구분될 수 있다.¹²⁾

11) ‘국제혁명역량’이란, ‘3대혁명역량’(북한내의 사회주의 혁명기지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지원역량) 중 하나이다.

12) 「북한개요」(통일원, 1992.12.) p.397 참조.

② 中·蘇 이념갈등 현상이 심화된 1950년대 중반부터 非同盟圈이 형성된 1960년대까지 북한 외교는 ‘自主路線’을 표방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56년 소련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 格下運動이 전개되고 中·蘇間 이념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이른바 ‘政治에서의 自主’를 표방하고 종래의 對蘇關係의 편중에서 中·蘇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新生 獨立國家 29 개국들이 「반동회의」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平和 5原則」¹³⁾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非同盟運動을 개시했다. 이에 북한은 非同盟圈에 대한 외교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非同盟圈에 대한 외교를 적극 추진한다는 方針을 설정하였다. 이 대회에서 金日成은 연설(사업총화 보고)을 통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¹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은 對非同盟外交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당 외곽단체로 對外文化連絡委員會를 조직했으며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人民外交’(민간차원의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기간중, 많은 新生國家들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간 유엔에서의 票對決을 의식하고 이들 신생국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북한의 ‘多邊外交期’로 구분될 수 있다.

13) 「평화 5원칙」이란 영토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 등이다.

14)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56), p.12.

③ 1970년대 북한의 대외활동은 美·中 관계개선 등 國際的 긴장 완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實利追求外交로 전개되었다.

19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⁵⁾라는 議題를 두고 토의한 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實利追求를 위한 외교로 설정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까지 對共產圈·對非同盟圈을 중심으로 전개했었던 대외활동을 西方陣營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는 남북관계에서 「7·4南北共同聲明(1972년)」이 발표되었고 한국이 1973년에 「6·23선언」, 즉 平和統一外交政策을 발표하면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남북한간에 和解雰圍氣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의 友邦國들과의 접근을 시도,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對西方外交活動을 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5년 8월 非同盟頂上會議에서 북한은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또 유엔에서의 남북한간 票對決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共產側 案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西方側 案과 함께 공동으로 통과되는 등 기현상을 연출케 되었다.

④ 북한은 1980년대에는 對西方 經濟協力關係를 적극 모색했다. 1984년 1월 27일, 最高人民會議 제7기 제3차회의에서 姜成山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資本主義 나라들과의 무역거래를 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同年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습營法」을 제정하는 등 對外資本 및 技術誘致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3년의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 등 기존의 暴力革命路線이 새삼 국제사회에 노출되고

15) 「조선중앙연감」(평양 : 1972년판), pp.269-270.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革命路線과 폐쇄체제에 의한 구조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對外經濟實利外交는 경제적 성과보다 오히려 북한의 開放壓力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⑤ 1990년대 북한의 대외관계는 共產圈의 붕괴와 한국의 北方外交에 의하여 많은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공산권이 와해되면서, 한국은 北方外交를 통해 변화된 東歐諸國들과 수교함은 물론, 한반도의 주변국인 中國과 러시아(舊 蘇聯)와도 수교했다. 특히, 韓國과 北韓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나란히 가입했다.

이처럼 주변상황이 급격히 변한 가운데 북한의 對外政策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美國, 日本 등 西方諸國과의 관계개선에 그 초점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對外政策을 구속하는 勞動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목표와 이를 명분으로 표방하는 金日成父子 세습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향후 對外活動의 전개 양상과 그 성패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나. 外交領域 擴大(修交)

북한은 1992년 12월 현재 127개국과의 大使級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修交國 169개국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의 能力에 비해서는 과도한 숫자이다. 즉, 북한은 修交를 확대하고 있다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兼任公館을 늘리고 單獨公館을 축소하며, 또 公館의 규모도 감축하는 형편에 있다.

남북한의 修交實態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분단 이후, 1950년대까지는 북한이 共產陣營에 국한된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한국 역시 非共產圈에 한해 수교를 맺었다. 또 이 당시 국제사회에는 獨立國의 수가 적었으므로 南은 16개국, 北은 12개국과 수교한 상태였다.

1960년대에 와서 新生 獨立國家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雨後竹筍처럼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는 가일층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들 신생 독립국가들은 소위 ‘反霸權’, ‘反帝·反植民地解放’ 등의 구호 아래 비동맹외교권을 형성하고 美·蘇 중심의 冷戰體制에서 이탈, 中立路線을 표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에 북한은 自主路線을 표방하고 中·蘇 等距離外交의 효과를 제고하면서 상기 非同盟圈에 침투하였고, 그 결과 1971년에 이르러 북한의 修交國數는 3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대외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1971년에 이르러서 83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1988년에 韓國이 「7·7선언」을 발표하였고 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등을 배경으로 對外關係에서 수교국수를 145개국으로 확대하여 이 당시 북한의 修交國 111개국에 비해 많은 격차를 뒀다. 특히, 북한은 버마 아웅산폭발사건 등 국제테러를 감행하여 오히려 修交國의 수가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蘇聯이 해체되면서 그 소속 자치국들이 분산, 독립하였고 동구공산권 각국들이 改革·開放化함으로써 한국은 이들과의 國交를 맺는 등 수교국의 수가 대폭 증가됐다. 물론 북한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각국들과 修交를 맺는 등 수교국의 수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1992년 12월 22일 현재 남북한의 修交現況은 다음 표와 같다.

남북한의 在外公館 실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南北韓 修交 現況

(1992. 12. 현재)

지역구분	한 국	북 한	동시 수교
아 시 아	31 개국	19 개국	17 개국
아프리카	41 "	42 "	39 "
구 주	44 "	32 "	31 "
미 주	34 "	20 "	19 "
중 동	19 "	14 "	11 "
합 계 (단독수교)	169 개국 (52개국)	127 개국 (10개국)	117 개국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1992. 12), p.434.

韓國의 在外公館 수는 총 137개로서 北韓의 在外公館 수 78개에 비해 차이가 크다. 이 가운데 常駐大使館의 경우, 한국이 95개인데 비해 북한은 63개 정도이다.

특히, 북한의 在外公館 실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領事館보다 代表部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總)領事館은 4개인데 비해서 代表部는 11개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總)領事館이 37개인데 비해 代表部는 불과 5개이다. 이처럼 남북한간 在外公館 설치의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한의 외교활동이 海外 自國民을 보호하는 일보다 政治·經濟的 目的達成에 비중을 둔 데에 있다.

다. UN 및 國際機構 進出

南北韓은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각각 會員國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政府樹立 이래 43년 만에 유엔가입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유엔加入을 저지하려 했던 소위 '하나의 朝鮮', '植民地 解放' 논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의 의무, 인권보장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國際舞臺에서 상호공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6월 聯邦制의 이름으로 하나의 國號와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국제적으로 合法化,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의 유엔가입을 저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991년 5월 27일, 한국의 유엔가입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북한은 돌연 外交部聲明을 발표하고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同聲明에서 북한의 가입명분이 韓半島의 분단을 막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유엔同時加入을 반대했던 종래의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을 꾸며 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 이유로는 “남조선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나 “유엔무대에서 전조선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이 편파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韓國의 유엔가입에 대해서는 “유엔 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놓는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¹⁶⁾ 그리고 북한의 당시 政務院 總理 延亨默은 1991년 10월 2일 연설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하여 북한이 주장해 온 ‘하나의 조선’, ‘유엔동시가입 반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듯이 強辯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활동무대가 넓어진 대신, 平和와 人權保障에 관한 유엔의 노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5월 유엔의 核安全措施協定에 따른 핵사찰을 수락하게 되었고, 이로써 國際原子力機構는 북한의 寧邊에 있는 핵시설물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사찰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

16) 북한 외교부성명(1991.5.27)

核관련 資料들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인 人權委員會로부터 북한에서의 인권조사활동을 요청받는 등 人權問題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결과, 부담되는 문제도 있으나 그 대신 북한이 國際社會에서 고립을 모면하고 각종 유엔기구 및 정부간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對外協力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북한이 가입한 國際機構는 다음과 같다.

유엔의 傘下機構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이며 유엔專門機構로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만국우편연합(UP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11개 기구이고 政府間 機構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등 10개 기구이다.

<표5> 南北韓의 國際機構 加入 現況 比較

(1992. 12. 현재)

	유엔 산하기구	유엔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계
한국	2	16	36	54
북한	1	11	10	22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1992. 12), p. 428.

4. 主要 對象別 外交實態

가. 對中·러시아 關係

北韓은 政權形成 이래 중국과 소련의 비호 아래 정권을 유지하

면서 대외협력을 모색해 왔다.

이른바, 북한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명목으로 國家間的 외교 못지않게 黨對黨의 외교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血盟의 관계’니 ‘兄弟黨間的 관계’니 하면서 協力關係를 긴밀하게 했다. 이러한 관계는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1980년 10월, 勞動黨 제6차대회에서 金日成은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對共產陣營外交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이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로선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제6차 당대회에서 改正한 이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勞動黨規約(前文)에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두나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항상 變化했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 中·蘇간의 대결이 심화될 당시에는 이른바 ‘自主路線’이라고 표방하면서 等距離外交를 전개했고, 舊소련에 대해서는 經濟·軍事分野의 실리를 추구하고, 中國에는 外交·軍事的 실리를 추구했다. 특히, 북한은 上記와 같은 等距離外交를 전개하면서도 군사분야에서는 이들 두나라와 密着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초, 韓·美關係가 긴밀화하고 쿠바의 공산화로 美·蘇간의 냉전이 高潮되자 북한은 1961년 金日成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 6일에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締結했다. 이것이 북한을 지탱시키면서 한국과 아시아의 平和를 위협해 온 북한의 對外軍事同盟體制이다.

그후, 1960년대 중반 북한은 중국의 文化革命을 못마땅히 여기

면서 중국과는 소원해졌으나 오히려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민무장화, 전군현대화’ 등 이른바 「4大 軍事路線」을 강화하면서 對蘇 軍事依存度を 높였다.

1970년대에는 美·中關係改善, 美·蘇데탕트 등 국제관계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북한의 對中·蘇關係는 외교, 경제 중심의 等距離外交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의 改革·開放化政策이 공산권을 와해시킴으로써 북한의 對中·蘇關係는 급변했다. 對蘇關係에서는 1990년 9월 30일 韓·蘇修交로 인하여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북한은 1990년 9월 30일 韓·蘇修交가 발표된 이후 5일 만에 勞動黨 機關紙 노동신문을 통해 소련을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1990년 10월 5일 노동신문은 ‘달리로 팔고 사는 외교’라는 題下의 논평 기사를 게재, “이를 배신이라는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하면서 “분렬의 책임”을 아울러 추궁했다. 소련 역시 북한에 대해 종래 취해 왔던 貿易去來의 방식, 즉 ‘友好價格’ 형식을 지양하고 국제시세에 따라 硬貨決濟方式을 취하자고 제의하는 등 對北關係의 변화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특히, 소련이 북한에 공급해 왔던 原油, 食糧 등을 감축하면서 한국과의 經濟協力을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시함에 따라,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소련의 聯邦體制가 붕괴되고, 소련의 正統性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가 民主主義를 지향하여 공산당을 不法化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치·경제분야에 이어 군사분야에서도 소원하게 되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 1961년 7월에 소련과 체결한 ‘相互軍事同盟’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미 러시아의 대통령 엘친은 1992년 11월 서울을 방문하면서 對北韓 軍事同盟條約 가운데 북한을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으로 무조건, 즉각 지원한다.”는 등의 조항이 再調整되어야 함을 피력한 바 있음은 물론, 오히려

한·러간에 새로운 軍事的 紐帶를 맺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의 對러시아관계는 새로운 양상으로 再定立되어야 할 단계이며 이를 反證하듯 지난 1992년 1년간 雙方간에는 고위급인물이 상호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북한의 對中國關係에서도 많은 변화현상이 나타났다. 1992년 8월 24일을 기해 韓·中間 國交가 수립됨에 따라 韓半島를 위협했던 주변 상황, 즉 冷戰體制가 개선되었다.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거론할 때는 항상 한반도의 冷戰體制와 軍事的 緊張·對決問題를 거론했고 한국의 對北軍事威脅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 선전했다.

이제 韓·中修交에 이어 韓·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 중국의 對韓半島 政策의 비중이 북한보다 남한에 더 가중되고 있다. 1991년도 韓·中間 貿易去來의 총액은 무려 58억불 상당에 이르렀고 1992년도에는 약 90억불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다.¹⁷⁾ 특히 중국은 현재 제8차 5개년계획(1991년~1995년)을 추진하는 중이며 여기서 한국과의 經濟協力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이 한계에 이르렀다.

韓·中修交의 의미를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半島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이다. 중국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한·중수교는 동북아지역에 잔존한 冷戰體制를 종식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즉, 韓·中修交는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關係改善를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南과 北을 軸으로 구축되었던 美·日과 中·蘇關係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그 대신 南·北韓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관계가 태동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¹⁸⁾

17) 대한무역진흥공사 보고자료, “'93년 대북방교역 전망”(동아일보 '93.1.6.字)

18) 柳錫烈, “한·중수교 이후 개방 불가피해진 북한”, 「통일한국」(1992.11), p. 45.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韓·中修交와 관련, 북한의 입장과 반응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 軍事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식량을 공급받는 등 對中國 경제관계가 북한의 對外經濟協力에 많은 비중을 갖는다. 또 중국은 北韓政權이 형성된 직후인 1948년 10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북한을 承認했고, 이어서 6·25 南侵을 지원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1971년 이후, UN에서 북한을 지지 성원했고 非同盟圈 外交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 중국은 한국과 수교하면서 經濟協力關係를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中國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 남아 있는 이웃 中國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의 對韓國關係를 더이상 자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 ‘革命的 同志’나 ‘社會主義 兄弟’나 하면서 이념적인 유대관계라도 지속하려 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韓·中修交 이래 12월 현재까지 직접적인 對中國 비난 반응을 삼가하고 간접적인 비난 반응을 보일 뿐이다. 북한은 韓·中修交 직후 중국 관광객의 북한방문을 금지했고 압록강 일대의 國境地域에서 세관검사,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에 대한 思想 및 成分審査를 강화했다.¹⁹⁾

韓·中修交는 비록 한반도의 冷戰體制를 해소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하나 북한의 開放을 촉진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중국은 韓·中修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맺은 相互軍事同盟關係를 수정하는 데에 소극적이다. 중국의 총리 李鵬은 1992년 10월 1일, “對北友好協力關係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했고, 북한 역

19) 유석렬, 같은 책, p.46.

시 1992년 10월 19일 江澤民 中國共產黨 총서기에게 보낸 축하 電文을 통해서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 친선 단결이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으며 同年 10월 10일 노동당 中央委員會의 명의로 보낸 祝電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중국공산당과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나갈 것이며 반제 공동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조·중친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강화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은 對中國關係에서 이념적인 紐帶關係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한국 등 외부의 開放壓力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對美·日關係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기대하고 남북한간의 對話와 交流問題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며, 서방 선진국의 技術導入이나 對西方 情報·資料 입수에도 중국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나. 對東歐 關係

북한의 對東歐關係는 對蘇關係와 맞물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東歐諸國은 소련의 영향력 속에서 소련과 함께 運命을 같이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북한과의 관계 역시 소련의 對北韓政策과 같이해 왔다.

(1) 東歐關係의 變遷過程

북한은 과거 中·蘇紛爭 이전까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東歐에 접근했고, 6·25남침 이후 戰後 復舊期間에는 소련과 함께 東歐 各國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관계가 긴밀했다.

그러나 中·蘇紛爭과 중국의 文化革命 등이 심화된 1960년대에는 북한의 對中·蘇 등거리외교로 인하여 對東歐關係 역시 소원한 상

태로 되었다. 그후, 1970년대 초 동서대탕트 무드가 조성되고 비동맹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對東歐關係도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對東歐關係에서 非同盟運動의 선두주자인 유고와 접근했다. 유고의 티토는 非同盟 中立路線을 제시했고, 북한은 이를 그들의 소위 ‘自主路線’과 연관시켰다. 이같은 상호 유사점을 찾아 북한의 對유고 접근이 본격화되었다. 유고와 함께 獨自路線을 표방한 루마니아에게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북한은 그들의 대외활동, 특히 對東歐 頂上級外交를 강화했다.

1972년 2월 28일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북한은 外交部長 許鎭을 단장으로 하는 特使를 소련, 루마니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을 차례로 순방하게 함으로써 東歐圈의 對北關係 강화를 유도했다.

그뿐 아니라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등 인도지나 반도의 3국(월남, 크메르, 라오스)이 共產化됨으로써 共產陣營의 세력이 국제사회에서 加一層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은 對外關係를 더욱 확대, 이른바 한반도의 赤化에 好機를 만난 듯이 생각하고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하려 했다. 북한 金日成은 1975년 중국을 방문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을 것은 통일이다.”라고 豪言하기도 했다. 金日成은 이 당시 중국 방문을 필두로 東歐諸國을 순방했다. 金日成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등을 방문하고, 經濟協定을 체결하는 등 對東歐關係 강화에 주력했다. 루마니아와는 長期貿易協定(1976~1980년) 체결, 불가리아와는 10년간 經濟 및 科學技術協助 議定書(1976~1985년) 조인, 유고와는 相互經濟協同委員會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어서 1984년 5월 金日成은 10년만에 다시 東歐 各國을 순방하고 경제·과학분야의 협력을 도모하려 했다. 이 당시 金日成은 소련을 먼저 방문한 다음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국을 巡訪했다. 특히 북한은 이 때에 동독

및 불가리아와는 「상호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이른바 社會主義的 協力關係를 강화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東歐 各國들이 개혁·개방화함으로써 東歐의 사회주의 동맹체제가 와해되었다.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東歐共產圈의 자유화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증대되었으며, 1989년 2월 헝가리를 필두로 東歐 各國들이 한국과 수교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1989년 12월 25일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처형됨에 따라 東歐諸國의 反獨裁民主化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對東歐關係는 긴장된 가운데 급격히 위축되었다. 북한은 헝가리가 한국과 修交(1989. 2. 1)한 다음날인 2월 2일, 外交覺書와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記者會見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헝가리를 격렬히 비난했다.

同覺書에서 “우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소식이다… 이와 관련,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사급 외교를 대리 대사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한다. 전통적 친선관계에서 생긴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웅그리아(헝가리)측에 있다.”라고 했다.

同記者會見에서는 “웅그리아(헝가리)가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나라라면 어떻게 감히 미제 식민지인 남조선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는 웅그리아가 사회주의 원칙에서 멀리 이탈하였으며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미제의 교차승인, 두개조선조작 책동에 합세…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딸라주머니에 현혹되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배신행위이다.” 라고 비방했다.

그 후에도 북한은 폴란드, 체코 등 各國이 한국과 수교할 때마

다 外交關係를 격하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東歐 各國이 西歐의 일원으로 변화된 가운데, 북한의 對東歐關係의 외교적 성격은 1980년대 말을 기해 國際共產主義運動關係에서 탈피하고 1990년부터 서구 민주국가와 같은 순수한 외교적 성격으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 對東歐 關係 現況

오늘날 북한의 東歐 各國에 대한 外交關係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東歐圈 各國들의 남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여 북한보다 한국과의 經濟協力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구권 인사들은 當面 南北韓間의 쟁점이 되고 있는 核相互査察問題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다. 1992년 6월 國際原子力機構 理事會의 이사국인 폴란드 대표는 북한의 核疑感에 대해 서방측 대표들보다 더욱 격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이들 東歐 各國들은 북한주재 公館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대사관을 폐쇄했고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은 평양주재 대사를 代理級 大使로 격하시켰으며 폴란드는 아예 지난 1990년 3월 이후 1991년 4월까지 대사를 任命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各國들은 평양주재 公館의 무관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즉, 헝가리는 1990년 10월, 체코는 1991년 8월에 각각 武官들을 철수시켰다.

이들 東歐 各國들은 對北韓 貿易去來에서 과거와 같은 소위 ‘友好價格’ 제도를 兌換性이 있는 달러 등 硬貨決濟方式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서 1991년 7월 폴란드의 商務官이 철수한 바 있고, 체코도 商務官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물론 북한과 이들 東歐 各國들과의 貿易去來 역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북한 역시 東歐 各國에 주재하는 公館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헝가리 주재 대사를 代理級 大使로 격하시킨데 이어, 체코가 199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後任 大使를 보냈다는 보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주재 대사관의 規模를 축소시켰다. 특히, 북한은 이들 국가에 대한 불만 表示로 그들이 스스로 추천하여 파견된 軍事停戰委員會 中立國監督委員 중 폴란드, 체코에 소속된 監督官을 철수시키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東歐圈에 대한 外交關係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폐쇄 또는 축소(겸임)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東歐諸國들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틈타, 소위 ‘혁명적 사회주의정당’²⁰⁾을 건설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宣傳, 煽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록 東歐圈에 산재한 公館을 축소한다 해도 대신 민간 차원의 政治宣傳媒體인 이른바 주체사상연구소 및 각종 친선조직들을 부식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對非同盟圈 關係

북한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非同盟圈에 대한 外交活動을 중요시했다. 이른바 ‘블록불가담운동’이라는 명칭으로 第3世界外交를 강화하였으며,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시 正會員國으로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이 제3세계 외교 즉, 블록불가담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이유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外交의 立地를 강화하고 한국을 고립, 약화시킴으로써 南北韓問題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항상 표방하는 구호인 ‘反帝·

20)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발표 논문) 및 노동신문 논설(‘92.11.25.字) 참조.

<표6> 歷代 非同盟頂上會議와 韓國關係 決議案

회의 구분	년 월 일	한국관계 결의안 채택
제4차회의	1973. 9. 5.~9. 9.	○ 한국관계 결의안 채택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 주한미군 철수 등
제5차회의	1976. 8. 16.~8. 19.	○ 한국관계 결의안 채택 - 주한미군 철수 - UNC 해체 등
제6차회의	1979. 9. 3.~9. 9.	○ 上 同
제7차회의	1983. 3. 7.~3. 12.	○ 주한미군 철수 희망
제8차회의	1986. 9. 1.~9. 7.	○ 88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채택
제9차회의	1989. 9. 4.~9. 8.	○ 없음
제10차회의	1992. 9. 1.~9. 6.	○ 없음

反美 共同戰線'을 구축하자고 선전하면서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수적으로 많은 비동맹 각국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남북간 표대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한반도의 南北問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聯邦制 統一方案이나 駐韓美軍撤收 등의 선전효과를 강화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²¹⁾ (<표6> 참조)

북한의 對非同盟圈 접근요령은 ①평화공존 ②反帝·反植民地 민족해방투쟁 지원 ③국제공산주의 선전기구 가입 ④민간외교 ⑤문화·경제교류(南南協助) 등을 표방하고 각종 회의를 유치하는 등 非同盟運動에 앞장서는 방식이다.

북한이 對非同盟外交를 전개해 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55년 반등에서 非同盟會議가 처음 개최되자 그 이듬해

21) 노동신문(1974.8.11.字)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제1세력이 제3세계국가들이라고 규정했다.

인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대회를 통해 ‘反帝自主’를 거론하고 非同盟運動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노동당 외곽에 對外文化連絡委員會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非同盟圈에 대해 민간외교 형식으로 문화·친선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후 1961년 9월 勞動黨 제4차 대회에서 非同盟圈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시도했다. 非同盟圈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뒤쫓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 접근하였고 1966년부터는 중국의 文化革命運動이 북한을 위협하고 나오자 다시 소련으로 接近하면서 소련의 影響力이 미치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에게 접근했다.

그후 1970년대에 유엔에서 남북한간의 票對決을 의식하여 숫자 면에서 우세한 非同盟圈 各國들과 적극 접촉하였다. 그 결과 1975년 8월 非同盟外相會議(리마)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때부터 한반도문제를 非同盟會議에서 거론하고 북한의 입장을 宣傳하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宣傳活動을 본격화해 왔다.

특히 1978년부터는 북한이 非同盟會議 때마다 勞動黨 중앙위원회와 政權機關의 중앙인민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舉國的이고 總力的으로 非同盟會議에 대처하기 위한 黨의 方針을 미리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經濟實利追求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非同盟圈의 내부에서 經濟를 理念에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한의 입장은 오히려 強硬一邊倒로 나왔다. 즉, 북한은 非同盟運動을 ‘反帝 自主路線’으로 결속시키려 했다.²²⁾ 그러나 1989년 9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제9차 非同盟頂上會議에서는 韓半島問題와 관련한 북한의 제안이 上程되지도 못하는 등

22) 당·정 연석회의 결정('79.7.18) 및 제6차 비동맹정상회의('79.9.6)시 이종욱 연설('79.7.19.노동신문) 등 참조.

非同盟會議에서 북한의 反韓的 宣傳活動은 냉대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어 1992년 9월 1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非同盟頂上會議에서도 북한의 反韓宣傳은 묵살되었다. 즉, 이 회의에 북한은 당시 政務院 총리인 延亨默을 참석시켰고 同 外務長官會議에는 외교부장인 金永南을 참석시키는 등 총력을 경주했지만 그 성과는 없었다.

金日成은 1992년 9월 1일 同會議를 겨냥, 인도네시아 신문사의 書面質疑에 대한 答辯形式으로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빨럭불가담운동을 이 운동의 근본 리념과 원칙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또 延亨默은 9월 2일 同會議에서 反帝鬭爭을 거론하면서 政治的 結束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선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한국을 비방하는 決議案을 제출하지도 못하는 등 북한의 立地는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對非同盟外交에 한계가 노정된 것은 바로 國際情勢의 변화와 한국의 국제적 地位와 役割이 강화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80년대 말을 기해 東歐 共產圈이 와해되고 東·西冷戰體制가 새로운 協力體制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東·西冷戰體制下에서 형성된 非同盟運動은 이제 그 본래의 명분인 理念問題가 희석됨으로써 이념보다는 經濟的 協力이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非同盟運動의 對內外的 상황변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이데올로기와 ‘反帝 民族解放鬭爭’ 등 冷戰時代의 유물이 용납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함께 북한의 非同盟圈에서의 立地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趨勢로 되었다.

라. 對西方 關係

(1) 對西方 接近過程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對西方外交의 기반이 없었다.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東·西冷戰構造에 의하여 對共產圈外交 중심으로 對外關係를 맺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美·中關係 정상화 등 東·西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의 對西方關係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같은 國際情勢 변화의 흐름에 따라 對西方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 1971년 11월 勞動黨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면한 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는 등 對西方 經濟外交를 시도했다. 북한은 초기 對西方 접근방식으로 민간차원의 外交形式을 취했다. 개별인사를 招請, 訪問하게 하면서 민간차원의 貿易代表部를 準政府 차원으로 설치, 활용했다.

북한의 對西方外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美國이나 日本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있었다. 이같은 북한의 對美·日接近은 바로 한반도문제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對韓國과의 유대를 차단시키기 위한 攪亂戰術이며 북한의 對美·日 經濟協力을 위한 經濟實利外交였다.

북한의 對美·日 관계개선 노력은 1990년대 東·西冷戰體制가 붕괴됨에 따라 적극 전개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초 한국이 러시아(舊소련)와 수교(1990. 9. 30)하고 중국과 수교(1992. 8. 24)함에 따라 더욱 적극화되었다.

(2) 對美 關係

북한은 1974년부터 停戰協定을 美·北韓間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對美 직접협상을 試圖했다. 그후 북한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을 자행, 국제적 고립을 自招하면서 이를 완

화하기 위해 1984년 초부터 南韓을 포함한 美·北韓의 三者會談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3국을 動員하는 등 적극적인 對美 접근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미국의 對極東戰略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한의 暴力體制와 그 革命路線을 견제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의 宣傳手段에 미국이 설득될 수 없었고 북한의 對美接近은 진전될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6·25참전 美軍의 遺骸送還과 관련하여 公式接觸이 시작되었다. 1988년 12월 6일부터 1992년 12월까지 雙方간 참사관급 대표가 중국 북경에서 28회에 걸쳐 만났고, 미군 遺骸送還問題를 名分으로 공식 접촉한 이래 지금까지 協商의 수준을 높이고 接觸案件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의 참사관급 접촉에 이어 同年 6월 22일에는 릴리 국방차관보가 북한의 허종 유엔 副대사와 전격 會同하는 등 회담의 수준을 格上시켰다.

북한과 미국간의 처음 접촉은 6·25참전 美軍遺骸의 送還이 主議題였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핵사찰문제, 인권문제, 폭력혁명노선문제, 韓·美군사훈련문제, 주한미군문제, 美·北韓간 평화협정체결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북한의 對美 접근자세는 1992년에 와서 더욱 積極化하고 있다. 金日成은 同年 4월 14일 워싱턴 타임스紙와의 會見을 통해 “우리나라 인민과 미국 인민 사이에 봄이 왔다...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조속한 對美關係改善을 촉구했다. 그뿐 아니라 同年 3월 17일 북경에서 美·北韓 사이의 外交官 접촉과정을 통해 북한의 黨 國際部長(現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金容淳은 IAEA의 核査察을 수락하면서 對美關係 개선을 촉구하는 公式書翰을 미국의 캔터(A.Kanter) 국무부 차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對美姿勢는 미국측이 요구하

는 실질적인 條件들을 수용하지 못한 나머지 그 實効性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對美僞裝平和戰術만 노출되고 말았다. 미국측은 1992년 1월 22일 캔터 차관이 북한의 당 국제부장 金容淳에게 다음과 같은 接觸條件을 제시했다. 즉, ①북한의 핵문제 해결 ②남북대화 진전 ③테러리즘 포기 ④비방 중지 ⑤ 6·25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 5가지였다.

한편 북한은 1992년 초부터 對美 비난자세를 적극 緩和하면서 각종 人的·物的交流을 시도했다. 특히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했던 이른바 ‘반미 공동 월간 행사’를 하지 않았고 對美 비난 선전을 自制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南北韓 相互査察을 수락해야 한다는 미국 등 國際輿論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韓·美 軍事訓練을 비난하는 등 對美 強硬姿勢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對美 강경자세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加重되는 국제적 압력에 의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對美關係 개선에는 아직도 북한의 暴力革命路線 拋棄, 人權實相公開 및 解決, 南北韓間 합의사항의 이행·실천 등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바,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對日 關係

북한은 이미 1971년부터 對日關係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對日 接近政策을 전개해 왔다. 1971년 11월 이른바 「조·일 우호촉진 의원연맹」을 발족시키고 일본의 親北人事들을 초청하는 등 민간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는 이른바 ‘交叉承認’ 및 ‘두개의 朝鮮 操作’을 반대한다는 원칙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지는 않았으나 在日朝總聯을 보호하고 조총련의 방북을 자유롭게 지원하

는 한편, 조총련을 통한 反韓活動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東歐 共產圈이 붕괴되고 東·西 冷戰構造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國際協力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90년대 초 한국의 對러시아 수교 및 對中國 수교가 실현되면서 한반도의 冷戰構造가 개선되고 힘의 균형이 변함에 따라 북한의 對日修交問題가 북한의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이와 관련,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 30일부터 1992년 11월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修交會談을 개최했다.

북한·일본간의 수교회담의 배경과 推進經過는 다음과 같다.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 사이 自民黨의 가네마루 신(金丸信)과 社會黨의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등 兩黨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勞動黨과 회동한 다음 쌍방간 수교회담을 전제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共同宣言을 발표했다. 그후 3차례에 걸친 豫備接觸을 마치고 1991년 1월 30일부터 修交本會談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이 회담의 議題로는 ①북한의 관할권(영역)문제 ②일본의 배상문제 ③북한의 핵문제 ④在日 朝總聯의 법적 지위와 北送된 일본인 妻문제 등 4가지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管轄權問題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軍事分界線의 이북지역에 국한됨을 의미하며 이는 同時에 북한의 ‘하나의 조선’ 논리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극히 現實적이고 妥當한 나머지 7차회담에서 이미 북측이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核問題 등 3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雙方間 協商을 모색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對日關係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교 이전이라도 對日經濟協力을 적극 모색하려 하고 있다. 1991년 8월 11일 일본 東京에 대규모 貿易事務所를 개설하려 했으며 또 자체적으로도 外國人投資法과 이와 관련한 사안별 법률로 外國人企業法, 合作法, 合營法 등을 제정했다. 따라서 북한의 對日關係는

핵문제 등 修交會談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對日 민간급의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對外政策 展望

북한은 향후의 國際情勢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國際關係가 새로운 질서재편 과정에서 분야별, 권역별로 마찰이 심화되고 強大國과 強大國, 先進國과 後進國간의 대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비록 共產圈이 붕괴되었다고 하나 舊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 잔존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共產主義勢力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社會主義路線을 견지하면서 이들과의 紐帶關係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經濟實利追求, 貿易摩擦 등의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제3세계 즉, 非同盟圈과의 結束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며 對非同盟 自主路線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體制를 유지하고 經濟問題를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힘의 均衡이 파괴된 상태에서 체제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외교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1992년 4월 9일 憲法을 개정, 외국인에 대한 북한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對西方諸國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정책적 기본방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고, 1992년 10월에는 대외경제협력을 위해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 11일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4차회의에서 政務院 총리 등 경제계 실무진들을 경제전문가 내지 개혁인물들로

대쪽 교체하였는데, 政務院 總理에는 지난 1986년에 총리에서 경질된 바 있는 姜成山이 재기용됐고, 국가계획위원장은 對外經濟協力分野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1992년 8월에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기업들을 참관한 바 있는 金達玄을 기용하는 등 경제개혁의 실무진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對西方先進國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리라는 것을 예견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對外資本·技術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진국들과 國交關係를 확대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韓半島問題에서 힘의 均衡을 이루어 한국이 일방적인 主導權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總力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對美·日 修交問題도 북한의 대내 개방화의 영향이 극소화되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문제에서는 投資·技術協力 위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북한의 對外政策은 기존의 사회주의노선과 경제실리추구의 교에 비중을 안배하면서 體制를 유지하고 經濟開發을 시도하겠지만, 이같은 양면적인 對外政策은 오히려 북한의 전면적인 開放과 改革을 촉진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VII 北韓의 軍事

教授 姜 道 遠

1. 序 言	241
2. 「人民軍」의 形成과 性格	242
가. 形成過程	242
나. 軍의 性格.....	245
3. 軍事政策 및 戰略	247
가. 軍事政策	247
나. 軍事戰略.....	252
4. 軍事組織·制度	254
가. 軍事機構.....	254
나. 黨·軍關係	256
다. 軍服務 및 階級構造.....	258
5. 軍事能力	261
가. 常備戰力.....	261
나. 豫備戰力.....	267
다. 核 및 化生戰 能力	269
6. 結 言	271

1. 序 言

오늘날 國際情勢의 전반적인 흐름은 반세기 동안의 冷戰時代에 종말을 고하고 脫冷戰時代로 불리는 새로운 國際秩序를 형성하면서 平和共存과 共同安保를 추구하는 平和指向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韓半島 情勢도 이러한 脫冷戰 潮流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1991년 9월 남북한이 UN에 同時加入한 이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이에 따른 3개 분야별 부속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冷戰의 벽을 허물고 바야흐로 和解·協力時代의 開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1992년 후반 적발된 南韓 朝鮮勞動黨 間諜團 事件에서도 드러났듯이 對南赤化革命路線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한 經濟難 속에서도 核開發과 함께 MiG-21기의 自體生産 및 사정거리 1,000km의 스킨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격적인 最新銳 軍備增強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미 남북한간에 채택·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共同宣言」에 따른 성역없는 남북한 相互核査察을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核武器開發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거 同族相殘의 비극까지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軍事問題와 관련한 관심의 초점은 그들의 再侵能力 및 意志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本教材에서는 이러한 면에 主眼點을 두고 북한의 軍事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2. 「人民軍」의 形成과 性格

가. 形成過程

북한의 군, 소위 「朝鮮人民軍」(이하 「人民軍」)의 創軍作業은 8·15해방 直後부터 이른바 ‘建黨·建軍·建國’이라는 3대과제 중의 하나로 당시 북한주둔 蘇聯軍의 지도아래 추진되었다.

1945년 8월 24일 平壤에 진주한 소련군 第25軍司令部(北韓駐屯司令部)는 당시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日本軍을 무장해제하고, 그해 10월 약 2,000명 규모의 北韓靑年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본군으로부터 接收한 무기로 무장시켜 「保安隊」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었다. 1945년 10월 21일 發足한 이 保安隊가 바로 북한에 생겨난 최초의 軍事組織으로 오늘날 「人民軍」의 母體가 되었다.¹⁾

한편, 이듬해 1월 소련은 스탈린 명의의 覺書를 북한에 보내 金日成으로 하여금 「北朝鮮委員會」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軍事力 건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督勵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과 6월 북한은 훗날 第1 및 第2軍官學校(사관학교)로 개편된 「平壤學院」과 「保安幹部學校」를 설치하고, 6·25전쟁시 인민군의 高級將領들인 金策, 金一, 吳白龍, 金武亭 등

1) 8·15光復 직후 「治安隊」, 「自衛隊」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한 武裝隊였으며, 1945년 10월 12일자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다음과 같은 성명발표로 해산되었다.

- 성 명 요 지 -

- 북한지역 내의 모든 무장조직·단체를 해산한다.
- 일본군이 소지한 모든 무기, 탄약, 군수물자를 소련군사령부에 반납한다.
- 各道の 臨時人民委員會는 소련군사령부와 협의하에 규정된 인원수의 保安隊를 조직한다.

을 교관 및 간부요원으로 앉혀, 軍의 初級軍官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북한의 각 지역에 조직된 保安隊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을 統合·指導하기 위한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평양에 설치하고, 1947년 5월에는 이를 母體로 하여 「人民集團軍 總司令部」라는 것을 發足시켜 종전의 보안대를 正規軍隊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軍官 및 下戰士들의 직제도 正規軍에 준하는 계급구조로 변경시켰다.²⁾ 그리고 그해부터 소련의 軍事援助를 받아 新型武器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4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內에 「民族保衛局」을 신설, 創軍準備를 완료해 놓은 북한은 同年 2월 8일자로 「人民軍 總司令部」를 설치, 3개의 정규 전투사단을 구성하고 「人民集團軍」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함으로써 정규군으로의 創軍을 公表하였다.

한편 海軍은 1946년 7월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창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1946년 12월 水上保安隊를 「海岸警備隊」로 개칭함과 동시에 元山과 南浦의 水上保安隊를 「警備衛戍司令部」로 개칭하고 淸津에 「衛戍司令部」를 신설하였다.

1947년 6월에는 元山에 「海岸警備隊 幹部學校」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海軍軍官學校」가 되었다. 그후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으로 해안경비대가 「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면서 북한의 海軍이 되었다.

空軍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新義州航空隊」가 母體로서,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新義州航空隊 출신 약 300명을 중심으로 「飛行隊」를 창설하고, 이를 1948년

2) 喪名五, “‘조선인민군’의 特性과 役割”, 「한국논단」(1990, 10월호) pp.44-45 참조.

인민군 창설과 함께 航空聯隊로 증편함으로써 正規軍으로 발전하였다.³⁾

이상과 같은 人民軍의 形成過程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人民軍은 평양주둔 蘇聯軍司令部의 지도하에 창군되었다는 점이다. 1948년 12월 말 蘇聯軍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북한의 人民軍은 소련군의 지도하에 조직·훈련됨으로써 인민군의 制度, 戰略 및 運營指針 등이 모두 소련군의 軍事思想과 軍事制度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약 1만명의 北韓人들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소련에서 軍事訓練을 받았고 약 3천명으로 추산되는 소련의 軍事顧問官과 技術者들이 1950년 6월 이전까지 人民軍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⁴⁾

둘째, 人民軍이 북한정권 수립(1948. 9. 9)보다 7개월이나 앞서 創設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國家보다 軍隊가 먼저 발족되었다는 奇現象이다. 인민군의 母體인 保安隊가 소련군 제25군사령부의 지도밑에 創設된 것이 1945년 10월이며, 「朝鮮人民軍」 창설이 공식적으로 宣布된 것이 1948년 2월 8일이다.

北韓政權보다 軍이 먼저 형성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를 위성화하려는 스탈린의 東南進政策과 김일성의 對南赤化企圖를 반증해 주는 것으로,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와 김일성은 북한지역에 人民軍을 독자적으로 우선 창군함으로써 單獨政府樹立 및 武力南侵企圖를 잠재화시킨 채 다만 북한의 政權樹立만을 大韓民國 政府樹立 이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3) 平和統一研究所 編, 「북한개요」(서울:1986. 12), pp.214-216.

4) 柳仁澤, “북한의 군사”, 「민주통일론:북한실태」(통일연수원, 1989. 2), p. 202.

셋째, 북한은 지난 1977년까지 2월 8일을 創軍日로 정해 기념해 오다가 1978년 이후부터는 金日成이 1932년 「抗日遊擊隊」를 創設했다고 주장하는 4월 25일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人民軍 창건일을 변경한 것은 인민군의 起源을 이른바 ‘抗日빨치산 鬪爭傳統’과 연결시켜 그 正統性을 찾으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⁵⁾, 이는 오늘날 北韓軍部가 非正規戰戰略을 중시하고 있는 軍事戰略概念과도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나. 軍의 性格

북한의 軍은 그들 스스로 勞動黨規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 ‘首領의 軍隊’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勞動黨規約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못박음으로써 人民軍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에서는 軍隊內 각급 단위에 黨組織을 구성하며, 黨中央委員會 직속기관인 軍黨委員會가 이들을 관장하여 사업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軍은 黨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黨의 指導와 指示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金日成은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군은 오로지 黨의 지도하에서만 불패의 혁명전력으로 강화·발전할 수 있으며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勞動黨規約 제48조에서는 “인민군대내 黨원들과 군인들은 黨과 수령,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군이 金日成의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金日成의 軍隊’(首領의 軍隊)임을 明文으로 규정해 놓고

5) 尹柄益, 「북한의 군사실태」(통일연수원, 1987. 7), pp.6-7.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黨的·革命的 軍隊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인민군 성격은 군간부들의 軍創建紀念大會에서의 報告나 각종 간행물 및 언론들의 論說 등에서도 누누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 4월 25일 북한 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題下의 군창건 58주년 紀念論說에서 “당의 의도가 신속 정확히 침투되고 전군이 숨을 쉬어도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자랑찬 면모”라고 하면서 “당의 명령 집행을 위한 지휘체계는 오직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軍經歷이 전혀 없는 金正日을 軍最高司令官(1991. 12. 24) 및 元帥(1992. 4. 20)로 추대한 이후, 그를 ‘軍事의 英才·英將’ 등의 수사로 치켜세우고 ‘黨·國家·軍隊의 首位’로 호칭하면서 북한의 군을 ‘金正日の 軍隊’로 사병화하는 등식을 표방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 1일부터 3일간 李鍾玉 副主席, 延亨默 당시 政務院總理 등을 비롯한 黨·政 고위인물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한 「全國主體思想 討論會」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표한 金日成 80회 생일 ‘祝賀文’과 ‘報告文’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북한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자.”고 다짐하는 한편, 김정일을 ‘黨·國家·軍隊의 首位’로 호칭하는 ‘김정일에 대한 盟誓文’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언론들도 金正日을 ‘인민군의 자애로운 아버지’라며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일)의 전사로 된 것을 커다란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효자로 살며 투쟁할 각오에 불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민군은 자기의 위대한 창건자인 경애하는 수령의 군대이

며 당의 위대한 영도자인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대”라고 주장하였다.⁶⁾

북한의 모든 역사를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革命歷史’로 미화, 조작하고 軍創建日까지도 金日成의 ‘革命神話’와 연관지어 ‘인민군은 곧 수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라는 等式을 合理化시켜 온 북한이 이러한 前轍을 답습, 인민군의 성격을 ‘金日成의 군대’에서 ‘金日成·金正日의 군대’를 거쳐 ‘金正日의 군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黨의 군대, 革命的 군대, 首領의 군대로서의 人民軍의 성격은 軍事制度나 軍事政策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 軍事政策 및 戰略

가. 軍事政策

(1) 國防自衛政策

北韓이 196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추구하고 있는 軍事政策은 한마디로 國防自衛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쿠바사태에서 소련의 무능과 中·印國境紛爭에서 中·蘇紛爭으로 이어지는 공산권의 분열을 목도한 북한은 1962년 12월 黨中央委員會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造成된 情勢와 관련된 國防力 강화문제’를 토론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

6) 노동신문(1992.4.25. 및 4.27.字).

이에 앞서 인민무력부장 吳振宇는 노동신문('92.1.27) 게재 記名論說을 통하여 김정일을 ‘黨의 首位’로 표현한 바 있으며, 지난 1992.9.4.~5. 平壤 「2·8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軍 모법전투원대회」에서 軍總參謀長 崔光은 “모든 군인들을 수령과 최고사령관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충신, 효자로 키워야 한다.”고 언급.

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原則을 결의하였다.

중전의 中·蘇 依存政策으로부터 북한이 自衛政策으로 군사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은 中·蘇 對立過程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소련의 援助中斷이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中·蘇 대립속에서 북한이 親中國의인 외교정책을 취하자 소련은 북한에 대한 軍事와 經濟援助의 중지 및 삭감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부득이 自衛政策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원칙에 따라 북한은 그후 軍事費를 대폭 증액시켜, 우선적으로 3개월간의 전쟁지속을 감당할 彈藥, 油類 및 食糧을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무기의 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전의 中·蘇 軍事敎理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地形的 특수성과 6·25전쟁의 敎訓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軍事敎理의 개발도 시도하였다.

「金日成主義 原理」 제8장 ‘자위적 국방건설’에는 自衛路線의 본질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自衛政策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4大軍事路線’으로 표명되어 왔는데, 지난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改正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헌법(이하 新헌법)에서는 ‘國防’이라는 별도의 章을 基本權 條項 앞에 신설하고, ‘全民武裝化’, ‘全國要塞化’, ‘全軍幹部化’, ‘全軍現代化’라고 하는 4大軍事路線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하였다.⁷⁾

7) 북한 新헌법 제58조 및 제60조 참조.

(2) 4大軍事路線

(가) 全民武裝化

‘全民武裝化’란, 말 그대로 북한의 全住民(남녀노소 불문)을 무장화하여 兵員으로서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共產主義革命이란 노동계급을 革命軍化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大衆軍思想이 기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른바 無產階級 全員을 공산주의혁명의 전투요원화함으로써 階級的 敵과 투쟁하도록 하고, 全住民의 사상무장과 전투기술 수준을 높여 金日成·金正日 獨裁의 안정을 기하며, 戰爭時에는 정규군에 편입시켜 전선과 후방지역 및 직장단위 방어와 게릴라전에 動員하려 하고 있다.⁸⁾

북한은 6·25南侵 당시 民兵組織과 같은 豫備軍을 보유하지 못해 병력보충이 어려웠다는 점과 지역단위의 防禦體制가 없었기 때문에 後方을 死守하려는 주민들의 戰意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무질서한 後退가 불가피했었다는 점을 敗因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敗因分析에 따라 북한은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全民武裝化를 추진해 왔는데, 1970년 11월 第5次 黨大會 總和報告에서 김일성은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 어떠한 원수라도 능히 타승(打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全人民의 武裝化路線은 공세시에 正規兵力의 보충을 기하며 수세시에는 非正規軍要員으로 활용할 수 있는 機動性을 갖고 있어 북한은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을 戰鬥兵力化하는 多兵力主義를 고수하고 있다.

8) 國際問題研究所 編, 「방위연감」(서울:1990.10), p.172.

(나) 全國要塞化

‘全國要塞化’란 북한의 全地域을 戰場化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先制攻擊을 감행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때, 攻擊과 防禦의 완벽을 기하려는 전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⁹⁾

북한은 6·25戰爭의 패전요인이 북한 전역에 防衛施設과 軍事要塞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全地域 要塞化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즉, 6·25남침시 유엔군의 制空權에 압도당해 수송망이 마비됨으로써 軍需支援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유엔군의 반격으로 戰線이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地域單位의 방어시설과 대피시설의 준비가 전혀 없어 戰時生産保障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 敗戰要因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이러한 敗因分析에 기초하여 북한은 전지역에 지역단위의 防禦據點과 要塞化陣地를 형성함은 물론 중요 산업시설과 戰略物資備蓄所 등을 地下化하여 유사시 최소한의 희생으로 戰爭을 수행토록 대비한다는 방침아래 북한 전지역의 要塞化를 추진하였다.

金日成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總和報告에서 “4대군사로 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 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다.”고 말해 북한 全域이 문자 그대로 要塞化되었음을 밝혔다.

(다) 全軍幹部化

‘全軍幹部化’란 장교와 사병을 막론하고 人民軍은 누구나가 한 등급 높은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政治·思想的, 軍事·技術的으로 단련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軍자체의 戰鬥力을 높이고 軍幹部를 대량 養成해 둠으로써 필요시 武力의 급속한 확대를 보장하려

9) 같은 책, p.173.

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⁰⁾

북한은 6·25南侵時 戰爭指導能力이 없는 지휘관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세한 유엔군의 現代戰에 대응할 작전수행능력이 부족했던 점, 특히 中共軍과의 聯合作戰은 물론 각 部隊間의 협동 작전이 미숙했다는 사실 등을 敗戰要因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全軍의 幹部化政策은 全人民의 武裝化政策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戰時에 급속한 部隊增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動員政策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金日成은 “전체 인민이 다 군대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먼저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듦으로써 전체 인민이 무장하게 될 때 지금의 사단은 군단으로, 연대는 사단으로, 대대는 연대로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라) 全軍現代化

‘全軍現代化’ 정책은 현대전과 전면전에 대처 가능한 最新武器의 도입 및 개발, 고도의 戰鬥技術 습득, 각종 기재의 보강으로 韓國軍은 물론 駐韓美軍의 전력보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¹¹⁾

金日成은 1966년 10월 노동당대표자회의 연설에서 4大軍事路線과 관련하여 “현대전 요구에 맞게 군을 현대적무기,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켜야 한다. 무기현대화는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해서 제작되어야 하며, 산과 해안선이 긴 한반도의 지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6·25경험이 보여준 바와 같이 타국의 무기와 전술의 교조주의적 모방은 국방에 심대한 손실을 줌으로 군현대화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발전시키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指示한 바 있다.

10) 같은 책, p.174.

11) 같은 책, p.174.

북한은 全軍의 現代化路線을 꾸준히 추진하여 機甲·機械化, 砲兵火力的 自走化 및 射程距離의 극대화, 渡河裝備의 현대화, 核投發手段의 보유 등,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誘導彈, 高速艇과 잠수함 및 高性能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戰力을 크게 증강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4大軍事路線은 주로 6·25남침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특히 敗因分析에서 나온 것으로서 金日成은 1950년 12월 21~23일 慈江道 滿浦郡 別午里에서 개최된 勞動黨 제2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現情勢와 當面課題’라는 報告를 통하여 ①병력보충의 困難 ②지역단위 방어체제의 不備 ③군수지원체제의 未備 ④전쟁지도능력의 不充分 및 작전수행능력의 不足 등을 6·25戰爭의 敗因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바로 이 敗因의 修正이 4대군사노선이라는 軍事政策으로 나타났는바, 1978년 9월 9일 北韓政權創建 30주년 기념보고에서 金日成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豪言하였다.

한편,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2년 改正한 新憲法에 國防自衛政策의 기본내용으로 4大軍事路線을 明文化함으로써 이 4대군사노선이 북한의 변함없는 基本路線임을 명백히 하였다.

나. 軍事戰略

북한의 軍事戰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모택동 등의 軍事思想을 教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6·25전쟁 이후 북한은 中國式 인민전쟁전략과 舊蘇聯邦의 현대전략 그리고 6·25전쟁경험과 월남전 및 중동전의 教訓 등을 복합하여

獨自的으로 발전시켜 왔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攻勢戰略概念으로 유사시 電擊戰 형식의 速度戰으로 한국내의 全縱深을 단시일 내에 석권하거나 또는 수도권 의 제한적인 占領을 추구할 수 있는 短期 速戰速決戰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¹²⁾

(1) 先制奇襲戰略

선제기습전략은 正規軍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非 正規軍인 武裝特攻部隊의 선제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관측으로 북한은 對南軍事力の 우세에도 불구하고 軍事 潛在力面에서는 열세에 있기 때문에 先制奇襲戰略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의 1/2, 북한 GNP의 수배가 되는 京仁地域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것이며, 攻擊機動裝備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先制奇襲戰略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¹³⁾

(2) 速戰速決戰略

短期決戰 내지 電擊戰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速度戰으로 別稱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위해 機械化·機動화된 戰力を 확보하는 한편, 改良型 스커드미사일 量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火力增強, 高速上陸艇 및 火力支援艇 증강 등, 속전속결능력 확보를 위한 武器體系의 획득과 유지에 全力을 다하고 있다.

역시, 한국의 심장지대인 京仁地域의 전략적 중요성과 휴전선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 戰略을 추구하게 하는 변함없는 요인이 될 것인바, 특히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포클랜드분쟁

12) 國防部 編, 「국방백서:1991-1992」(서울: 1991.10), p.43 참조.

13) 柳仁澤, 앞의 책, p.213.

및 최근의 걸프전쟁 등을 통해서 短期決戰의 필연성이 부각되고 있다.

(3) 配合戰略

配合戰略이란 毛澤東의 유격전략과 舊蘇聯邦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主體的 戰略’이라는 것으로, 대규모적인 正規作戰과 비정규적인 遊擊戰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선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同時 戰場化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¹⁴⁾ 즉, 이것은 戰線에 상대방 主力軍을 붙잡아 놓고, 후방에서는 人民抗爭을 유발시켜 全面攻勢를 취한다는 것이다.¹⁵⁾

4. 軍事組織·制度

가. 軍事機構

북한의 군사체계는 黨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와 政權機關을 통한 軍事指揮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면서 모든 武力의 지휘·통솔이 金日成과 金正日에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다. 주요 軍事機構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1972년 4월 19일자 노동신문은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출판에 즈음해서’란 논설에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적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적들을 도처에서 공격하며 소멸하여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15) 白光一, “북한의 군사환경과 군사전략”, 「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세종연구원, 1988. 10), p.25.

(1) 國防委員會

國家主權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武力을 지휘·통솔한다.¹⁶⁾ 舊憲法에 따르면 主席이 전반적 무력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新憲法에서는 同條項을 삭제함으로써 김정일의 軍最高司令官 취임에 대한 違憲是非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김정일이 第1副委員長(委員長: 金日成)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共和國主席’ 다음의 기관으로 格上(중전에는 中央人民委員會 산하 부문위원회에 불과)시켜 國防委員會가 무력사용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國防委員會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고, 중요 軍事幹部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유사시 戰時狀態와 動員令을 선포한다.

(2) 黨軍事委員會

黨軍事委員會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組織되어 있다.

黨中央委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全武裝力強化와 軍需産業發展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軍事委員會는 軍事力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最高決定機關으로 되어

16) 북한 新헌법 제111조 및 제113조 참조.

17) 북한은 1991. 12. 24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全會員會議에서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인민군최고사령관은 창군 이래 김일성이 맡아 왔으며 북한 舊헌법 제93조에서는 “주석은 전반적인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은 違憲 소지를 안고 있었다. 금번 헌법개정은 김정일의 軍部掌握를 통한 권력승계의 본격화를 法的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있으나, 軍事委員會의 업무가 대부분 國防委員會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기본적인 軍事政策의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地方黨委員會의 군사위원회는 黨中央委 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戰時動員體制의 검토, 民兵組織의 운영·관리 및 民兵訓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¹⁸⁾

(3) 人民武力部

人民武力部는 1982년 4월 最高人民會議 제7기 제1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政務院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타 부서와는 달리 政務院의 통제를 받지 않고 黨中央委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예하에 總參謀部를 두고 總參謀長이 지상군의 각 軍團과 砲兵, 戰車, 輕步教導指導局과 海·空軍司令部 및 각 地區司令部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單一軍體制를 유지하고 있다.¹⁹⁾

역대 인민무력부장은 崔庸健(1948. 2)→金光俠(1957. 9)→金昌奉(1962. 10)→崔賢(1968. 12)→吳振宇(1976. 5~현재) 등이 맡아 왔으며, 總參謀長은 崔庸健(1948. 2)→姜健(1950. 6)→南日(1950. 9)→金光俠(1953. 8)→李權武(1957. 9)→金昌奉(1959. 7)→崔光(1963. 2)→吳振宇(1969. 2)→吳克列(1979. 9)→崔光(1986. 11~현재) 등이 맡아 왔다.

나. 黨·軍關係

북한에서 憲法보다 상위개념에 있는 勞動黨規約은 제46조에서

18) 柳仁澤, 앞의 책, p.216.

19) 國防部 編, 앞의 책, p.44.

“조선인민군은…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軍이 黨에 대하여 從屬關係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人民軍隊 內에는 노동당 조직을 통한 政治指導體系로서의 각종 政治機構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서 노동당이 人民軍을 통제하고 政治事業을 전개한다.

人民軍內 당조직, 즉 軍黨委員會 組織은 中央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유일적으로 망라”하는 「朝鮮人民軍 黨委員會」가 있고 大隊級 이상에 黨委員會, 中·小隊 單位에는 黨細胞 및 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으며 각급 당조직들은 地方黨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²⁰⁾ 그리고 人民軍 黨委員會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그 지도 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軍 內에는 당위원회와는 별도로 政治機關을 조직하고 있는데 人民武力部 산하에 “로동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人民軍總政治局」이 있고 大隊級 이상의 부대에 政治部를 두고 있다. 이 정치기관은 黨의 정책과 결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總參謀部와는 관계가 없다.²¹⁾

한편 북한은 1969년부터 인민군대 내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師團과 聯隊 단위에는 政治委員, 大隊와 中隊 단위에는 政治指導員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軍事業務와 군대내 政治事業을 조정·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명령서에 政治委員의 서명이 있어야 效力이 발생하도록 하는 副署制度를 도입하였다. 이는 人民軍黨委員會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20) 노동당규약 제7장 제50조 참조.

21) 1969. 1. 6.~14.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발언.

또한 人民軍 內에는 部隊單位에 따라 「社勞靑」도 조직되어 있는 바, 이는 각급 노동당조직과 정치기관의 指導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非黨員을 노동당의 指導밑에 결속시키기 위하여 조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人民軍內 노동당조직은 이중, 삼중으로 統制體系를 갖추고 있는데, 金正日은 軍事指揮부와 政治部 및 3大革命小組를 각각 활용하는 '3線報告組織'을 통해 人民軍을 통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다. 軍服務 및 階級構造

(1) 軍服務

북한에서는 軍의 입대여부를 政治保衛部에서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男子는 14세가 되면 招募對象者(북한에서는 '徵集'이란 말 대신 '招募'란 용어를 사용)로 등록하고, 高等中學校를 졸업하는 만 16세가 되면 軍入隊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7세에 사단 또는 군단에 現地 入隊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成分不良者는 제외되며 특수분야 종사자(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등)는 政策的 배려로 징집에서 제외된다.

복무연한은 內閣決定 제148호에 의거, 地上軍은 3년 6개월, 海·空軍은 4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陸·海·空軍 모두 통상 10년 이상 복무토록 하여 士兵은 27세, 尉官級은 35~40세에 이르러 제대할 수 있고, 사병중에서도 特殊部隊(경보병부대, 저격부대)要員은 10~13년간 복무토록 하고 있다.²³⁾

22) 統一院 編, 「북한개요」(서울:1990. 12), pp. 411-412. 참조.

23)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軍服務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戰鬪力強化 5大方針」으로 ①강인한 혁명정신 ②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무쇠같은 체력 ④백발백중의 사격술 ⑤강철같은 규율을 제시하였다.²⁴⁾

또한 1977년 11월 人民軍煽動員大會에서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의로 「軍務生活 10大遵守事項」을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軍事規定의 철저한 준수 ②무기의 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黨 및 政治組織에서 준 分攻의 어김없는 집행 ⑤國家機密, 軍事機密, 黨組織祕密의 엄숙한 유지 ⑥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軍事政治訓練에의 어김없는 참여 ⑧人民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 금지 ⑨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군대안의 一致團結 등이다.

이상의 「전투력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은 人民軍의 가장 중시되는 服務規律이 되고 있는데, 1980년 이후에는 이와 아울러 인민군대 내의 ‘主體的 革命思想의 確立’이 강조되고 있다.

복무중에는 全服務期間을 통해 1~2회(1회 15일)의 定期休暇가 허용되고 있고,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10일간의 特別休暇가 주어진다.

급여는 戰時에 平時의 2배 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前方勤務時에는 1인당 봉급을 기준으로 軍官 30%, 下戰士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給食은 兵士에서 中佐까지는 1일분 백미 700g, 잡곡 50g, 고기 75g(물고기는 200g) 등이 보급되나, 上佐 이상은 고기가 200~300g 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24) 노동신문(1975. 2. 8. 字)

25) 統一院 編, 앞의 책, pp. 416-417.

軍服務를 마치게 되면 除隊와 동시에 직장을 配置받게 되며 배
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하고 大學進學을 하기도 한다. 軍
指揮官은 「金日成綜合大學」, 「第1綜合軍官學校」 등 각종 군사학교
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本科는 3년 내외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2) 軍階級構造

軍官은 15種, 士兵은 6種으로 나뉘어져 있다.

軍官의 경우는 ①원수급에 大元帥, 元帥, 次帥 ②장령급에 大將,
上將, 中將, 少將 ③상급군관에 大佐, 上佐, 中佐, 少佐 ④하급군관
에 大尉, 上尉, 中尉, 少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士兵의 경우는
①하사관에 特務上士, 上士, 中士, 下士 ②兵은 上等兵, 戰士 등으
로 구분되어 있다.

종래의 북한군 장성계급서열은 少將—中將—上將—大將—次帥—
元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金日成의 80회 생일
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大元帥로 추대함으로써 7계급 구조로 되
었다.

한편 金正日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회의에서 人民軍總司令官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1일
軍創建紀念 60돌에 즈음하여 元帥 계급으로 전격 추대된바, 軍最
高司令官이 된 지 4개월만인 同年 4월 23일 「군최고사령관명령 제
0024호」를 발표, 총 664명의 軍將星級을 진급시키는 대규모 軍 인
사조치를 단행하였다.

金正日은 이날 吳振宇 元帥(인민무력부장)를 비롯, 崔光(軍총참
모장) 등 8명의 次帥 진급자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직접 달아주
고, 16명의 大將을 포함한 총 664명의 軍將星들에게 군계급을 수
여한 바 있다.

5. 軍事能力

가. 常備戰力

(1) 兵力 및 陸軍 機動部隊의 特徵

북한의 常備戰力은 陸軍 88만 2천명, 海軍 4만 6천명, 空軍 8만 2천명으로 1991년보다 1만 5천명 증원된 총 101만여명(1992. 8. 현재)으로 판단된다.²⁶⁾

북한의 이같은 兵力數는 한국의 총 병력 65만 5천여명 규모의 1.5배 수준이며, 이러한 북한의 총병력 우위는 1992년 10월 영국 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가 분석한 북한 總兵力(113만 2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아진다.²⁷⁾

북한의 地上軍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砲兵 및 機械化 軍團을 포함하여 16개 軍團司令部와 戰車教導指導局, 砲兵教導指導局 그리고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輕步教導指導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 道별로 1개의 地域司令部와 그 예하에 教導師團 및 旅團을 편성하여 즉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師團 및 旅團級 부대는 보병 55개 사단 및 여단, 기계화보병 23개 여단, 전차 14개 여단, 특수부대 22개 여단, 포병 30개 여단 등 총 144개 師團 및 旅團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그 특징은 기계화, 戰車 및 特殊部隊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이다.²⁸⁾

26) 國防部 編, 「國防白書:1992-1993」(서울:1992. 10.), p. 62 참조.

27)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92년 10월 「1992-1993년도 군사력 균형」(The Military Balance 1992.-1993)을 통하여 분석한 북한의 군사력은 육군 100만명, 해군 4만명, 공군 9만 2천명 등, 총병력 113만 2천명이다.

28) 國防部 編, 앞의 책, pp.44-45 참조.

북한은 최근 수년간에 機械化 및 戰車師團을 한국지형에 적합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戰車, 機械化, 자주포 砲兵軍團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指導構造로 개선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명의 非正規戰 능력을 가진 特殊戰部隊를 갖고 있는바, 이들이 海上 및 空中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약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²⁹⁾ 이러한 兵力을 레이다에 잘 探知되지 않는 250여대의 AN-2기와 韓國軍의 주력 헬기이기도 한 휴즈 500계열 헬기 80여대를 이용하여 後方 깊숙히 침투시킬 戰略이 예견되는바, 이는 유사시 正規·非正規戰部隊의 配合戰으로 남한의 前·後方地域을 동시 戰場化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

한편, 북한은 평양과 원산을 있는 平元線 이남 지역에 60여개 정규사단 및 여단을 前進配置해 놓고 있으며 공격시에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機動化, 車輪化, 機械化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시 이용할 艱道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으로 구축해 놓고 있어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再配置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奇襲攻擊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³¹⁾

(2) 主要裝備

(가) 地上裝備

북한의 지상군은 新·舊型 무기를 혼합하여 戰鬥裝備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地上軍 주요 장비중 戰車는 주력전차인 T-54계열 전차(T-54/55/59 등) 2,760여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新型 T-

29) 國防部 編, 앞의 책, p.47.

30) 白鍾天,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통일연수원, 1989. 8), p. 48.

31) 國防部 編, 앞의 책, p.46.

62 및 輕戰車 530여대, 舊型인 T-34전차 410여대를 포함하여 총 3,700여대의 戰車를 보유하고 있다. 전차 보유면에서 북한은 한국의 총 전차보유대수 1,650여대 보다 2배 이상의 수준이다. 남북한 공히 우수한 對戰車武器를 갖고 있어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新·舊型 戰車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威脅要因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7,300여문(76.2/100/122/130/152/160밀리 등 다양한 口徑)의 曲射 및 平射砲 그리고 2,280여문(107/122/132/240밀리)의 放射砲를 포함하여 총 9,800여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防空武器도 12,000여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91년 말에 비해 戰車가 100대, 火砲가 300문 증강된 것이다.³²⁾

특히 북한은 지난 걸프전쟁에서 恐怖의 대상으로 浮刻되었던 스커드B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여 實戰에 배치하였는바, 현재 연간 약 100여발의 彈頭生産能力을 보유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커드B 미사일의 性能보다 우수한 스커드C 미사일(射程距離 500km 이상)을 생산하여 休戰線 북방 약 50km 지역에 實戰配置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휴전선으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거의 全域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射程圈 內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雪上加霜으로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1,000km인 신형 地對地誘導彈 「로동1호」를 개발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이 保有하고 있는 FROG-5 및 FROG-7 로켓은 사정거리가 각기 50km 및 70km에 달하는 長射程火器로서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발사할 때 수도권 및 춘천, 속초선을 달하는 지역까지 在來式 砲彈 및 火學·戰術核彈의 운반이 가능하다.

32) 國防部 編, 앞의 책, p.46 및 p.56(도표:북한의 최근 주요전력증강 현황) 참조.

工兵에 있어서 북한은 500여대의 水陸兩用車輛과 2,300여개의 S형 浮橋로 장비된 渡河工兵의 強襲渡河作戰 支援能力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은 무기의 量的 增強과 병행하여 質的 改善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바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T-62전차 성능을 改良한 「천마」호를 자체생산하고 방탄조끼와 같은 反應裝甲을 부착하였으며, AT-4(TOW형) 對戰車미사일을 생산하여 裝甲車에 장착·배치하였고, T-72형 전차의 模倣生産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보병사단의 76.2밀리 牽引對戰車포를 100밀리 자주포로 교체하였고, 野砲의 52%(3,900여문)를 自走化한바, 특히 전방군단 및 사단 포병 100%를 자주화하였으며, 後尾에서만 공격이 가능하던 SA-7 휴대용 對空미사일에 이어 全方向에서 공격이 가능한 SA-16 휴대용 對空미사일을 생산·배치함으로써 防空能力을 크게 향상시켰다.³³⁾

(나) 海上裝備

북한 해군은 총 740척의 戰鬪艦, 潛水艦 및 支援艦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戰鬪艦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45척, 支援艦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270척, 潛水艦은 W급과 R급 등 25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舊型 함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형상 東·西함대로 분할하여 東海 430여척, 西海 310여척으로 분리·운영해야 하는 不利點이 있으며, 소형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遠海作戰能力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高速艇의 다수 보유와 추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의 對艦 奇襲攻擊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誘導彈艇은 射程距離 45km의 STYX對艦미사일을 장착하고

33) 國防部 編, 앞의 책, p. 57.

있으며 다수의 잠수함 및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어 남한 全海域에서 水上艦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 隱密浸透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東·西 해안에 射距離 95km에 달하는 SAMLET 및 SILK WORM 地對艦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바, 현재 前方에 배치된 SILK WORM은 서해의 仁川外港과 동해의 東草外港까지 對艦攻擊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武裝兵力(약 50명)을 태우고 西海와 같이 干滿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奇襲上陸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주정인 空氣浮揚艇(시속50km 이상)을 자체 건조하여 100여척을 보유 중인바, 이들 함정을 東·西海에 각각 前進配置할 경우 開戰初 동시다발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³⁴⁾

(다) 航空裝備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최신에 戰術機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70여대, MiG-15/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支援機 480여대 및 헬기 29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20여대의 航空機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戰鬪機의 40%를 전방지역에 推進配置하고 있어 현기지에서 발진하여 남한지역에 대한 奇襲攻擊이 가능한바, MiG-21/23/29 및 SU-7/25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現基地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舊型임에도 불구하고 部品를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워 稼動率이 높은바, 戰場縱深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空中攻擊 및 對地攻擊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34) 國防部 編, 앞의 책, pp.48-51 참조.

또한 IL-28 爆擊機와 일부 戰術機는 제한된 후방차단 작전이 가능하며 각종 戰術機 및 AN-2기와 헬기는 地上軍과 海軍에 대한 제한된 近接支援도 가능케 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수적으로는 우세하나 대체로 空軍 戰術機의 성능과 對地攻擊 능력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은 그들의 戰力を 양적 증가에서 速度, 航速距離, 武裝 및 電子戰 能力을 구비한 무기체계 방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바, MiG-23/29 戰鬪機와 SU-25 近接支援戰鬪機 및 IL-76 輸送機 등 신

<표> 南北韓 軍事力 現況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육군	54만명	65.5 만명*	88.2만명	101 만명**
			해군	6만명		4.6만명	
			공군	5.5만명		8.2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11		16		
		사 단	49***		49		
		여 단	16		95		
	장 비	전 차	1,650		3,700		
		장갑차	1,700		2,500		
		야 포	4,400		9,800		
해 군	전 투 함	180척		445척			
	지 원 함	50척		270척			
	잠 수 함	-		25척			
공 군	전 술 기	520대		850대			
	지 원 기	190대		480대			
	헬 기	580대		290대			

* 방위병 미포함, 해군병력에 해병부대 병력 포함.

** 육군에 편제된 해병부대 육군병력에 포함.

***해병사단 포함.

출처: 國防部 編, 「국방백서」(1992.10), p. 62.

예기를 도입하여 戰術航空戰力の 질적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최근 MI-2 헬기를 자체 생산·배치함으로써 特殊戰部隊 수송능력을 제고시켜 놓은 북한은 현재 AN-2기의 개량생산과 MiG-21/29 戰鬪機의 생산까지도 시도하고 있다.³⁵⁾

여기서 참고로 南北韓 軍事力 現況을 살펴보면 대략 앞의 표와 같다.

나. 豫備戰力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全民武裝化’에 따라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豫備戰力を 확보해 놓고 있다. 이들은 個人火器로부터 共用火器에 이르기까지 각종 戰鬪裝備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年間 160시간 내지 50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中共軍의 철수를 계기로 同年 1월 민방위 성격인 「勞農赤衛隊」를 창설하였으며, 1962년 전투동원 대상인 「教導隊」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학교 군사조직인 「붉은 青年近衛隊」를 발족시켰다.

豫備軍의 지도체제는 人民武力부와 黨軍事部 계통으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人民武力부는 各道別로 설치되어 있는 총 10개의 地區司令部를 통해 예비군의 핵심인 「교도대」를 지휘하고, 黨軍事부는 민방위 등 豫備隊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를 관장토록 되어 있다.³⁶⁾

(1) 教導隊

교도대는 북한의 民間軍事組織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17세 이상

35) 國防部 編, 앞의 책, pp.51-58 참조.

36) 柳仁澤, 앞의 책, pp. 225-226 및 統一院 編, 앞의 책, pp.420-423 참조.

40세까지의 住民(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하여 行政單位의 지역과 직장규모에 따라 師團과 旅團으로 編成되어 있다.

교도대는 小火器 100%, 共用火器 70~80%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도 年間 500시간에 달하는 등 現役に 준하는 부대편성과 훈련 및 장비를 保有하고 있다.

이들은 戰爭勃發時 즉각 동원되어 後方防衛 및 豫備隊로 투입되는데, 현재 교도대의 總兵力은 약 120만명이다.

(2) 勞農赤衛隊

노농적위대는 41세 이상 60세까지의 住民을 대상으로 職場 및 行政單位別 梯隊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對空防衛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小火器는 100%, 共用火器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은 年間 160시간이고, 대원수는 약 380만명이다.

(3) 붉은 青年近衛隊

高等中學校 5~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學校單位別로 中隊 또는 大隊級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放學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 청년근위대 野營訓練所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기도 한다.

주요 임무는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여 북한 체제를 死守하는 親衛隊로서 전투력 향상의 先導的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軍 下級幹部 보완을 위한 後備隊, 決死隊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小火器는 100%, 共用火器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는 붉은 청년근위대는 年間 300시간에 달하는 訓練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90만명의 隊員으로 조직되어 있다.

(4) 人民警備隊

軍에서 제대한 靑壯年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로 動員, 組織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警備이다. 인민경비대의 下戰士는 정규군 招募對象者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新兵訓練所에서 3~4개월간의 基礎軍事訓練을 받아야 하고, 軍官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며 人民警備隊 軍官 학교의 正規教育을 이수해야 한다.

인민경비대는 社會安全部 5局(警備局)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小火器 및 共用火器를 100% 보유하고 있으며 正規軍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人民警備隊의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다. 核 및 化生戰 能力

북한은 1960년대 이후 核開發에 착수하여 核관련 專門人力 양성과 기술축적에 주력하면서 平北 寧邊 일대에 대규모 核開發 研究團地를 조성하는 한편, 良質의 우라늄광산을 확보하고 精鍊 및 加工工場을 가동하여 核燃料 자체생산 및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寧邊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1960년대 들어서부터 소련 최대의 核研究所인 「두부나 핵연구소」에 核物理學者를 파견해 연구시키는 한편, 平城理科大學에 核物理學科를 설치, 졸업생을 영변 핵연구단지에 집중 배치해 왔는데, 현재 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研修를 받고 돌아와 核開發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專門研究人力만도 2,500 내지 3,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⁷⁾

이러한 核開發 노력의 결과, 북한은 1965년 舊蘇聯邦으로부터 4천kw급 시험용 원자로 1기를 도입한 이래 自體技術로 3만kw급의

37) 内外通信(週刊版), 제770호(1991. 11. 15. 字)

제2원자로를 개발·완공하여 가동중이며, 현재 20만kw급의 제3원자로를 건설중인데, 사용후 核燃料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核再處理施設도 건설하여 본격적인 稼動時期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核開發을 위한 제반 능력과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⁸⁾

한편, 核武器는 이를 목표지점에 운송할 수 있는 投發手段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은 核爆彈 投發이 가능한 MiG-21/23/29, SU-25, IL-28 및 FROG-5/7 미사일 등을 保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커드B 미사일에 이어 사정거리 500km의 스커드C 미사일을 實戰配置해 놓고 있으며, 彈頭重量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射程距離 1,000km에 달하는 「로동1호」를 개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이 核武器를 개발할 경우 우리 國家安保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주변국가의 軍備競爭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있다.

한편 북한의 核武器開發問題와 더불어 우리의 심각한 우려의 대상은 북한의 化生戰 武器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核問題에 가리워져 軍事爭點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 실제적인 軍事威脅은 오히려 化生武器가 개발중인 核武器보다 明白하고도 現存하는 위협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化生武器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武器開發 및 生産에 주력해 왔다. 현재 북한은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有毒가스를 대량 생산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細菌武器인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까지 培養·生産하여 生體實驗을 한 바 있다.³⁹⁾

북한은 현재 聯隊級까지 化學小隊를 편성하여 化生武器訓練을

38) 國防部 編, 앞의 책, pp. 59-60.

39) 國防部 編, 앞의 책, p.60.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化學武器製劑만도 總量 25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可恐할 化學武器製劑가 전진 배치된 부대에 각 45~62톤씩 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⁰⁾

북한의 化生戰武器가 핵위협 못지않게 한반도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또 하나의 當面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6.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軍事實態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이른바 ‘決定的 時機’가 조성된다면 軍事力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를 赤化統一시키겠다는 意志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犧牲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軍事力을 육성하여 왔고, 오늘날 극심한 經濟難 속에서도 核 및 中·長距離 誘導武器 개발, 戰車 및 火砲의 질적개선, 空氣浮揚高速上陸艇 건조, MiG-21/29 자체생산 추진 등 공격적인 新銳軍備의 增強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1만명에 달하는 常備軍 兵力은 북한의 推計人口 2300만명을 기준하여 人口 1,000명당 43명에 해당하는 軍人構成比率로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최고율이었던 일본의 軍人構成比率와 맞먹는 것이다. 여기에 現役に 준하는 教導隊를 비롯한 豫備兵力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動員된 狀態’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⁴¹⁾

북한은 地上軍 正規兵力의 10%를 차지하는 10만여명의 特殊部

40) “CW: North Korea’s Growing Capability”, Jane’s Defence Weekly (14. Jan. 1989), 白鍾天, 앞의 책, p. 52 再引用.

41) 白鍾天, 앞의 책, p. 55.

隊 육성과 함께 機械化·輕量化·機動화된 부대편성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그 대부분의 戰力을 平元線 이남에 前進配置(병력 65%, 함정 60%, 항공기 40%)시켜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軍事政策 및 戰略面에서 “유사시 전면기습공격을 통해 전쟁주도권을 장악하고, 전후방을 동시전장화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攻勢概念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은 그들의 이른바 對南赤化革命路線과 맞물려 停戰狀態下에 있는 한반도에서 항상 緊張과 戰爭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결코 合理的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최근 국제적 緊張緩和와 和解·協力潮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事態를 현실로 목도하였는 바, 軍事集團化되어 있는 獨裁體制下에서는 언제나 불시의 돌연변이 같은 軍事行動이 있을 수 있음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戰爭挑發意圖를 억제하는 데 최선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戰爭危險을 事前豫防하기에 충분한 戰爭抑制戰力을 확보·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戰爭挑發意圖를 억제하는 유일한 요소는 ‘승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며, 북한의 勝利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우리의 戰爭抑制戰力인 것이기 때문이다.⁴²⁾

한편 진행중인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이미 채택·발효를 본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와 그 부속합의서 그리고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성실히 실현해 나가는 길로 북한을 유도하는 일이다.

軍事部門에서는 각종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부대이동이나 기동훈

42) ‘전쟁억제전력’의 내용과 방안에 관해서는 李相禹, 「對北韓 長期抑制戰略構想」(韓國國防研究院, 1989. 9), pp. 2-19 참조.

런, 부대배치상황 등 주요 軍事活動을 공개하고 감시·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奇襲攻擊이나 戰爭挑發企圖가 없음을 입증하고 豫測可能性을 높여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군사적 信賴構築措置를 쌓아 나가되,⁴³⁾ 특히 大量殺傷武器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인바, 현존하는 북한의 化生武器 제거는 물론, 核武器 개발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남북한간 성역없는 相互核査察을 실현하여 그 의혹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이 한반도 緊張緩和와 平和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며, 그러한 矛盾이 남아 있는 한, 북한의 軍事的 威脅要因은 상존하는 것이다.

43) 林東源,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논단」(1990년 7월 호), pp.29-30 참조.

民主統一論

(北韓實態篇)

(통연 93-2-7)

1993年 2月 10日 印刷

1993年 2月 15日 發行

發行處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躑2洞 山 73-13

電話 901-7123~4

印刷處 農園文化印刷(株)

